#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CCTV의 설치 및 운영방안: 유치원·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강은진 이정림 조혜주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머리말

본 연구는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유치원·어린이집에 도입된 CCTV를 아동인권의 측면에서 논의하고, 그 설치·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에 CCTV 설치·운영에 관한 국내외 현황, 관련 법안,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CCTV와 관련된 사회적 인식 및 유치원·어린이집 구성원, 그리고 학부모들의 인식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됨에 따라 고려해야 하는 제반 사항들에 대해 파악함으로써 CCTV 설치·운영의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범죄예방과 감시를 위해 설치되어 온 CCTV가 안전사고 예방과 확인을 위해 유아교육·보육기관에 도입되어 왔으나, 아동과 교사의 사생활 권리침해, 아동의 낙인효과, 사각지대에서의 아동학대 발생과 같은 풍선효과 등 부정적인 측면도 공존한다. 이에 본 연구는 CCTV가 안전과 아동학대 예방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안착될 수 있도록 설치와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CCTV 설치와 운영 양상은 기관의 특성, 아동인권 보호 주체(아동, 교직원, 학부모)에 따라 다르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함께 담고 자 하였다.

그동안 본 연구에 참여하여 주신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 교사,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정책 방안이 이후 CCTV가 안전한 교육·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인권을 보호하는 데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2015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우 남 회** 

# 차 례

요약	····· 1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 10
3. 연구방법 ····································	
<ul> <li>Ⅱ. 연구의 배경</li></ul>	···· 20 ···· 50 ···· 61
Ⅲ. 유치원·어린이집의 CCTV 설치·운영 현황 및 요구 ··································	···· 72 ·· 107 ·· 121
IV. 정책 제언         1. 기본 방향         2. CCTV 설치에 대한 개선방안         3. CCTV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 137 ·· 139 ·· 141
참고문헌	150

부 록155
부록 1. 유치원 교사 설문지157
부록 2. 어린이집 교사 설문지166
부록 3. 면담 설문지(전문가용)175
부록 4. 면담 설문지(부모용)180
부록 5. 육아지원 관련자 등록 기준182
부록 6. 신문기사 목록183

# 표 차례

〈丑	I -3-1>	연도별 CCTV관련 기사 수13
〈丑	I -3-2>	기관특성14
〈丑	I -3-3>	응답자 특성(유치원/어린이집) 15
〈丑	I -3-4>	조사내용16
〈丑	I -3-5>	심층면담 대상 및 내용16
〈丑	I -3-6>	원장, 교사, 학부모 인터뷰 전체 결과17
〈丑	I -3-7>	회의 개최17
〈丑	<b>□-1-1</b> >	영상정보 정의에 대한 근거 법령22
〈丑	<b>∏-1-2</b> >	설치와 관련된 근거 법령24
〈丑	<b>Ⅱ-1-3</b> >	설치의 예외 25
〈丑	<b>∏-1-4</b> >	CCTV 성능기준 26
〈丑	<b>Ⅱ-1-5</b> >	사전 의견 수렴
〈丑	<b>∏-1-6</b> ⟩	동의 절차
〈丑	<b>11-1-7</b>	신고29
〈丑	<b>Ⅱ-1-8</b> 〉	운영 제한 기준 법령30
〈丑	<b>1-1-9</b>	정보 수집 제한과 관련된 법령30
〈丑	<b>□-1-10</b> >	안내판 설치
〈丑	<b>□-1-11</b> >	CCTV 안전조치 및 점검 관련 근거법령32
〈丑	$\Pi$ -1-12 $\rangle$	CCTV 안전성확보/지능형 감지시스템/점검 관련 내용33
〈丑	<b>□-1-13</b> >	CCTV 관리를 위한 책임자/내부 관리계획 관련 내용34
〈丑	$\Pi$ -1-14 $\rangle$	저장 및 보관기간
〈丑	<b>□-1-15</b> >	영상정보 삭제
		열람 요청37
〈丑	<b>□-1-17</b> >	열람 거부38
〈丑	$\Pi$ -1-18 $\rangle$	보호자의 열람 절차
〈丑	<b>1-1-19</b>	보육관련 업무 관련 기관의 열람절차 40
〈丑	<b>1-1-20</b>	열람대장 관리
〈丑	<b>□-1-21</b> >	위탁41

〈丑	$\text{II}$ -1-22 $\rangle$	비밀유지42
〈丑	Ⅱ-1-23>	데이터보호법 관련 사항 및 관련 규정43
〈丑	$\Pi$ -1-24 $\rangle$	감시카메라 사용 규정(영국)46
〈丑	$\Pi$ -1-25 $\rangle$	가족교육권과 프라이버시법의 내용 49
〈丑	<b>□-2-1</b> >	기관 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 사례 기관별 발생 건수 50
〈丑	<b>∏-2-2</b> >	기관 종사자 유형별 피해 학대 아동 연령51
〈丑	<b>∏-2-3</b> >	유치원 내 CCTV 설치 현황(*15년 1월 기준) ·····53
〈丑	$\Pi$ -2-4 $\rangle$	유치원 설립유형별 CCTV 설치 현황('15년 1월 기준) ······53
〈丑	<b>□-2-5</b> >	향후 유치원 내 CCTV 설치계획54
〈丑	<b>∏-2-6</b> >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CCTV 설치 현황(*15년 1월 기준) ·········· 55
〈丑	<b>□-2-7</b> >	어린이집 CCTV/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내역('14년 6월 기준) $\cdots 56$
〈丑	<b>∏-2-8</b> >	미국/영국 보육 및 교육시설 내 CCTV 설치 현황57
〈丑	<b>∏-2-9</b> >	독일/프랑스/핀란드 보육 및 교육시설 내 CCTV 설치 현황…·58
〈丑	<b>□-2-1</b> 0⟩	일본/중국 보육시설 및 교육시설 내 CCTV 설치 현황60
〈丑	<b>Ⅲ-1-1</b> 〉	연도별 CCTV관련 기사 수72
〈丑	<b>Ⅲ-1-2</b> 〉	유치원·어린이집의 CCTV관련 신문기사 분류 범주73
〈丑	<b>Ⅲ-1-3</b> >	연도별 학대 및 폭력 증거 기사 빈도74
〈丑	<b>Ⅲ-1-4</b> 〉	연도별 설치 의무화 법안 및 정책 기사 빈도76
〈丑	Ⅲ-1-5>	CCTV 설치 반대에 대한 기사 빈도77
〈丑	<b>Ⅲ-1-6</b> 〉	CCTV 설치 찬성에 대한 기사 빈도
〈丑	<b>Ⅲ-1-7</b> 〉	CCTV 설치에 대한 부모의 요구 및 반응 관련 기사 빈도 80
〈丑	<b>Ⅲ-1-8</b> 〉	CCTV 설치에 대한 경찰의 반응 관련 기사 빈도80
〈丑	<b>Ⅲ-1-9</b> 〉	CCTV 설치에 대한 어린이집 동향 관련 기사 빈도81
〈丑	<b>Ⅲ-1-10</b> >	CCTV 설치에 대한 대안 관련 기사 빈도81
〈丑	<b>Ⅲ-1-11</b> >	CCTV 설치에 대한 보완점 관련 기사 빈도81
〈丑	<b>Ⅲ-1-12</b> >	CCTV 설치에 대한 기타 기사 빈도82
〈丑	<b>Ⅲ-1-13</b> >	학부모, 교사, 원장의 CCTV에 대한 인식 면담 결과82
〈丑	<b>Ⅲ-1-14</b> >	CCTV의 장점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83
		CCTV의 단점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86
〈丑	<b>III-1-16</b> >	CCTV 설치에 대한 근본 대책91
〈뀨.	<b>Ⅲ-1-17</b> 〉	유치워 CCTV 설치에 대한 찬반 의견94

〈丑	<b>Ⅲ-1-18</b> >	유치원 CCTV 설치 찬성 이유 ······95
〈丑	Ⅲ-1-19>	유치원 CCTV 설치반대 이유96
〈丑	Ⅲ-1-20〉	어린이집 CCTV 설치에 대한 찬반 의견97
〈丑	<b>Ⅲ-1-21</b> >	어린이집 CCTV 설치 반대 이유98
〈丑	<b>Ⅲ-1-22</b> ⟩	어린이집 CCTV 설치 찬성 이유99
〈丑	Ⅲ-1-23>	교실 CCTV 설치에 대한 찬반 의견(유치원) ·······100
〈丑	<b>Ⅲ-1-24</b> 〉	교실 CCTV 설치 찬성 이유(유치원)101
〈丑	Ⅲ-1-25〉	교실 CCTV 설치 반대 이유(유치원)102
〈丑	Ⅲ-1-26〉	보육실 CCTV 설치에 대한 찬반 의견103
〈丑	III-1-27>	보육실 CCTV 설치 반대 이유104
〈丑	<b>Ⅲ-1-2</b> 8⟩	보육실 CCTV 설치 찬성 이유 ······105
〈丑	Ⅲ-1-29〉	CCTV 설치의 기여정도(유치원/어린이집) ······106
〈丑	<b>Ⅲ-2-1</b> 〉	CCTV 설치여부 및 설치 장소(유치원) ······107
〈丑	Ⅲ-2-2>	CCTV 설치여부 및 설치 장소(어린이집) ······108
〈丑	Ⅲ-2-3>	CCTV 기기종류 및 설치 유형(유치원) ······109
〈丑	<b>Ⅲ-2-4</b> 〉	CCTV 기기종류 및 설치 유형(어린이집) ······109
〈丑	Ⅲ-2-5>	CCTV 설치시기(유치원)110
〈丑	<b>Ⅲ-2-6</b> 〉	CCTV 설치시기(어린이집) ······111
〈丑	<b>Ⅲ-2-7</b> 〉	$\operatorname{CCIV}$ 설치이유 및 설치 시 공지/의시표현 기회 제공 여부(유치원) $\cdots$ 112
〈丑	<b>Ⅲ-2-</b> 8⟩	${\rm CCIV}$ 설치이유 및 설치 시 공지/의시표현 기회 제공 여부(어란이집) ${\rm ccc}$ 113
〈丑	<b>Ⅲ-2-9</b> 〉	CCTV 설치에 대한 안내 여부(유치원) ·······114
〈丑	<b>Ⅲ-2-1</b> 0⟩	CCTV 설치에 대한 안내 여부(어린이집) ······114
〈丑	<b>Ⅲ-2-11</b> 〉	CCTV 설치하지 않는 주된 이유 및 향후 설치 계획(유치원) ····· 115
〈丑	<b>Ⅲ-2-12</b> 〉	CCTV 설치하지 않는 주된 이유 및 향후 설치계획(어린이집) ····· 116
〈丑	<b>Ⅲ-2-13</b> 〉	${ m CCIV}$ 설치·관리에 대한 영유아보육법 인지여부 및 민족도(유치원) ${ m \cdots }$ 117
〈丑	<b>Ⅲ-2-14</b> 〉	$(CIV)$ 설치・관리에 대한 영유아 보육법 인지여부 및 만족도(어린이집) $\cdots\cdots$ 118
〈丑	<b>Ⅲ-2-15</b> 〉	CCTV 설치에 관한 영유아보육법 적절도(유치원/어린이집) ···· 119
〈丑	<b>Ⅲ-2-1</b> 6〉	CCTV 설치 시 필요한 조건 1+2순위(유치원/어린이집) ········· 119
〈丑	III-2-17>	CCTV 설치에 대한 의견120
〈丑	<b>III-3-1</b> ⟩	유치원/어린이집 CCTV 운영 현황122
〈丑	<b>Ⅲ-3-2</b> 〉	유치원/어린이집 CCTV 운영 현황(예라고 응답한 경우만) 123

〈묲 Ⅲ-3-3〉	유치원 부모들의 CCTV 녹화물 열람 빈도 및 열람 이유	123
⟨표 Ⅲ-3-4⟩	어린이집 부모들의 CCTV 녹화물 열람 빈도 및 열람 이유	124
〈묲 Ⅲ-3-5〉	녹화물 열람 시 타 유아들의 개인정보 보호 방법(유치원)	126
⟨∄ Ⅲ-3-6⟩	녹화물 열람 시 타 유아들의 개인정보 보호방법(어린이집)	127
⟨표 Ⅲ-3-7⟩	CCTV 관리 및 운영 시 고려점 1+2순위(유치원/어린이집) ·····	128
⟨∄ Ⅲ-3-8⟩	CCTV 관리 및 운영 시 반영되길 바라는 점	129
⟨표 Ⅲ-3-9⟩	CCTV 열람에 대한 구성원의 의견	129
〈표 Ⅲ-3-10〉	네트워크 카메라 및 모자이크	131
⟨௲ IV-3-1⟩	영상정보처리 가이드라인 수정 제안	143
⟨௲ IV-3-2⟩	현행 관련법 규정과 수정 방향	145

# 그림 차례

[그림	∏-2-1]	기관종사자 유형별 피해 학대 아동 연령(어린이집/유치원) 51
[그림	∏-2-2]	기관별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52
[그림	∐-2-3]	유치원 설립 유형별 CCTV 설치 현황54
[그림	∏-2-4]	설립 유형별 어린이집과 보육실 내 CCTV 설치 현황55
[그림	<b>Ⅲ-1-1</b> ]	연도별 유치원·어린이집 CCTV 기사 수73
[그림	<b>Ⅲ-1-2</b> ]	유치원·어린이집의 CCTV관련 신문기사 분류 범주74
[그림	<b>Ⅲ-1-3</b> ]	연도별 학대 및 폭력 증거 기사 빈도
[그림	<b>Ⅲ-1-4</b> ]	학대 및 폭력 증거의 연도별 코딩 분포(Tree Map)75
[그림	<b>Ⅲ-1-5</b> ]	연도별 설치 의무화 법안 및 정책 기사 빈도76
[그림	Ⅲ-1-6]	'설치 의무화'에 대한 연결지도(Tree Map)77
[그림	<b>Ⅲ-1-7</b> ]	CCTV 설치 반대에 대한 기사 빈도
[그림	<b>Ⅲ-1-8</b> ]	설치반대 코딩 분포(Tree Map)78
[그림	Ⅲ-1-9]	CCTV 설치 찬성에 대한 기사 빈도
[그림	Ⅲ-1-10]	설치 찬성 코딩 분포(Tree Map)79
[그림	IV-1-1]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및 운영 정책방안138

# 요약

### 1. 서론

#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의무화 가 도입됨.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CCTV 설치도 늘어날 전망이어서 CCTV 설치로 인한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아동과 교직원의 개 인정보 침해 등 문제점이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 범죄예방을 위한 감시도구였던 CCTV가 유치원·어린이집에 설치됨에 따라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아동인권 보호의 관점에 서 CCTV 설치와 운영방안을 제공하고자 함.
  - ○본 연구는 국내외 CCTV 관련 규정 및 설치 현황을 살펴보고, CCTV 설치 배경과 현장교직원과 부모의 요구를 분석하여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바람 직한 방향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는 정책 방향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나. 연구내용

- □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내외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CCTV 설치·운영의 법과 제도 및 기초 통계를 검토하여 현황을 분석함.
  - 유치원·어린이집의 CCTV 설치 관련 신문기사 내용을 분석함.
  -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대상 설문을 통해 유치원·어린이집의 CCTV 설치· 운영에 대한 실태와 요구를 분석함.
  - 유치원·어린이집의 부모, 교사, 원장 대상 심층면담을 통해 CCTV 설치·운 영에 대한 실태와 요구를 분석함.

○이상의 관련 내용분석 및 전문가 자문을 기초로 정책방향 및 개선방안을 제안함.

## 다. 연구방법

- □ 주요 연구 방법으로 문헌연구, 내용분석, 조사연구(설문조사, 심층면담)를 실시하고, 전문가 자문회의 및 간담회를 개최함.
  - ○국내외 CCTV 관련 법령과 지침을 검토하여 관련 제도를 알아보고, 기초 통계 및 선행연구를 통해 유치원·어린이집의 CCTV 설치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함.
  - ○최근 6년간(2010~2015) CCTV 설치 관련 신문기사를 내용분석하여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 설치 배경을 분석함.
  -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을 통해 유치원·어린이집의 CCTV 설치 및 운영 실 대와 요구를 부석함.
  - ○자문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의 방향 설정 및 정책 제언을 검토함.

## 라. 용어정의 및 연구 범위

- □ 본 연구에서는 감시카메라의 대표적인 형태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중 폐쇄회로텔레비전을 CCTV로 정의하고, 실시간 영상정보를 전달하는 네트워크 카메라에 대한 논의를 따로 제언함.
- □ 본 연구는 아동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CCTV 설치와 운영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유치원·어린이집으로 제한하여 살펴봄.

# 2. 연구의 배경

# 가. CCTV 관련 법과 제도

□ 국내

○유치원·어린이집 CCTV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국내 법령은 개인정보보호

법과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하고 있음.

- ○영유아보육법, 영상정보처리 가이드라인은 어린이집 내 설치된 CCTV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며, 유치원 내 설치된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운영되어야 함.
- □ 영유아와 교사의 정보 보호를 위한 절차가 너무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는 제한점이 있음.
  - ○CCTV 미설치를 위한 의견 수렴 절차에 교사의 의견은 포함하지 않는 점, 학부모가 자녀의 신체적·정신적으로 의심증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 열람 이후 학부모 비밀보장에 대한 제재 내 용이 없다는 점 등이 개선되어야 함.

#### □ 해외

- ○해외의 CCTV 관련 법안으로 영국의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 ACT)과 미국의 가족교육권및프라이버시법(Family Education Rights and Provacy)을 살펴봄.
- ○영국은 개인정보보호기구(IOC)를 중심으로 데이터보호법과 부칙, 감시카메라 사용 규정 등을 구체화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와 교육을 함께 제공하여 CCTV 및 감시시스템 활용에 있어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제시함.
- ○미국은 학생정보 공개와 학부모의 열람권, 정정권, 삭제권 및 반론권이 명 문화되어 이들의 권리 실현을 위해 적절한 조치도 함께 규정됨.

# 다. 국내외 유치원·어린이집의 CCTV 현황

- □ 유치원·어린이집 CCTV 국내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기관 유형 및 설립 유형에 따라 설치율에 차이가 있음.
  - 유치원은 전체 8,699개원 중 CCTV가 설치된 경우가 8,173개원으로 전체 94.0%이었으며, 교실 내 CCTV를 설치한 경우는 전체 51.7%로(교육부, 2015)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임.
  - ○어린이집은 전체 43,763개원 중에 CCTV가 설치된 기관은 13,822개원으로

전체 31.6% 이었으며, 보육실 내 설치는 10,874개원으로 전체 24.8%로 1/4 수준이었다. 설립유형별로 보육실 내 설치된 기관을 비교해 보면, 국공립과 직장이 각각 59.5%, 53.9%로 가정 7.1%, 민간 42.8%에 비해 높게 나타남.

#### □ 해외 사례

- ○미국과 영국 모두 주정부 단위에서 일괄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으며, 지자체 혹은 기관마다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로 사립 기관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폭력이나 총기사고 예방 차원에서 설치됨.
- ○유럽권에서는 독일, 프랑스, 핀란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유럽권 나라 들은 CCTV 설치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인권 침해 위험에 좀 더 논의의 초점을 두고 있음.
- 아시아권 나라 모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하고 있으나, 일본 에서는 CCTV 운영기준을 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의 경우 CCTV 뿐만 아니라 안전을 위한 총체적인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라. 선행연구

- □ 아동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은 이미 그것이 발생하고 난 후에는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아동학대로부터 자유로운 안전지대 확보를 위해 CCTV의 도입은 필요함.
  - 그러나 유치원·어린이집의 CCTV 열람 및 운영과정에서 아동의 인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 해외 연구에서도 교육기관 내 CCTV 설치의 효과에 대한 기대와 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공존함.
  - ○CCTV가 학교에 도입됨에 따라 위험요소를 차단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 만 사각지대에서의 '풍선효과'가 존재할 수 있으며, 오히려 교직원과 학생 의 행동을 통제·감시하는 부작용이 존재함.
- □ 국내 선행연구는 CCTV가 안심보육이나 아동학대 예방 및 감시라는 기능에

대해 인정하나 CCTV 영상의 무분별한 열람으로 인한 교사의 사생활 권리 침해와 아동의 낙인 효과,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에 대해 우려함.

○ 반면 유아교육기관 내 CCTV 설치로 인해 안전에 대한 인식이나 실천이 높아졌으며, 아동 간 분쟁의 원인을 발견하고, 교사들을 보호하며, 아동관찰을 통한 부모 상담에 활용 또는 교사의 자기 수업 모니터링 자료로 적용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제안됨.

# 3. 유치원·어린이집의 CCTV 설치·운영 현황 및 요구

### 가. 유치원·어린이집의 CCTV 설치에 대한 전반적 인식

- □ 신문기사에 나타난 CCTV 관련 인식
  - ○최근 6년간 CCTV 관련 신문기사를 검색한 결과,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기사는 272건이었고, 이 중 223건이 2015년 기사로 올해 가장 많은 CCTV관련 내용이 기사화됨.
  - 이 중 CCTV가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학대 및 폭력에 대한 증거로 사용된다는 내용이 9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및 정책관련 내용이 91건, 설치 반대에 대한 내용이 36건, 설치 찬성에 대한 내용이 27건으로 나타남. 그 외 부모의 요구 및 반응, 경찰 대응, 어린이집 동향, 대안, 보완점, 기타 등에 관한 내용은 소수로 여론의 경향성 분석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의 배경을 확인할 수 있음.
- □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교사, 학부모의 CCTV 설치 인식 조사
  - 원장,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치원·어린이집의 CCTV 설치·운영에 대한 의견을 인터뷰한 결과, 학부모는 CCTV의 단점보다 장점에 대해 더 많이 언급한 데 반해, 교사와 원장은 장점보다 단점을 더 많이 언급한 것으로 나타나서 입장 차이를 보임.
  - ○학부모들은 CCTV가 부모와 교사, 기관과의 관계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보았고, CCTV가 안전장치 역할을 하여 안심과 믿음이 간다고 생각하였으 며, 교사 보호와 오해 해명 장치라고 응답함. 반면, 교사와 원장은 CCTV 설치는 통제와 감시로 불신과 오해 초래, 교권에 대한 도전으로 교사의 자

율성이 감소된다고 보았고, 인권 침해 등의 이유를 단점으로 들었음.

- □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CCTV 설치 의견 조사
  -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실과 보육실의 CCTV 설치에 대한 찬·반 의견은 사립 유치원교사들의 52.3%가 찬성한 데 반해, 어린이집 교사들은 반대하는 입장이 64.5%로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반대를, 직장어린이집은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 기관의 설립유형에 따른 입장차이가 컸음.
  - 교실과 보육실의 CCTV 찬성과 반대 이유는 CCTV 설치 찬성 및 반대 이유와 유사하게 나타남.

#### 나. 유치원·어린이집의 CCTV 설치 현황 및 요구

- □ 기관별 CCTV 설치 현황
  - ○본 조사에 참여했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CCTV 설치율은 높은 편이었으나,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교사들의 의견보다는 원장 개인의 의견과 외적 요인의 영향이 크며, 영상정보 열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본 조사에 응답하였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각각 86.9%, 73.8%가 CCTV가 설치되었다고 응답함. 그러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의 기기종류와 설치비용 출처는 과반수 정도의 교사는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남.
  - CCTV 설치시의 이유에 대해서도 유치원 교사들은 모르는 경우가 41.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안전사고 예방 21.5%, 교육청의 지원이 15.1% 순으로 나타남. 어린이집 교사들은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설치했다는 응답이 34.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원장의 설치의지로 이루어졌다는 응답이 24.1%로 나타남. 반면 미설치 이유에 대해 유치원은 원장의 강한 반대 의지와 설치 및 운영비 부담을, 어린이집은 설치 및 운영비 부담이 가장 많았으며, 교직원의 반대 때문이라고 응답함.
- □ 유치원·어린이집 CCTV 설치에 대한 요구
  - ○최근 제정된 CCTV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유치원 교사 중 55.1%, 어린이집

교사의 76.6%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에 비해 직장어린이집 교사가 관련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유치원과 어린 이집 교사의 대다수가 '교직원의 동의'와 '부모와의 CCTV 열람 원칙 합의' 로 응답함.
- 원장, 교사, 학부모 면담을 통하여 CCTV 설치 및 열람에 대하여 보다 심 충적으로 접근한 결과, CCTV 설치에 관하여는 현장에 맞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 설치 시 교사 인권과 보호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 매뉴얼 등을 통한 정확한 지침 전달이 필요하다고 피력함.

#### 다. 유치원·어린이집의 CCTV 운영 현황 및 요구

- □ CCTV 운영 현황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CCTV가 설치된 곳에 안내판이 게시되었는지의 여부', 'CCTV 관리자의 정기적 관리 여부' 및 '유치원·어린이집의 CCTV 운영 관련 규정 유무'에 대한 질문에서 유치원에 비해서 어린이집이 안내 판 게시가 더 많이 되어 있고, 관리도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운영 관련 규정이 있다는 응답도 더 많았음.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 한 관련 소프트웨어 설치 여부'에 대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모른다는 응답이 과반수이상으로 나타남.
  - ○부모들이 CCTV 녹화물을 열람하는 빈도와 이유를 조사한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부모들이 CCTV를 열람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나, 열람 이 유로는 '유아의 상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가장 많았음. 또한, 부모들 에게 CCTV 녹화물의 열람을 제공 시, 유치원 교사들은 열람 요청을 할 경 우 '별다른 동의 절차 없이 다른 유아들과 함께 열람 제공'한다는 응답이 21.5%로 가장 많았음. 반면 어린이집의 경우, '사전에 개인영상정보 열람 동의서 받아 모든 영유아를 보여준다'는 응답이 34.2%, '별다른 동의 절차 없이 다른 영유아들과 함께 열람 제공한다'는 응답이 29.1% 인 것으로 나 타남.

□ CCTV 운	·영에 디	하	요구
----------	-------	---	----

- ○CCTV가 바람직하게 운영되기 위해 바라는 사항에 대해 유치원과 어린이 집 교사들은 1순위로 '교사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록물 관리', 다음 으로 '교사 신뢰성 회복 방안 마런', '교사 보호 및 자기계발 활용 방안 마련', '보호자 열람 시 부가적인 업무 담당 인력 배치' 순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CCTV 열람에 있어서는 열람 요청 시 아무에게나 개방하지 않는 등의 제약이 필요하다는 의견, 노출에 대한 제한도 필요하고, 상시 열람은 문제가 많다는 의견 등이 제안됨. 네트워크 카메라는 부모의 불안감과 오 해의 소지만 커질 뿐이라는 의견 등을 제시함으로써 네트워크 카메라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현함.

# 6. 정책제언

## 가. 기본방향

- □ 유치원·어린이집에 CCTV가 도입된 주요목적인 '아동안전 예방과 아동학대 예방'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CCTV 설치·운영되도록 함.
-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관 특성에 따라 CCTV의 설치·운영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법안 및 지원 정책을 제시함.
- □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CCTV가 설치· 운영되기 위하여 인권보호의 일차적 대상인 아동과 더불어 아동의 보호와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인권과 부모의 권리도 함께 고려되는 방안을 제시함.

### 나. 개선방안

- □ CCTV 설치에 대한 개선방안
  - o CCTV의 합목적적인 설치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CCTV의 교실과 보육실 설치 시 자료수집 시간을 한정하고, 교사실과 교사 휴게공간에는 CCTV 설치를 제한함.
  -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운영에 대한 엄격한 규제 마련

- 아동과 교사의 인권 보호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네트워크 카메라 의 설치·운영에 대한 규제 및 규정 재정비

### ○신규 설치기관 컨설팅

- 관련 지자체에서는 CCTV 설치와 운영에 대한 필요성과 아동과 교사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방안, 교직원과 학부모와의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한 안내 등 구체적인 설치·운영방안을 컨설팅 제시

# □ CCTV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CCTV 운영방안
  - 열람정보 유출에 대한 규제 마련: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영상기록 물 관리자의 책임 강화, CCTV의 외부 위탁에 대한 엄격한 관리 기준 마련 및 해킹 방지, 영상물 열람 시 타 유아의 부모 및 담당교사의 사전 동의 필요
  - 영상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
-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CCTV 운영지원 방안
  - 유치원의 CCTV 설치·운영지원을 위한 「유치원의 영상정보 수집 및 처리 지침」 마련
  - 어린이집의 CCTV 설치·운영지원을 위한「영상정보처리 가이드라인」의 정교화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 보완
- 보호 주체에 따른 CCTV 설치·운영방안
  -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CCTV 설치·운영방안. 아동 초상권 보호 및 아동 학대 증거 확보
  - 교직원의 인권을 위한 CCTV 설치·운영방안. 교직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합의와 교육, 유치원·어린이집 개방성 증진을 통해 부모 감시에서 부모 참여로 전환
  - 부모의 권리를 위한 CCTV 설치·운영방안. 자녀의 개인정보열람 제한권리, 부모의 양육 효능감 증진을 위한 육아지원 정책 활성화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어린이집과 유치원교사의 아동학대사건이 CCTV 영상자료를 통해 밝혀지면서, 교육부1)와 보건복지부2)는 각기 유치원·어린이집의 아동학대 발생에 대한대응과 예방책을 제시하였다. 교사는 영유아가 가정 밖에서 처음으로 애착과 신뢰를 형성하는 존재이며, 아동학대의 신고 의무자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교사에의한 아동학대에 엄중히 대처하기 위함이다. 이에 더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유치원과 어린이집에 CCTV(영상정보처리기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거세졌다.

유치원·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요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서울시는 2009년 4월 '안심보육' 서비스의 일환으로 서울형 어린이집에 CCTV를 달아 IPTV로 중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IPTV 시스템 채택 시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 제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유인책을 펼친 바 있다(권건보, 2011). 영상정보처리 기기 설치의 의무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되어 2013년 6월 임시회에서 심사되었으나, 아동학대 범죄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CCTV 설치비용의 문제, 보육교사의 인권침해 가능성, 보육교사와 아동간 CCTV에 의한 감시로 애착관계 형성의 어려움을 근거로 폐기된 바 있다(보건복지위원회, 2015).

그동안 무산되어 오던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가 포함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2015년 4월 30일)한 데에는 동년 상반기의 사건이 계기가되었다. 의사표현 능력이 부족한 영유아에게 아동학대 예방 등 인권보호와 사후

<sup>1)</sup> 교육부는 「유아교육법」에 아동학대 발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이다(법률 제32조제1항제4호 개정법률안입법예고).

<sup>2)</sup> 보건복지부는 2015년 8월 어린이집에는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 등(제15조의4)을 의무화하고,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자의 어린이집 설치·운영을 금지(제16조), 어린이집 폐쇄(제45조) 및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및 취소(제46조, 제47조, 제48조)를 명할 수 있는 「영유아보육법」을 마련하였다.

증거 확보를 위해 CCTV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보건복지부, 2015). 교육부(2015) 역시 유치원에 CCTV 설치 확대 기본계획을 일선 시·도 교육청에 시달하여, 2016년까지 CCTV 설치율을 90%까지 확대하고, 1대당 설치비 2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유치원과 어린이집 내 CCTV 설치가 가속화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계자들과 CCTV 설치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선행연구들(강미경, 2015; 강선혜, 2015; 김은하, 2013; 임수정·이일랑·이대균, 2013; 정현옥, 2011)은 CCTV 설치가 영유아의 안전사고 원인파악에 유용하고 교사를 보호해 준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CCTV 설치의 단점에 대해 지적하였다. 즉, CCTV의 사각지대에서 아동학대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풍선효과', 교사·아동·부모의 애착 및 신뢰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CCTV에 저장된 영상기록물 속의 교사와 아동의 개인정보가 노출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3) 침해의 소지(권건보, 2011: 82), CCTV와 IPTV를 통해 이루어지는 교사에 대한 노동 감시(권건보, 2011: 101) 등 CCTV 설치로 인해 야기될 갈등과 문제에 대해 충분한 협의와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그 무엇보다도 영유아를 위해 제공되는 교육·보육서비스의 가장 주된 목적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 제1항)'(국가인권위원회, 2014: 786)는 것이어야 한다. 아동은 생명에 대한 고유 권리(제6조), 바르게 발달하고 교육받을 권리(제28조제1항), 표현에 대한 자유권(제12조)이 있으며, 더불어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제19조제1항)가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4: 786-791). 국가는위험이 발생하기 이전단계에서 위험을 사전예방하고 배려함으로써 개인에게 안전을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는 점에서 어린이집 등에 영상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보호조치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조재현, 2015). 이러한 측면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CCTV 설치와 운영은 아동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아동인권 보호의 대상이며 주체는 아동뿐만 아니라 아동의 육아지원자인 부모와 유치원·어린이집의 교직원들이다. 교직원들은 아동과 더불어 CCTV 영상자료의 정보주체이면서, 아동의 발달과 교육에 중요한 변인이기 때문이다. 그러

<sup>3)</sup> 정보주체가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의 흐름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

므로 CCTV의 설치와 운영에 관해 논의를 함에 있어서 CCTV 영상자료의 정보 주체인 아동뿐만 아니라 교직원의 인권도 보호받아야 하며, 부모 역시 영상자료 열람에 대한 권리를 지님과 동시에 자녀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지녔다는 측 면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유아교육·보육기관에 설치되고 있는 CCTV를 아동인권 보호의 주체인 아동, 부모, 교직원의 측면에서 바람직하게 설치·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내용

첫째, CCTV 설치·운영 관련 국내 외 법과 규정,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CCTV 설치·운영 현황,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 현재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CCTV 설치·운영 관련 동향을 파악한다.

둘째, 최근 6년간(2010년~2015년) 유아교육·보육기관의 CCTV 설치와 관련된 신문기사를 내용분석하여 CCTV 설치에 대한 의견의 연도별 경향성, 찬·반의 근거 등 CCTV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 인식을 알아본다.

셋째, 설문조사를 통해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들의 CCTV 설치와 운영에 관련해 인식하는 현황과 요구를 조사하여 효율적인 지원 방안과 정책 가능성을 탐색해 본다.

넷째, 유치원·어린이집의 기관유형에 따라 원장, 교사, 학부모를 심층 면담하여 CCTV 설치 유형, CCTV 설치 후 장단점, CCTV 설치 후 변화, 개선방안 등을 파악한다.

다섯째, 법학, 정보기술, 아동학 전문가 등 학계 전문가와 정책 실무자의 자문을 통해 아동인권 보호를 고려한 유치원·어린이집의 CCTV 설치와 운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 3. 연구방법

### 가. 문헌연구

문헌연구 방법으로 다음의 연구 내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CCTV와 관련된 국내외 법령을 고찰하였다. 둘째, 유치원·어린이집의 CCTV 설치와 아동인권 관련 국내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 나. 기사 내용분석

최근 6년간 4대 일간지(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에 실린 CCTV 관련 기사를 내용분석(질적 데이터 분석을 위한 NVivo 패키지 활용)하였다. 연도별 CCTV 관련 기사 수는 아래 <표 I -3-1>과 같다.

<u>단위: %(수</u>)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수) 유치원어린이집 3.3(9) 3.3(9) 0.4(1)5.5(15) 5.5(15) 82(223) 100(272) 초중고 36.1(61) 10.7(18) 15.4(26) 26(44) 4.1(7)7.7(13) 100(169) 일반 15.1(8) 18.9(10) 30.2(16) 18.9(10) 15.1(8) 100(53) 1.9(1)전체 15.8(78) 7.5(37) 8.7(43) 6.5(32) 49.4(244) 100(494) 12.1(60)

〈표 I-3-1〉 연도별 CCTV관련 기사 수

CCTV 관련 기사 분석은 발췌와 전사, 코딩, 범주화 순으로 질적 자료 분석절차가 이루어졌다. 자료 분석의 신뢰성을 더하기 위해 질적 자료 분석 소프트웨어인 Nvivo 104)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발췌된 CCTV 관련 기사의 중요한 내용의 의미 단위 등을 추출하며 bottom-up 방식의 개방형 코딩을하였다. 다음으로 의미 코딩된 것을 보다 핵심적인 내용으로 축약하는 범주화를수행함으로써 중심 주제를 구체화하였다(박종원, 2014). CCTV 관련 기사인 경우총 272개의 의미 코딩 되었으며, 이를 다시 10개로 범주화하였다. 전체 코딩의분포를 살펴보기 위한 시각화 작업으로 단어 나무(Tree Map)5)을 사용하였다.

#### 다. 조사연구

# 1) 설문조사

<sup>4)</sup> Nvivo는 질적 자료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로 텍스트화된 자료를 단어, 구, 문장 단위로 개별 코딩함으로써 범주를 형성하고 이론을 구축하는 것을 지원한다(정미자, 문희, 선춘자, 이동매, 2014).

<sup>5)</sup> 단어 나무는 빈도가 매우 높게 나오는 단어에 대한 관련성을 찾아 그 단어를 중심으로 연결되는 다른 말들과의 연결을 시각화하여 구체적인 맥락에서 그 의미를 탐구해 보거나 코딩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한다.

# 가)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서울시와 경기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각 150명(총 300명) 표본을 목표로 임의 표집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설문을 동시에 진행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최종적으로 유치원 교사 133명, 어린이집 교사 161명의 응답을 받았다. 이중 잘못된 대상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유치원 교사 107명, 어린이집 교사 107명, 총 214명의 응답을 분석하여 표본 목표 대비 71.3%의 데이터를 최종 분석하였다. 조사대상 기관특성과 응답자 특성은 아래 <표 I-3-2>, <표 I-3-3>와 같다.

〈표 I-3-2〉기관특성

			단위: %(명)
유치원	계	어린이집	계
설립유형		설립유형	
공립	26.2(28)	국공립	17.8(19)
사립	73.8(79)	사회복지법인	-
		법인/단체	5.6(6)
		민간	41.1(44)
		가정	23.4(25)
		직장	12.1(13)
담당업무		담당업무	
부장.수석.원감	25.2(27)	원감(주임)	9.3(10)
교사	66.4(71)	담임교사	80.4(86)
기타	8.4(9)	비담임(보조교사)	10.3(11)
권역별		권역별	
서울	58.9(63)	서울	93.5(100)
경기	41.1(44)	경기	6.5(7)
규모		규모	
40인 이하	2.8(3)	40인 이하	38.3(41)
41-80인 이하	16.8(18)	41-80인 이하	42.1(45)
81인 이상	80.4(86)	81인 이상	19.6(21)
담당유아 연령		담당영유아 연령	
만3세	32.7(35)	0세반	9.3(10)
만4세	29.9(32)	1세반	26.2(28)
만5세	21.5(23)	2세반	30.8(33)
혼합연령	6.5(7)	3세반	13.1(14)
해당없음	9.3(10)	4세반	4.7(5)
		5세반	5.6(6)
		혼합연령	10.3(11)

〈표 I-3-3〉응답자 특성(유치원/어린이집)

, <del></del> .	, -, -, -, -, -, -, -, -, -, -, -, -,	70(77442,412412,	단위: %(명)
유치원	계	어린이집	<u></u> 계
연령		연령	
20대	57.9(62)	20대	40.2(43)
30대	25.2(27)	30대	17.8(19)
40대 이상	16.8(18)	40대 이상	42.1(45)
결혼상태		결혼상태	
미혼	31.8(34)	미혼	43.0(46)
기혼	68.2(73)	기혼	57.0(61)
자녀유무		자녀유무	
있음	24.3(26)	있음	52.3(56)
없음	75.7(81)	없음	47.7(51)
교사경력		교사경력	
1년 미만	6.5(7)	1년 미만	8.4(9)
1-3년 미만	19.6(21)	1-3년 미만	20.6(22)
3-6년 미만	27.1(29)	3-6년 미만	42.1(45)
6년 이상	46.7(50)	6년 이상	29.0(31)
교육경력		보육경력	
1년미만	10.3(11)	1년미만	7.5(8)
1-3년 미만	22.4(24)	1-3년 미만	22.4(24)
3-6년 미만	30.8(33)	3-6년 미만	45.8(49)
6년이상	36.4(39)	6년이상	24.3(26)
학력		학력	
2년제 대학 졸업	3.7(4)	2년제 대학 졸업	18.6(18)
3년제 대학 졸업	43.0(46)	3년제 대학 졸업	34.0(33)
4년제 대학 졸업	35.5(38)	4년제 대학 졸업	7.2(7)
대학원졸 이상	17.8(19)	대학원졸 이상	40.2(39)
유치원 교사 자격 취득 전공		보육교사 자격 취득 전공	
유아교육	99.1(106)	보육학	28.0(30)
아동학		아동학	20.6(22)
교육학/중등교육학		유아교육	7.5(8)
기타	0.9(1)	아동복지	30.8(33)
		기타	13.1(14)

# 나)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CCTV 설치 유형, CCTV 설치 후 장단점, CCTV 설치 후 변화(원장, 교사, 부모, 유아와의 관계), CCTV의 활용을 위한 개선점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I -3-4>와 같다.

〈표 I-3-4〉조사내용

(표 I 3 4/ 호시대응			
조사항목	나	<del>  8</del>	
일반현황	- 기관명, 기관규모, 기관유형 - 기관 소재지	- 담당 업무 - 담당 영·유이연령, 담당 유아 수	
CCTV 설치에 대한 의견	- CCIV 설치 동의 여부         - CCIV 설치 찬성 이유         - CCIV 설치 반대이유         - CCIV 설치로 인한 기여도         - CCIV 설치 동의 여부 및 이유         - CCIV 설치와 관리에 관한 영유아보육법 인지여부	- CCTV 설치와 관리에 관한 영유아보육법 만족도 - CCTV 설치와 관리에 관한 영유아보육법의 적절도	
CCTV 설치 및 운영 현황	<ul> <li>CCIV 설치유무</li> <li>CCIV 설치 장소 및 개수</li> <li>CCIV 설치유형</li> <li>CCIV 설치시기</li> <li>CCIV 설치이유</li> <li>CCIV 설치여부관련 공지 및 의사표현기회 여부</li> <li>임용 시 CCIV 시설 관련 안내여부</li> </ul>	<ul> <li>CCIV 미설치 이유</li> <li>CCIV 설치계획</li> <li>CCIV 운영관련 사항</li> <li>부모들의 CCIV 열람 빈도</li> <li>CCIV 열람 이유</li> <li>녹화물 열람시 타 유아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운영지침</li> </ul>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요구	- 신규 CCTV 설치 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1,2순위	- CCTV 관리 및 운영 시 반영되기 원하는 1,2순위 - CCTV 설치운영 규정의 적절도	
일반특성	- 성별/연령/혼인유무/자녀유무 - 교사경력/보육경력 - 최종학력/소지한 자격증	- 유치원/보육교사자격을 취득한 전공	

# 2) 심층면담

# 가) 조사대상 및 규모

조사대상은 유치원 설립유형별 원장과 교사 각 1인, 어린이집 원장, 교사 각 1인, 유치원에 자녀가 재원 중인 학부모 2인, 어린이집에 자녀가 재원중인 학부모 3인 총 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표 I-3-5〉심층면담 대상 및 내용

	대상			내용	
항목	원장(10인)	교사(8인)	부모(5인)	পান্ত	
유치 원	- 국 공 립 병 설 원장 1인 - 공립 단설 원장 1 - 사립 원장 2인	- 국공립병설 교사1인 - 사립교사2인	- 국공립병설 부모1인 - 사립 부모1인	-CCTV 설치 유형 -CCTV 설치 후 장단점 -CCTV 설치 후 변화(원	
어린 이집	<ul><li>국공립 원장 2인</li><li>민간 원장 1인</li><li>가정 원장 1인</li><li>직장 원장 1인</li><li>공공형 원장 1인</li><li>공공형 원장 1인</li></ul>	- 국왕립교사1인 - 만간교사1인 - 가정교사1인 - 직장교사2인	- 국공립 부모 1 - 만간 부모 1인 - 가정 부모 1인	-CCIV 설치 후 변화원 장, 교사, 부모, 유이와 의 관계) -CCIV 활용을 위한 개 선방안	

#### 나) 분석방법

심층 면담 자료는 전사 자료를 바탕으로 기사내용분석과 동일하게 발췌와 전사, 코딩, 범주화 순으로 질적 자료 분석절차가 이루어졌다. 자료 분석은 질적 자료 분석 소프트웨어인 Nvivo 10을 활용해 분석하였으며, 기사내용분석과 동일하게 의미 단위 등을 추출하는 bottom-up 방식의 개방형 코딩 이후 핵심적인 내용을 축약하는 범주화를 수행하였다(박종원, 2014). 심층 면담은 총 197개가의미 코딩 되었고, 이는 다시 8개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단위: %(수) 원장 교사 범주 학부모 계(수)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 CCTV 장점 50(16) 100(32) 15.6(5) 3.1(1) 15.6(5) 15.6(5) CCTV 단점 20(10) 24(12) 18(9) 100(50) 24(12) 14(7) 근본대책 30.3(10) 9.1(3) 9.1(3) 30.3(10) 21.2(7) 100(33) CCTV 설치 73.9(17) 13(3) 100(23) 13(3) CCTV 열람 13.3(4) 13.3(4) 6.7(2)26.7(8) 40(12) 100(30) 네트워크 카메라 \_ -28.6(2) 42.9(3) 28.6(2) 100(7) 및 모자이크 100(9) 현황 22.2(2) 66.7(6) 11.1(1) 7.7(1) 기타 61.5(8) 30.8(4) 100(13) 계 21.3(42) 23.9(47) 23.9(47) 100(197) 12.2(24) 18.8(37)

〈표 I-3-6〉원장, 교사, 학부모 인터뷰 전체 결과

# 라. 전문가 자문회의 및 간담회

연구의 방향성 설정 및 관련 내용 검토를 위한 학계 전문가(아동인권, 법학, 정보기술 전공) 5인과의 자문을 통해 유치원, 어린이집 내 CCTV 설치와 활용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 담당자와 정책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구분	대상	자문내용
10. 5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CCTV 설치 관련 법/제도 및 개선점
10. 6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사무관	연구방향 및 방법 검토
10. 15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사무관	연구방향 및 방법 검토
10. 21	전기·공학부 교수	CCTV 관련 기술적 문제 및 개선점
12. 1	아동학 교수 1인	정책제언 검토
12. 17	아동학 교수 2인	정책제언 검토
12. 18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1인	정책제언 검토

〈표 I-3-7〉회의 개최

# 4. 용어정의 및 연구의 범위

# 가. CCTV

감시카메라(Surveillance Cameras)는 사회 전 영역에 대한 효율적 감시를 위하여 국가에 의해 시행되는 전자적·효율적 경찰작용의 하나로, 가장 대표적인형태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다. CCTV는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약자로 특정 수신자에게 서비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텔레비전 전송시스템의 화상통신 용어로 TV처럼 영상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회로시스템(open circuit television)과 구별된다(나달숙, 2011). 미국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던 것이 방범, 교통정보수집, 교통단속 등의 공공부문과 아파트, 일반건물, 엘리베이터 등 사적공간의 안전을 위해서도 일반화되고 있다(조재현, 2015: 278).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라는 용어로 사용되며,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제2조 제7호)로 정의된다. 여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한 폐쇄회로텔레비전과 네트워크카메라가 해당된다(법제처, 2015. 9. 14).

네트워크 카메라는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정의 된다6). 본 연구에서는 폐쇄회로텔레비전인 CCTV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네트워크 카메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책제언에 다루었다.

### 나. 아동인권

아동인권은 1989년 UN총회에서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에서 규정되었으며, 생존권, 보호받을 권리, 발달 권, 참여권이 포함된다. 영유아들이 생애초기에 경험하는 학대 경험은 아동인권

<sup>6)</sup>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A%B0%9C%EC%9D%B8%EC%A0%95%EB%B3%B4%20%EB%B3%B4%ED%98%B8%EB%B2%95#undefined(인출일: 2015. 11. 30).

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며, 보호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생존권과 발달권 등에 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CCTV의 설치와 운영방안을 논의함에 있어 아동인 권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권조약에 대한 조약위원회의 해석인 일반논평(국가인권위원회, 2006: 125-126) 중 '제7조 영유아의 권리 이행'에서는, 초기유년기의 아동이 자신의 권리에 있어 인격체로 존중받을 것과, 이들의 권리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법률과정책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아동이 표현에 대한 자유권이 있다는 조항(국가인권위원회, 2014)은 아동이 보호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의미한다. 유치원·어린이집의 CCTV에 저장되는 아동 자신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한도 보호받음과 동시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도 있음을 말해준다. 본 연구는 CCTV의 설치와 운영을 논의함에 있어 이러한 아동인권에 대한 관점을 기초로연구를 수행하도록 한다.

### 다.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아동인권 보호를 위해 CCTV를 설치·운영하는데 있어 유치원·어린 이집으로 한정하여 살펴보고, 아동인권을 보호하는 주체로써 아동과 부모, 교직원을 규정하여 각각의 권리에 대한 부분도 논의에 포함하도록 한다.

# Ⅱ. 연구의 배경

# 1. CCTV 관련 법과 지침

# 가. 국내

유치원·어린이집의 CCTV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영유아보육법에 주로 제시되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영상정보 관련 내용에 대한 부분은 유치원·어린이집의 CCTV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근거 법령으로, 영상정보의 정의와 범위, 설치구역, 설치를 위한 사전 의견 수렴 절차, 동의 절차, 운영과 관련되어 안전성 보호 조치, 안내판 설치, 정보 삭제 및 열람 요청등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제시되어 있는 CCTV 설치관련 내용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좀더 어린이집 상황에 맞추어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영유아보육법에는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목적, 신고절차, 열람절차나 열람대장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영상정보를 포함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근거법령이기 때문에 포괄적이며 우선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면, 영유아보육법은 좀 더 어린이집 상황에 구체적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법령과 별도로 CCTV의 설치와 운영을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시되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다.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기준으로 구성되었다(행정자치부, 2015: 1).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이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CCTV 설치·운영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은 '영유아보육법',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 2).

본 연구에서는 법령을 중심으로 유치원·어린이집 내 CCTV 설치 및 운영 관련 법적 근거를 살펴보았다. 또한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의 지침 내용 중 법령

에 없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1) 설치 관련 법령

#### 가) 영상정보 정의

영상정보의 정의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 "처리", "정보주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뿐만 아니라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특히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도 "개인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일정한 공간에 촬영, 유·무선망으로 전송이 되는 장치로 정의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정하는 장치로 위임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7, 표 II-1-1 참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언급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구체적인 범위로 폐쇄회로텔레비전, 네트워크 카메라를 지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CCTV는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유무선 폐쇄회로를 통해 전송되고 녹화·기록할 수 있는 장치, 네트워크 카메라는 영상정보를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수집·저장 할 수 있는 장치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설치되는 CCTV 관련 기기에 모두 적용되는 법령이다.

한편 행정자치부에서 공공기관에 적용이 되는 영상정보 가이드라인에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정의가 추가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행정자치부의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제9호에 의거하여 개인영상정보에 대한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개인영상정보"는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에 바로 적용 가능한 영상정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다. 어린이집 영상정보 가이드라인에는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등 법령을 기본으로 어린이집 특성에 맞게 자세한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법령에 제시된 내용을 제외하고, 영상정보 정의와관련해서는 "영상정보처리기리 통합관리"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포함하고있다.

〈표 Ⅱ-1-1〉영상정보 정의에 대한 근거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 가이드라인	어린이집 영상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제2조(정의) 변에의 용어. 영어는 작성의 안한 주상을 집 2014.3.24- 살한 주상을 집 2014.3.24- 상하는 개인정 2014.3.24- 기반인 생명및 개인에 생명및 개인에 생명및 개인에 생명및 개인에 생명및 개인 성명및 개인에 생명및 개인에 생명및 개인에 생명및 기반 보고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장치"란 다음 강치"란 다음 강치"란 다음 강치"란 다음 가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 다음 가 일저한 공간에 지수적 으로 설치된 카메을 통하여 부상이는 장치 한 경반을 당하여 부산된 목상정 수 있도록 의 전상정보를 통하는 유무선 화하는 가부에 전속된 로양 생정보를 하는 장치 나 가부에 전속된 로양 생정 보를 하는 장치 나 가부에 전속된 로양 생정 보를 하는 장치 나 가나를 열상정 보를 위한 경치된 가부에 지수적 보를 함하는 기기를 받는 지수 이로 함하는 장치 나는 가기가를 하는 자가 등의 목하는 장치 나를 장치 기기를 하는 자가 등의 목하는 장치 나를 당하는 장치 나를 당치 있도록 하는 장치 기기를 가게 하는 가지가 하는 가지가 하는 것이 되었다면 하는 것이 되었다면 되었다면 하는 것이 되었다면 하는 것이 되었다면 되었다면 하는 것이 되었다면 하는 것이 되었다면 되었다면 되었다면 되었다면 되었다면 되었다면 되었다면 되었다면	"개인영상정보"라 함으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개인 동일성 여부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표준지침제2조제9호)	"영상정보처리기기 통 합관리"란 기관 내 또 는 기관 간에 영상정 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 을 위해 목적별로 설 치된 영상정보처리기 기를 물리적으로 통합 하여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관리 및 영하는 것을 말함,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main.html)(인출일: 2015년 11월 30일). 1. 개인정보보호법: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A%B0%9C%EC%9D%B8%EC%A0%95%EB%B3%B4%20%EB%B3%B4%ED%98%B8%EB%B2%95#undefined
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A%B0%9C%EC%9D%B8%EC%A0%95%EB%B3%B4%20%EB%B3%B4%ED%98%B8%EB% B2%95#undefined

3. 행정자치부(2015).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1p 3-1.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시행 2014.11.25.] [행정자치부고시 제2014-1호, 2014.11.25., 타법개정]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20000040590&chrClsCd=010201&admFlag=0. A constant of the co

4. 보건복지부(2015).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2p

#### 나) 설치 구역 및 예외

CCTV를 포함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관련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기, 범죄 예방 및 수사가 필요한 경우로 포괄적인 내용만 제시되어 있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있음에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는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등이다.

영유아보육법에는 어린이집의 CCTV 설치 구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며,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 보안을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어린이집 CCTV 설치는 영유아 안전과 어린이집 보안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과 관리도 이루어져야 한다고볼 수 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보호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어린이집, 유치원도 아동보호구역으로 파악하여 설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과 아동복지법에는 기관 내 설치 구역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설치 구역에 대해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제시되어 있다.

행정자치부에서 배포한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 가이드라인은 "공개된 장소" 와 "비공개된 장소"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중 "비공개된 장소"의 예시로 학생, 교사 등 학교 관계자만 출입이 가능한 학교시설인 교실, 실험실 등도관련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행정자치부, 2015, 각주 7 참조).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 가이드라인에는 보육실, 공동 놀이터, 식당 등에는 1대 이상 설치하도록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출입로, 내부 계단 등은 어린이집 특성에 맞게 추가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sup>7)</sup>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출처: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5항의 2 http://www.law.go.kr/lsSc.do?meruld=0&spl=&subMeru=1&ruvYr=1&section=&tabNb=&query=%EA%B0%9C%EC%9D%B8%EC%A0

http://www.law.go.kr/kSc.do?menuld=U&p1=&subMenu=1&mwYn=1&section=&tabNo=&query=%EA%BU%C%BC%9D%B8%EC%AO%B5%BB%B3%B4%2D%B8%B4%BD%B8%B4%HD%88%B8%B8%B8%B5%B4mdefined(인출일: 2015년 11월 30일).

〈표 II-1-2〉설치와 관련된 근거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 가이드라인	어린이집 영상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제25조(영상정보처라)기의 설차 운영 제한) ①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위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라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 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적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5조의4(폐쇄회 설 로텔레비전의 로텔레비전의 을 는 학명이집을 이동 이동 이동 이동 이 정보 보이 이 정보 보이 이 정보 보이 이 전보 보이 이 이 로텔레비전(이로 변명해 회리라 관리 한다.	제2조(이동보호구역 에서의 영상정보보고 기기 설치 등 대체 위한 이동의 등 이동의 이동의 한 이	"공개된 장소'란 공원, 도로, 지하 철, 상가 등 불특 정 다수(정 및 통 제 가 접근 및 통 제 한을 받지 아니 하는 장소를 미합니다. "비공' 전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이 있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보자체의 동의나 다음과 끝한 경어인 당시인영 상정보의 수집 이왕이 기능합니다.	설치라의 한 식도간이 한 식당의 이주 의이 되었는 보고 이 그 및 식도간이 한 시간 이 그 및 식도간이 하다. 강당은된 마다에 가장 이 다음이 되었는데 하다. 강당은된 마다에 하라는 목 하는데 함께 가장 한 시간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인출일: 2015년 11월 30일). 1. 개인정보보호법:

http://www.lawgo.kr/kSc.do?menuld=0&p1=&subMenu=1&nwYrr=1&sectior=&tabNb=&query=%EA%B0%9C%BC%D7%B8%BC%A0%5%EB%B8%B4%20%BB%B3%B4%ED%8%B8%EB%B2%5#undefined
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mwYn=1&section=&tabNo=&query=%EA%B0%9C%EC%9D%B8%EC%A0%95%EB%B3%B4%20%EB%B3%B4%ED%98%B8%EB%B2%95#undefined3. 아동복지법:

5. 부장국자 [1.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mwYn=1&section=&tabNo=&query=%EA%B 0%9C%EC%9D%B8%EC%A0%95%EB%B3%B4%20%EB%B3%B4%ED%98%B8%EB%B2%95#undefined 4. 행정자치부(2015).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2p 5. 보건복지부(2015).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6p

<sup>8)</sup> 비공개된 장소 예시 중 본 연구와 관련 내용: 학생, 교사 등 학교관계자만 출입이 가능한 학교시 설(교실, 실험실 등)이 포함됨(출처: 행정자치부(2015).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 이드라인. 3p).

<sup>9) [&#</sup>x27;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예 중 관련 내용: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8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관한 사 항을 시행해야함(출처: 행정자치부(2015).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2p).

설치를 하지 않는 예외사항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목욕실, 화장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장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영 유아보육법에는 설치지역이 아닌 보호자 전원 동의를 받았을 때 혹은 네트워크 카 메라가 설치된 경우에 기관 내 CCTV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표 II-1-3〉설치의 예외

개인정보보호법	영유아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15조의4(폐쇄회로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②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실, 발한실(發行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1. 어린이집을 설차 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	를 받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2.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및 보육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보호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
아니하다.	<u></u>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인출일: 2015년 11월 30일). 1. 개인정보보호법:

http://www.lawspok/lsc.do?menuld=0&p1=&subMenu=1&nwYrr=1&sectior=&tabNb=&query=%EA%B0%9C%EC%D0%B8%BC%A0%5%BB%B8%B4%20%B8%B8%BB%B2%5#undefined
2. 영유아보호법: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mwYn=1&section=&tabNo=&query=%EA%B0%9C%EC%9D%B8%EC%A0%95%EB%B3%B4%20%EB%B3%B4%ED%98%B8%EB%B2%95#undefined

## 다) CCTV 성능 기준

유치원·어린이집에 설치되는 CCTV 성능 기준에 대해서는 법령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대신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 가이드라인에서 모니터 구현 기능, 녹화(저장)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화면 속 인물 행동이 식별이 가능하도록 HD급 이상의 화질을 갖추어야 하며, 임의조작 혹은 녹음 기능은 포함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네트워크 카메라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임차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내용이므로 권고사항으로 볼 수 있으며, 위반 시 법적인 제재 조치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 가이드라인

-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 각호에 따른 장치로써 보육실 등을 촬영하고 모니터를 통해 그 영상을 구현할 수 있으며, 그 영상정보를 녹화(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 어야 함.
-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화면 속 인물의 행동 등이 용이하게 식별될 수 있는 수준의 고해상도(HD, High Definition) 이상의 화질을 가진 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함.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저장장치는 고해상도(HD, High Definition)이상의 화질로 60일 이상의 저장 용량을 갖춘 것으로 하여야 함.
- -카메라는 보육실 등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함.
-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임의로 조작이 가능하거나 녹음기능이 있도록 설치되어서는 아니 됨.
-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에도 동일한 성능 및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권장함.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차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음.

출처: 보건복지부(2015).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5p

## 라) 설치 시 준수사항

설치 절차는 사전 의견 수렴, 동의 절차, 신고, 운영 및 정보 수집 제한, 안내판설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 (1) 사전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하기 위해 공청회·설명회를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하도록 되어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1항에서는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설치를 위해서는 부모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만 명시되어 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기 전 설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전의견 수렴 절차가 있지만, 영유아보육법에는 이미 설치를 의무화하고 미설치를 위한 예외사항만 제시되어 있어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여부를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수 있는 원장, 학부모의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 가이드라인에서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미설치 또는 운영을 중지하는 경우 학부모 총회의, 운영위원회 등의 방법이나 교사, 학부모 대상 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사전의견 수렴을 할 수 있다'라고 제시되어 있어 CCTV 설치에 대해서도 사전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 가이드라인은 법령이 아닌 권고사항이므로, 어린이집의 CCTV 설치는 영유아보육법 내용을 우선적으로 준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판단해야하다.

⟨표 Ⅱ-1-5⟩ 사전 의견 수렴

(표 II-I-5/ 사진 의견 구임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어린이집 영상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운영 제한) ③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 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 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절치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①법 제25조제(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차리기)를 설차 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잘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제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정취 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②법제25조제안항 단서에 따른 사설에 영상정보처리가기를 설차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부터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관계 전문가 2. 해당 시설에 중시하는 사람,해당 시설에 구금되어 있거나보호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사람의 보호자 등 이해관제인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 미설치 또는 운영을 중지하는 경우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방법으로 사전에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 1. 학부모 총회의 개최 2. 운영위원회 개최 3. 그 밖에 해당 영상정보처 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향을 받는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 문조사 등의 실시 -학부모 총회의 주재자 및 운 영위원회의 위원장 등은 영상 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해 공정하게 의견이 수 렴되도록 진행하여야 함.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인출일: 2015년 11월 30일). 1. 개인정보보호법:

http://www.law.go.kr/lsSc.do?menuld+0&p1=&subMenu=1&nwYr=1&section=&tabNo=&query=%EA%B0%9C%EC%9D%B8%EC% A0%5%EB%B3%B4%20%EB%B3%B4%ED%98%B8%EB%B2%95#undefined

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mwYn=1&section=&tabNo=&query=%EA%B 0%9C%EC%9D%B8%EC%A0%95%EB%B3%B4%20%EB%B3%B4%ED%98%B8%EB%B2%95#undefined 3. 보건복지부(2015).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4p

### (2) 동의 절차

동의 절차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제시된 내용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당사자나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언급되어 있다. 반면,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 가이드라인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무화된 어린이집 CCTV 설치를 하지 않고자 할 때는 보호자 전원의 동의(서면동의 포함)를 받을 때 가능하다는 점이 제시되 어 있다.

교사의 경우 CCTV에 관련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당사자임에도 미설치 를 위한 동의 절차에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재고가 필요한 부분이라 보여진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은 모든 개인정보에 적용되며, 어린이 집 내 설치된 CCTV 정보도 예외일 수 없다.

〈표 Ⅱ-1-6〉동의 절차

	(표 11 1 0/ 6의 교지	
개인정보보호법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영상정보 처리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법 자료 수집을 위한 동의 절차>	<cctv td="" 미설치를<=""><td>위한 동의 절차&gt;</td></cctv>	위한 동의 절차>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따라 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 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위하여 필요한	제15조의4(폐쇄회로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어란이집을 설차 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2. 어란이집을 설차 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보호 법」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 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당해 연도 입소 상담과정에서 영상정 보처리기기에 대해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보호자가 동 의 여부를 결정토록 하여야 함. 아런이집 설치·윤영자는 보호자의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설치 또는 운영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 의사를 이유로 입소 거부, 퇴소 종용 등 불이 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 서면동의는 신규 반 편성월을 기. 다만, 입소 상담과정에서 미리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이로 갈음할 수 있음 2. 최초 설치시에는 최초 설치시에는 최초 설치 의사결정 전에 동의를 받아야 함 기준일 다음에 입소한 보호자의 동의 여부는 기 결정한 시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다만, 어린이집 설차 운영자는 상기 보호자의의사를 확인하여 차년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에 반영하여야 함보자의의사를 확인하여 차년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에 반영하여야 함보자의 동의 역부는 특별자치도자사사군구청장이 신고 수리시정한기간 내에서 유효하며, 차년도에는 다시 동의를 받이야 함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인출일: 2015년 11월 30일). 1. 개인정보보호법: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A%B0%9C%EC%9D%B8%EC%A0%95%EB%B3%B4%20%EB%B3%B4%ED%98%B8%EB%B2%95#undefined

## 2. 영유아보호법: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A%B0%9C%EC%9D%B8%EC%A0%95%EB%B3%B4%20%EB%B3%B4%ED%98%B8%EB%B2%95#undefined

3. 보건복지부(2015).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8p

### (3) 신고

신고 절차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나타나있다. 어린이집 내 CCTV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 전원 동의서를 첨부하여 해당 관할 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신고 시 적용기간은 1년이 범위 단위로 정해져 있으며, 이는 어린이집 입소 등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학부모의 변경 시기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해당 법령에 의하면 어린이집 CCTV 미설치를 위해서는 해마다 학부모 전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 〈표 II-1-7〉신고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제9조의2(폐쇄회로텔레비전 미설치 등에 관한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 등) ①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1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받은 동의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 2.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관리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 ②제1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1년의 범위에서 미설치기간 또 는 미관리기간을 정하여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인출일: 2015년 11월 30일).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mwYn=1&section=&tabNo=&query=%EA%B0%9C%EC%9D%B8%EC%A0%95%EB%B3%B4%20%EB%B3%B4%ED%98%B8%EB% B2%95#undefined

## (4) 운영 및 정보 수집 제한

<표 Ⅱ-1-8>을 보면, 설치된 CCTV 운영의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개인정보호 법 제25조에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되 며,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언급되어 있다. 또한 안전성 확보 조치와 운 영·관리 방침을 마련하도록 되어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 5에도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시 임의 조작이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또 한 녹음기능 사용을 금지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지 않은 저장장치에 해당 영상을 저장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표 Ⅱ-1-9>를 보면, CCTV를 통한 정보 수집 제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개인정보 수집 시 최소한의 개인정보 를 수집해야 하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는 처리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어린이집 CCTV 설치 이후 수집된 영상정보 자료는 최소한의 개인정보이어야 하며, 사생활 침해 위험이 있 는 정보는 처리하지 않아야 된다는 점은 해당 법령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영 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에서도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시 아동학대 예 방과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영상정보 수집과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사생활과 권 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에 대해 언급되어 있다.

### 〈표 II-1-8〉 운영 제한 기준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영유아보육법
케이트 구(여 시구 나라 마리 이 어 게 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6)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매리, 아저서 합니에 되어 자주기를 참석하 합니다.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②어란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5조의4제1항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 으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 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 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인출일: 2015년 11월 30일). 1. 개인정보보호법: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rr=1&sectior=&tabNo=&query=%EA%B0%9C%BC%9D%B8%BC%A0%5%EB%B3%B4%20%BB%B3%B4%20%BB%B8%BB%BB%B2%55#undefined 2. 영유아보호법: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A%B0%9C%EC%9D%B8%EC%A0%95%EB%B3%B4%20%EB%B3%B4%ED%98%B8%EB%B2%95#undefined

### 〈표 II-1-9〉 정보 수집 제한과 관련된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당한다. 1. 이동학대 예방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본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라이카드록 할 것 본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간단가 참해받을 가능성 과 그 위험 정도를 과하여 영상정보로 안전하게 관리할 것 같이 되었다고 되었다고 되었다고 되었다고 되었다고 되었다고 되었다고 되었다고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당한다.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수 기상을 영유하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참해받을 가능성과 기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으로 기상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면서이 심해할 우러가 있는 개인정보도서 3. 3개약 및 모프리스크는 등 정보구체의 가능을 심해를 최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 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라 하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	②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지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 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 과 그 위험 정도를 고당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3.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인출일: 2015년 11월 30일).

### (5) 안내판 설치

CCTV 운영시 안내판 설치와 관련된 법령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제시되 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4조에는 안내판에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는 점이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유치원·어린이집의 CCTV 설치 안내판에는 해 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 가이드라인에서는 안내판 설치 장소로 어린이집 출입구나 주변 경계부에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표 Ⅱ-1-10〉 안내판 설치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어린이집 영상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④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안내판의 설치 등) ①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차 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차 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수 있도록 법 제25조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인식할수 있게 설치되어야 함. -어린이집 내 시설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내 시설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일부 장소에만 설치할수 있음. 다만, 다음 각호의 장소에는 안내판을 반드시 설치하여야함. 1. 어린이집 출입구 2. 어린이집 주변 경계부(담장)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인출일: 2015년 11월 30일). 1. 개인정보보호법:

http://www.law.go.kr/lsc.do?menuld=U&p1=&subMenu=1&nwYr=1&section=&tabNo=&cquery=%EA%BU%9C%EC%9D%B8%EC%A0%5%EB%B3%B4%20%EB%B3%B4%ED%88%B8%EB%B2%5#undefined

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mwYn=1&section=&tabNo=&query=%EA%B0%9C%EC%9D%B8%EC%A0%95%EB%B3%B4%20%EB%B3%B4%ED%98%B8%EB%B2%95#undefined3. 보건복지부(2015).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6-7p

## 2) 운영 관련 법령

## 가) 안전 및 점검

CCTV 설치 이후 안전한 관리와 관련된 법령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와 제 31조에 나타나있다. 제29조에서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내부계 획을 수립하고, 기록을 보관하도록 언급되어 있으며, 제31조에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총괄할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 제15조 의 5 3항에도 어린이집 내 영상정보기기 설치 시 안전한 관리를 위한 내부계획

수립, 기록보관을 하도록 언급되어 있으며, 4항에는 영상정보 열람으로 인해 영 유아와 보육교직원이 권리가 침해가 되지 않도록 조사·점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9조의 9에는 어린이집 내 CCTV 조사·점검 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에 대해 제시되어 있다. 점검사항은 CCTV 설치 장소, 저 장, 용량, 내부 관리계획 수립 실태, 열람 현황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II-1-11〉 CCTV 안전조치 및 점검 관련 근거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 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 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지획력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력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의 지정)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 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③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에 설치한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영유아 및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참해되지 아니하도록 보건 부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사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의9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점검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 15조의5제4항에 따라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점검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설치 장소, 저장 용량, 화소 등 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 2.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실태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의 열람 현황 등 영상정보의 사용 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점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제15조의5제4항에 따라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점검에 포함시킬 필요 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일락 실태의 조사·점검에 포함시킬 필요 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일국가 및 연락 실태의 조사·점검을 들은 정보주시 등의 방법으로 하되, 영유아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서면조사등의 방법으로 하되, 영유아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증기가 침해되거나 침해되거나 침해되거나 침해되거나 침해되거나 침해되거나 침해되거나 침해되거나 침해되거나 집해되거나 집해되거나 집해되거나 집해되어나 집안 조사·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인출일: 2015년 11월 30일). 1. 개인정보보호법:

http://www.lawsgokr/lsc.do?menuld=Usp1=&subMenu=l&nwYn=l&section=&tabNb=&query=%EA%B0%9C%EC%D7%B8%EC%A0%5%B8%B8%B8%B8%B8%EB%B2%5#undefined 2. 영유아보호법:

4. ㅎㅠ - (포포크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mwYn=1&section=&tabNo=&query=%EA%B0%9C%EC%9D%B8%EC%A0%95%EB%B3%B4%20%EB%B3%B4%ED%98%B8%EB%B2%95#unclefined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 가이드라인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안전조치 및 점검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리 컴퓨터 암호화, 저장장치의 제한된 구역에서 보관, 수집 영상에 대한 접근 권한 범위, 수집된정보 재생 시 접근 권한 범위 등이 언급되어 있다. 또한 수집된 자료의 효율적관리를 위해 지능형 감지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원장은 책임자로서 실시간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하며, 주기적인점검조사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표 II-1-12〉CCTV 안전성확보/지능형 감지시스템/점검 관련 내용

<u>표 II 1 12/ 001</u>	V 200341/No8 6N/	1-0/00 22 410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 가이드라인		
안전성 확보	지능형 감지시스템	점검
1.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컴퓨터에 대한 부팅암호 및 로그인 암호 설정 2.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컴퓨터에 대한 로그인 기록이 남도록 설정하고 관리 3. 저장장치는 접근이 제한된 구획된 장소에 보관 4. 잠금장치 설치 5. 저장장치를 보관할 별도의 공간이 부족할 경우 저장장치를 훼손하기 어려운케이스 등에 넣어서 보관 6.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운영 담당자 및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 기능성되가 열람·재생되는 영상정보가 열람·재생되는 영상정보가 열람·재생되는 경상정보가 열람·재생되는 기상으로 제한 기능성의 경우 접근 권한이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하여야 하며,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 하여야함.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관제를 위하여, 지능형 영상 감시 시스템(이상 정후 영상 촬영 시 자동 알림기능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 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기준 수립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유무인 감시 및 관리 시스템을 포함한 실시 간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 여 운영하여야 함 -유인시스템: 영상정보관리 책임 자가 감시 및 관리하는 시스템 -무인시스템 : 지능형 영상 감시 시스템으로 대체 가능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 영 등과 관련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 건되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출처: 보건복지부(2015).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12-14p

어린이집 CCTV 설치 이후 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근거 법령은 없지만, 보건복지부 영상정보처리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어린이집 CCTV관리 책임자를 원장으로 지정하고 그 역할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역할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3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9 1항에 모두 관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내부계획에 포함되어

야 할 내부 관리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 가이드라인에 제시되어 있다. 내부 관리계획에는 설치목적, 책임자 및 연락처, 성능 및 촬영범위, 보관, 관리 방법 등 전반적인 관리 절차가 포함될 수 있도록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표 II-1-13〉 CCTV 관리를 위한 책임자/내부 관리계획 관련 내용

(표 II 1 10/ 001V 현대를 개한 국급자/대부 현대계속 한반 대중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 가이드라인			
책임자 지정	내부 관리계획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책임자가 됨. 1.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이라 한다)가 됨. 2. 관리책임자 이외에 운영담당자,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3. 관리 책임자는 어린이집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열람 요청의 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열람 요청의 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열람 요청의 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열라 사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담당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4.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 및 특이사항 발생 시 보고, 영상자료 녹화 및 검색, 기타 책임자 및 운영담당자가 지시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함. 5. 어린이집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책임자로 영상자료의 유출·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함.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할 경우 법 제15조의5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내부 관리 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함.  1. 영상정보처리기기 내부 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되 어린이집의 실정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 할 수 있음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영상정보처리기기 분영부사 책임자 및 연락처-설치· 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 장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사행규칙 제9조의3 제4항에 따른 영상정보가 서장되는 장치 또는 기기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방식-영상정보처리기기실 기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방식-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방식-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나터링과 관련된 사항-시행규칙 제9조의3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최소 보관기간이 경과한 영상자료는 자동 삭제 가능 2. 어린이집의 원장은 내부 관리계획을 정보 주체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어린이집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함.		

출처: 보건복지부(2015).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11-12p

## 나) 보관 및 삭제

CCTV 영상 보관기간은 개인정보보호법에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대신 영유 아보육법 제9조의9 제3항에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되어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 규칙 제9조의3 제2항에서는 영상정보 열람 요청 받은 자료에 대해서는 보관기간 60일이 지나더라도 영상을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도 보관기간을 60일로 제시하고 있으며, 영상정보 저장기능 장치에 대해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되는 저장장치나 기기로서 한정한 내용의 법령을 추가하여 보관방법에 대한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하였다.

하지만 행정자치부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 가이드라인에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5조제2항에 의하여, 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는 내용이 제

시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 가이드라인에서는 보존기간 60일을 준 수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보관 기간을 60일로 제시하 고 있다. 또한 추가적으로 녹화된 영상 화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HD 이상 화소 로 저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표 Ⅱ-1-14〉저장 및 보관기간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 가이드라인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 가이드라인
제9조의9 (폐쇄회로텔레비전 의 설차·관리 및 열 람 실태의 조사점 검등) ③어린이집을 설 치·운영하는 자 는 폐쇄회로텔레 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의3(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 ①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법 제15조의4제3항에 따라 60일 이상 보관하고 있는 폐쇄회로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때20조의8제1항제3호에 따른 반구하고 웨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관리의학 어저 정한 주기에 나라는 제4제화이도 불구하고 폐쇄회로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기간이 60일이 되기 전에 법 제15조의4제3항에 대한 열람을 요청받은 하에 대한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15조의4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더라도 해당 영상을 삭제해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의보관기준의 및 보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9.18.]	해당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 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 란한 때에는 보유기 간을 영상정보의 수 집 후 30일 이내로 합니다.(표준지침 제 45조제2항)	녹화된 영상자료는 화질이 담보된 수 있 도를 고해상도(HD, High Definition) 이 상의 화소수로 1초당 10장 이상의 프레임 이 저장되도록 설정 하여 운영하여야 함. *보존기간 60일 이상 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됨.(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인출일: 2015년 11월 30일). 1. 영유아보호법:

http://www.law.go.kr/lsSc.do?menuId=U&p1=&subMenu=1&mwYn=1&section=&tabNo=&query=%EA%B0%9C%EC%9D%B8%EC%A0%95%EB%B3%B4%20%EB%B3%B4%ED%98%B8%EB%B2%95#undefined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 상규야모육집 시행기석:
http://www.law.go.kr/lsSc.do?menuld=0&p1=&subMenu=1&mwYn=1&section=&tabNo=&query=%EA%B0%9C%EC%9D%B8%EC%A0%95%EB%B3%B4%20%EB%B3%B4%ED%98%B8%EB%B2%95#undefined
3. 행정자치부(2015).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17p
3-1.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시행 2014.11.25.] [행정자치부고시 제2014-1호, 2014.11.25., 타법개정]

4. 보건복지부(2015).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18-19p.

행정자치부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 가이드라인에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1조제1항에 근거를 두고, 보유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 가이드라인에서는 CCTV 영상자료 삭제는 보존기관 60일 이상 자료에 한해 적용되며, 삭제주기는 3개월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열람 요청이 있거나 사고와 관련된 영상은 보존기간을 초과하여 보존되도록 조치해야 하며, 보육교사는 본인이 해당되는 영상자료가 보존기간이 지났을 때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원장은 들어줘야 한다는 점이 언급되어 교사의 권익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 〈표 II-1-15〉 영상정보 삭제

(보관 및 파기)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된 후 지 체 없이 삭제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음. 보유기간이 경과하면 개인영상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며'지체 없이'란 보유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를 의미합니다.(표준지

침 제11조제1항)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 가이드라인

##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 가이드라인

- 1. 보존기간이 경과한 영상정보자료는 어린이 집원장이 법 제15조의5 제3항의 관리계획 에 따라 주기적으로 삭제하여야 함.
- 다만 내부 관리계획에 따라 저장용량을 초 과하여 이전 기록이 자동 삭제되는 경우에 는 제외함.
  - \* 보존기간 60일 이상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됨(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150만원)
- 2. 영상정보 삭제 주기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3. 열람 요청이 있거나 사고와 관련된 영상으로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해당 영상이 보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추가 보존 사유 해소시즉시 삭제하여야 함.
- 4. 보육교사 등 정보주체는 자신 또는 보호하는 아동의 영상정보의 존재 유무를 어린이 집의 원장에게 요청(별지 제6호 서식)할 수 있고 보존기간이 경과한 영상자료는 즉시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이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출처: 1. 행정자치부(2015).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17p 1-1.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시행 2014.11.25.] [행정자치부고시 제2014-1호, 2014.11.25., 타법개정]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200000040590&chrClsCd=010201&admFlag=0(인출일: 2015년 11월 30일)

3. 보건복지부(2015).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19p

## 3) 열람 요청 및 제공 관련 법령

## 가) 열람 요청

CCTV 영상자료 열람은 보호자가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은 영유아보육법 제15 조의5에 명시되어 있다. 보호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관계자, 영유아 안전업무수행을 위해서, 재판 등의 목적에 의해서도 제3자가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표 Ⅱ-1-16〉 열람 요청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어린이집 영상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이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비에따라 요청하는 경우 기관의 때라 요청하는 경우 기관의 제42조 또는 「아동복지법」 제66조 등 법령에서 정하는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제기및 유지, 법원의 자관의 제기및 유지, 법원의 재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자라 필요한 경우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열차기가 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의 수행하는 경우	제9조의4(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①보호자는 법 제1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는 피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열람 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1. 보호자는 법 제15조의5 제1 항 제1호에 따라 어린이집 의 원장에 대하여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 학대 또는 안 전사고로 신체·정신적 피해 를 입었다고 의신될 경우에 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직접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음. 2. 열람 요청할 수 있는 설치된 카메라의 영상자료에 한한 가 등관 열리 장소와 일시 등 필요한 사항을 일시 등 필요한 사항을 일시 등된 요청자에게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함. 보이 자 등과 협의 된 그러하지 아니함. 열람의 일시는 보호자와 어린이집의 원장이 열람의 원정하여 결정하되 가 등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가 급적 조속히 이루어 질수 도록 하여야 함.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인출일: 2015년 11월 30일). 1. 영유아보호법: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mwYn=1&section=&tabNo=&query=%EA%B0%9C%EC%9D%B8%EC%A0%95%EB%B3%B4%20%EB%B3%B4%ED%98%B8%EB%B2%95#undefined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A%B0%9C%EC%9D%B8%EC%A0%95%EB%B3%B4%20%EB%B3%B4%ED%98%B8%EB%B2%95#undefined

3. 보건복지부(2015).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14-15p

상기 <표 Ⅱ-1-16>을 보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4에는 보호자가 자

녀 또는 보호아동이 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 심되는 경우에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진단서나 증거자료가 아닌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라는 점 때문에 무분 별하게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고 보여진다.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 가이드라인에 보면 아동의 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로 되어있다. 하지만 의 료진단서와 같은 실질적인 증빙서류 없이 의심되는 경우에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열람 요청이 많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밖에도 열람 요청 자료를 공개 장소에 설치된 카메라 영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열람 요청에 따른 답변 기한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다.

## 나) 열람 거부

보호자의 CCTV 영상자료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영유 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3항과 제4항에 나타나있다. 거부 사유에 대해 10 일 이내로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나타나 있으며, 보관기간이 지났거나 정 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되어 있다.

#### 〈표 II-1-17〉 열람 거부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인출일: 2015년 11월 30일).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A%B0%9C%EC% 9D%B8%EC%A0%95%EB%B3%B4%20%EB%B3%B4%ED%98%B8%EB%B2%95#undefined

### 다) 열람 절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4항에 보면, 보호자는 CCTV 영상자료 열 람을 위해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자와 자녀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나 증표 를 제출 후 열람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열람 요청을 받을 경우 담당자

제9조의4(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 절차 및 방법 등) ③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 사유를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up>10</sup>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호자에게 동지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4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2.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5(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해하는 기관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④ 제2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제15조의4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sup>2</sup>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는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통지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 가이드라인에 보면, 구체적인 열람범위는 원장과 협의하도록 재량권을 주고 있다. 또한 열람 시 정보주체 이외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는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 내용은 없다고 볼 수 있다.

## 〈표 II-1-18〉 보호자의 열람 절차

어린이집 영상정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처리 가이드라인 1. 영상 자료의 열람은 원칙적으로 보호자(자료 의 요청자) 및 어린이집 원장이 할 수 있음. -원장은 보호자가 동의 시 관계공무원, 보육교 제9조의4(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사 및 어린이집 운영위원, 지역육아종합지원 ②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텔 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집안전공제 직 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원 등을 입회하게 할 수 있음.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2. 열람의 범위는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열람 목 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보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보호자에게 통지하여 호자와 어린이집의 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함. 야 한다.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때에는 ④제2항에 따라 열람 장소 등을 통지한 폐쇄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 우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 회로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열람조 치를 하는 경우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 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 록등본 등 열람을 요청한 보호자와 자녀 또 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4. 열람 요청자가 다수(2인 이상) 이거나 열람할 는 보호아동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나 증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분량이 상당하여 수시 열람하게 할 경우 보육 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어린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절차 및 방 이집 원장은 시행령 제20조의8에 따른 영상정 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 내부 관리계획에 의거 특정한 일시를 정하 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15.9.18.] 여 일괄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음. - 단, 상기 계획에 따른 열람주기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인출일: 2015년 11월 30일).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A%B0%9C%EC%9D%B8%EC%A0%95%EB%B3%B4%20%EB%B3%B4%ED%98%B8%EB%B2%95#undefined

2. 보건복지부(2015).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15-16p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에 보면, 영유아 보호자 이외에 보육관 런 안전업무 담당자가 CCTV 영상자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되 며, 담당자 범위, 요청 시 필요한 서류도 제시되어 있다.

#### 〈표 II-1-19〉 보육관련 업무 관련 기관의 열람절차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5(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①법 제15조의5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1. '아동독시합」 제40소에 따른 아동보오신란/단 2 법 제31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②제1항 각 호의 자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정당 한 열람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신분증, 공문서 등으로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제4항에 따라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 요청을 받은 즉시 제1항 각 호의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영상정보 의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9.18.]

시으로 2015.71에 대한 기관에 소속된 제5조의6(영상정보 열람 시 증표의 제시)법 제15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관에 소속된 직원은 영상정보를 열람하는 경우에 정당한 열람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신분증, 공문서 등을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9.18.]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인출일: 2015년 11월 30일).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A%B0%9C%EC% 9D%B8%EC%A0%95%EB%B3%B4%20%EB%B3%B4%ED%98%B8%EB%B2%95#undefined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7 제1항, 2항, 3항을 보면, 열람대장 작성 시 필요한 내용, 열람대장 보관기관이 제시되어 있다. 열람 정보 요청자의 성명 및 연락처, 영상정보 파일 명칭 및 내용, 목적 등이 열람대장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기본적인 항목만이 포함되어 있으며, 열람대장 관리 책임자, 열람 거부시 사유 등에 대해서는 나타나 있지 않다.

#### 〈표 II-1-20〉 열람대장 관리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제9조의7(영상정보 열람대장의 작성 및 보관) ①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법 제15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상 정보를 열람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항이 포함된 영상정보 열람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 열람 요청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열람 요청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 3. 영상정보 열람의 목적 4. 그 밖에 영상정보 열람 관리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항
- 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15.9.18.]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인출일: 2015년 11월 30일).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http://www.law.go.kr/lsSc.do?menuId=U8p1=8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A%B0%9C%BC%9D%B8 %EC%A0%95%EB%B3%B4%20%EB%B3%B4%ED%98%B8%EB%B2%95#undefined

## 4) 위탁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보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기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위탁하는 경우 문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영유아보육법이나 아동관련 법령에는 해당 내용의 조항이 없지만,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 가이드라인에는 CCTV 설치 업무를 일부 위탁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 등에 한해 위탁이 가능하며, 운영이나 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표 Ⅱ-1-21〉위탁

	(# 11 1 21/ 117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어린이집 영상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⑧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 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 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 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 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 다.	제26조(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 기기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①법 제25조제8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 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학임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내판 등에 위탁받는 자의 명칭및 연락처를 포함시켜야 한다.	1.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유지보수업무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수 있음. 다만 운영업무 및 책무 전체는 위탁할수 다 없음. 그 업무를 위탁하려는 어린 이집의 원장은 그 업무를 위탁한근 자가 영상정보를 조작·유출 등 오·남용하지 않도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문제 등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수 없음. 3.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6조에따라 추진하여야 함. 4.수탁자로서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인출일: 2015년 11월 30일). 1. 개인정보보호법:

http://www.law.go.kr/lsSc.do?menuld=0&p1=&subMenu=1&enwYrr=1&section=&tabNo=&query=%EA%B0%9C%BC%9D%B8%BC%A0%9C%BB%B3%B4%20%BB%B3%B4%20%BB%B3%B4%D0%B8%B8%EB%B2%95#undefined

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mwYn=1&section=&tabNo=&query=%EA%B 0%9C%EC%9D%B8%EC%A0%95%EB%B3%B4%20%EB%B3%B4%ED%98%B8%EB%B2%95#undefined 3. 보건복지부(2015).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20p

## 5) 비밀유지

CCTV 영상 열람 후 비밀유지에 관해서 언급된 법령은 없으며,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 가이드라인에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것, 보호자 등 열람한 당사자가 비밀을 유지할 것에 대해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법령으로 명기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 누설시특별한 제재를 할 방법이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 〈표 II-1-22〉 비밀유지

### 어린이집 영상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 1.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2. 영상자료를 열람한 보호자 등은 알게 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출처: 보건복지부(2015).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20-21p

### 나. 해외

교육·보육기관에 대한 CCTV 설치에 대해 해외의 입장도 상이하다. 독일 등의 유럽권 국가들은 교육기관 내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독일은 민법 1631조에 아동에게는 '폭력 없는 교육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며, 학교내 체벌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CCTV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발달기에 있는 아동 개인의 발달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아동과 청소년이 머물며 교육받는 장소에는 CCTV 설치를 금지한다는 입장이다. 핀란드와 프랑스도 기관에 따라 CCTV가 설치된 경우는 있으나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10) 반면 영미권은 교육·보육기관 내 CCTV 설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그에 관련된법과 지침이 있는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을 살펴보았다.

## 1) 영국의 DATA PROTECT ACT

영국은 CCTV가 500만대 이상 설치되어 CCTV의 선진국으로 불리는 나라로, 영국 내무부는 방범의 80%를 CCTV에 의존하고 있어 영국인 12명당 1대의 CCTV가 설치되어 하루 400번 카메라에 찍힌다고 알려질 정도이다(김종호,

<sup>10)</sup>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해외교육동향 기획기사의 내용을 요약함. http://www.edpolicy.net/EpnicGlobal/Epnic/EpnicGlobal0ILst.php

2015:298). 영국에서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의 증거 확보를 위해 가정집에도 설치될 수 있으며 상점, 직장, 학교 등에도 이용되어 일반 국민들의 CCTV 설치에 대한 이해도 높지만 그 신뢰성에 대한 비판도 공존한다.

영국에는 CCTV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은 없으나 CCTV의 설치 근거와 규제에 관한 사항은 데이터 보호법(Data Protection Act, DPA)와 부칙(Schedule) 1<sup>11)</sup>(The data protection principles)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영국의 개인정보보호기구인 The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ICO)는 CCTV에 적용하는 CCTV Code Practice를 제정·보완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지침" 또는 "수행안내서"에 해당되는 내용이다(김민호, 2013: 226).

영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위한 일반법으로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98)이 있다. 정보공개법은 미국이나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늦게 제정되어 토니 블레어 총리 내각이 열린 정보 정책을 추구하며 2000년 제정되었고 2005년 시행되었다(김정애, 2011:226). 그리고 데이터보호법은 1994년에 제정되어 시행되다가, 1995년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지침 95/46/EC의 요구에 의해 1998년이 되어 개정되었다. 데이터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신원확인이 가능한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규정하는데, 데이터보호법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내용
개인정보의 범위	신원확인이 가능한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 청구권자	데이터주체
청구대상기관	·공공기관 ·은행, 공익사업체, 회사조직 등 민간기관
개인정보 형태	·컴퓨터에 저장된 혹은 저장될 정보 ·컴퓨터나 CCTV 같은 장치로 처리된 정보 ·고도로 조직화된 수기 파일링시스템에 포함된 정보 ·의료, 교육, 공공서비스 혹은 주택 관련 기록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정보
절 청구형식	특정 형식 없음(서면 혹은 이메일 신청)

〈표 II-1-23〉데이터보호법 관련 사항 및 관련 규정

보통 10파운드 정도

차

수수료

<sup>11)</sup> Schedule은 우리나라 법령과 비교하면 [별표] 또는 부속법령에 해당됨(김민호, 2003: 226)

	구 분	내 용		
상 의_	청구인제 시정보	이름, 주소, 신원확인, 청구정보에 대한 세부사항, 청구정보를 찾기 위해 필요한 다른 정보에 대한 세부사항 등		
측 공공기관 면 답변기간 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				
청구거절 (비공개)		·동일 데이터주체에 의한 동일 혹은 유사한 주체접근청구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 ·데이터주체의 개인정보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제3 자가 그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4장 비공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0	]의제기	· 공공기관에 내부심사 요구 · 재검토 거절 혹은 재검토 후에도 거절되면 정보감독관에 구제심 사 제기 · 정보감독관의 판결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정보심판위원회에 상소 · 정보감독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소송제기 가능		
 관련규지	데이터 주체	·정의: 개인정보의 주체가 되는 개인을 의미 ·관련 규정  -제7조~제9조: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제10조: 손해나 어려움을 야기할 정보의 처리를 저지할 권리 -제11조: 자신의 정보를 직접적인 마케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저지할 권리 -제12조: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자동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에 반대할 권리 -제13조: 데이터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해 입은 손실에 대해 보상받을 권리 -제14조, 제12조의 1, 제62조: 자신에 대한 부정확한 개인정보를 수정·차단·삭제·파기할 수 있는 권리		
정	데이터 관리자	·정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법과 목적을 결정하는 사람 ·역할 -필사기록, 사업 활동 관련 핵심정보, 자선단체 회원 기록 등 몇 가지 정보를 제외한 모든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 정보감독관에 게 반드시 그 과정을 통보하고 등록해야 함 -정보처리의 목적, 청구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정 보의 처리여부를 데이터 주체에게 통지해야 함 ·관련 규정 - 제16조~26조		

주. 김정애(2011). 개인정보의 공개와 보호에 관한 연구.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pp. 237-241 의 내용을 재정리함

데이터 보호법은 여덟 가지의 데이터보호원칙(The data protection principles)을 발표하였다12). 첫 번째 원칙은 "개인정보는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특히 (a) 부칙 2<sup>13</sup>)에 규정된 조건들 중 최소한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않는 다면 (b)민감한 개인정보의 경우 부칙 3<sup>14</sup>)에 규정된 조건 중 최소한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처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공정하고 합법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이 CCTV에 녹화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그목적 등이 표지판으로 제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CCTV에 의해 일반인들의 일상생활이 침해됨에 따라 데이터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의 문제가 가중된다는 점에서 ICO 정보위원장(Commissioner)<sup>15)</sup>은 CCTV 설치 사업자에 대한 감시카메라 실무규범을 수립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조건을 제시하였다. 실무규범은 (a) CCTV 설치를 사람들에게 주지시키고, (b) 선명한 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 책임자를 포함하며, (c) CCTV 시스템 이미지 보안을 확보하고, (d) 접근을 제한하며, (e) 영상의 저장을 목적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고, (f) 녹음기능이 있는 CCTV는 범죄수사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한다는 것이다(김종호, 2015:299).

이밖에도 2012년에는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자유보호법령(Protection of Freedoms Act, POFA)'를 마련해 감시카메라 시스템 사용 규약 및 감시카메라 위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2013년에는 '감시카메라 사용 규정 (Surveillance Camera Code of Practice)'을 발표하였다. 이 규정에서는 감시카메라 운영과 영상정보 사용 시 시민의 자유 보호를 기본 방향으로 해야 함을 구체화하였다(CCTV뉴스, 2015. 2. 20).

<sup>12)</sup> DPA 1998의 데이터보호원칙(김정애, 2011: 242; Taylor, 2011: 40)

<sup>1.</sup> 개인정보는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특히 (a) 부칙 2에 규정된 조건들 중 최소 한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b)민감한 개인정보의 경우 부칙 3에 규정된 조건 중 최소 한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처리되지 않는다.

<sup>2.</sup> 개인정보는 오직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특수하고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취득되어야 하고, 그 목적과 모순된 방식으로 처리되어서는 안된다.

<sup>3.</sup> 개인정보의 관리는 정보가 처리되는 하나 이상의 목적과 관련해 이루어져야하고 타당하고 관련성 있으며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

<sup>4.</sup> 개인정보는 정확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최신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sup>5.</sup> 특정 목적을 위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그 목적을 위해 필요한 기간보다 오래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

<sup>6.</sup> 개인정보는 데이터보호법에 명시된 데이터 주체의 권리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sup>7.</sup>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처리와 개인정보의 손실 또는 파기 또는 훼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기술적, 체계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sup>8.</sup>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Area) 외부에 있는 국가 혹은 지역이 데이터 주체의 권리와 자유를 충분히 보호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를 그 국가나 지역으로 전송해서는 안 된다.

<sup>13)</sup> 부칙 2는 개인정보 취급의 목적에 관한 조건 6가지가 규정됨(김종호, 2015: 270).

<sup>14)</sup> 부칙 3은 민감한 개인정보 취급의 목적에 관한 조건 10가지가 규정됨(김종호, 2015: 272).

<sup>15)</sup> 영국 개인정보보호법 제51조~제54조에 정보위원장의 권능이 명시됨(김종호, 2015: 265)

그리고 감시카메라가 더 이상 이미지만을 기록하는 수동적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흥미를 파악하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상세히 기록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함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정부는 2014년 10월에는 '감시카메라 및 개인정보에 관한 데이터 보호 규정집(A Data Protection Code of Practice for Surveillance Cameras and Personal Information: POFA)'을 발표하였다.

이 법안의 주요 요소는 12개 지도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구체적인 영국의 감시카메라 사용 규정(Surveillance Camera Code of Practice)은 다음과 같다 (ICO, 2015).

### 〈표 II-1-24〉 감시카메라 사용 규정(영국)

#### 내용

- ①감시카메라 시스템은 합법적인 목적 추구와 명확한 필요에 맞춘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어야 한다.
- ②감시카메라 시스템은 개인과 개인 사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카메라 사용의 정당성을 확립해야 한다.
- ③가능한 한 감시카메라 사용은 항상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므로 관련 정보와 문제 제기가 가능한 연락처가 카메라에 부착돼야 한다.
- ④감시카메라 시스템을 통한 정보수집과 정보의 보유 및 사용과 관련해 분명한 책임 과 의무가 따라야 한다.
- ⑤카메라 시스템을 사용하기 전에 분명한 규칙, 정책 및 과정이 점검되어야 하며 규칙에 따라야 하는 모든 관계자와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
- ⑥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촬영된 이미지와 정보는 더 이상 저장할 수 없으며 촬영된 정보는 삭제해야 한다.
- ⑦저장된 영상 정보에 대한 접근은 제한되어야 하며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목적에 관련한 규칙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영상정보 공개는 규칙에서 정한 목적에 부합하거나 법집행기관이 필요로 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 ⑧감시카메라 시스템 운영자들은 승인 받은 관리 기준, 기술 기준, 능숙도 기준을 항상 고려해야 하며 시스템 사용 목적과 업무도 그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 ⑨감시카메라의 영상정보는 허가되지 않은 접근과 사용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안 규정에 따라야 한다.
- ⑩법적 요구사항, 정책 및 기준이 실제적으로 카메라 운영과 사용에 반영되었는지 효과적인 검토와 감사가 있어야 하며 그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 ①정당한 목적이나 절실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 공공의 안전과 법집행 기관의 증거로 서 이미지가 사용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 ②매칭을 위해 데이터베이스의 자료와 비교 대상으로 사용하는 정보는 정확하고 가 장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출처: ICO(2015). In the picture: A data protection code of practive for surveullance cameras and personal information. https://ico.org.uk. 의 내용을 발췌함.

또한 ICO는 '데이터보호등록: 업무기록의 본질(Data protection registration: nature of work descriptions)'을 두어 교육기관 종사자들이 해당 기관에 소속된 학생의 정보를 사용할 때 준수해야 할 정보접근의 목적, 유형, 정보 이용자, 정보 공유자, 해외 유출 금지제한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데이터보호등록에는 업무의 특성별로 보호대상 등록 데이터에 대해 상세내용을 제시하였는데, 가정양육자(childminder), 육아지원기관(nursery schools/playgroup/after school club), 가정교사, 학교, 대학 등 교육과 보육 업무별로 업무의 성격, 정보를 처리하는 목적, 처리된 정보의 유형, 정보의 주체, 정보 공유자, 해외로의 정보 전송 등을 명시화하고 있다16)(부록 5참조).

## 2) 미국의 Family Education Rights and Privacy Act(FERPA)

미국은 대륙법계 국가인 프랑스, 독일 등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개인정보 관련 법체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사립 보육시설에서 원장과 학부모의 동의가 있다면 CCTV의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공립 초·중등학교의 경우 문제가 복잡한데 CCTV와 관련해 가장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 교무실, 교사 휴게실, 그리고 교실 등의 설치 여부이다가? 예를 들어 Roberts v. Houston Independent School District 사건은 교실에 CCTV를 설치하여 교사의 수업진행을 평가한 것에 대해 교사가 수업에 대한 합리적인 사생활 기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텍사스항소법원에서는 교실에서의 수업이 일반적으로 사적 영역으로 보호되는 범위 내에 해당되지 않는 활동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조재현, 2015: 288).

기본법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사회적 변화나 기술의 발달에 맞추어 공공·통신·온라인 등 각 영역별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별법적인 접근을 취해 대응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에 있어서는 특별히 규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률을 제정할 뿐 자율규제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CCTV 감시와 관련된

<sup>16)</sup> ICO. Data protection regstration: nature of work descriptions: Education and childcare에서 인용함. https://ico.org.uk/media/for-organisations/register/2709/education-and-childcare.pdf (인출일 2015년 11월 23일)

<sup>17)</sup> 이세웅(2015. 2 25). 미국의 보육·교육시설에 설치된 CCTV 관리 현황.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해외교육동향, 250호, 기획기사에서 인용함.

http://www.edpolicy.net/EpricGlobal/EpricGlobal/01Viw.php?PageN.nn=1&Ac\_Group=1&seard16el=::AC\_Group=1&seard16el=

프라이버시 등도 주요 판례에 따르고 있다(조규범, 2006: 75-76).

미국에서는 공적 감시카메라 설치에 관해 규정하는 연방 법률은 없으나 Alabama를 포함한 13개 주에서 감시카메라 법(Surveillance(Spy, Security) Camera Act)을 두고 있다. 안전을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나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김민호, 2013: 227). 미국은 개인정보 보호가 판례법(common law)상의 프라이버시와 연방법 등에 의해 보호됨에 따라, 교육기록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각종 판례법과 연방법에 의해 보호된다(세계법제정보센터, 2007. 7. 26). 이 외에도 공정신용평가법, 프라이버시법, 정보공개법, 가족교육권및프라이버시법, 금융프라이버시권법, 프라이버시보호헙, 케이블통신정책법, 전자통신프라이버시법, 컴퓨터정보조합및 프라이버시보호법, 컴퓨터정보조합및 프라이버시보호법, 아동온라인프라이버시보호법, 대테러감시법 등이 관련 된다(조규범, 2006).

이 중에서 크게 프라이버시법과 가족교육권및프라이버시법을 중심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74년 제정된 프라이버시법은 연방법에 해당되며 정부주체의 열람 및 정정 요구권,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정보수집원칙, 어떠한 정보가 수집되었는지에 대한 고지 의무, 정보공유의 원칙적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개인이그들의 기록에 무슨 정보가 포함되며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있어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하나의 목적으로 수집된 정보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상적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고, 특정 공공기관에서는 정보의 정확성이나 기타 법적 의무로부터 면제가능성 등 실효성면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조규범, 2006: 90).

둘째, 미국은 1974년 교육기관 내 학생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연방특별법으로 가족교육권및프라이버시법(the Family Education Rights and Privacy Act, FERPA)을 제정하였다. 이 법안은 교육기관 내 녹화·저장된 영상정보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자기정보결정권을 강화하고, 프라이버시 관점에서 자료가 엄격히보호되어야 된다는 취지를 지닌다(조규범, 2006: 91). 이 법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에 대한 교육적 기록을 검사하고 심사할 법적 권리를 가지며, 부모는 항상 법적으로 교육기관이나 그 종사자에 의해 관리되는 학생과 직접 관련된 정보에접근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조재현, 2015: 292). 나아가 잘못된 정보가 있으

면 정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식별정보의 공개를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다. 또한 교육기관은 교육기록 내 개인식별정보를 학생이나 학부모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해선 안 되며, 학교가 유지·관리하는 교육정보에 대해 학생(18세 이상)과 학부모에게 고지하여야 한다(조규범, 2006: 91). 이에 덧붙여 미국 수정 헌법 제4조에서는 학교가 학생과 교원의 인권보호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표 Ⅱ-1-25>와 같다.

〈표 II-1-25〉가족교육권과 프라이버시법의 내용

〈표 II-1-25〉가족교육권과 프라이버시법의 내용					
 구분	주요내용				
적용대상	·교육기관. 기금을 이용하는 모든 공·사립기관 ·교육기록. 학생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기록, 파일, 문서 및 기타 자료 중 교육기관이 보유한 것. 단 교원이 사적 으로 보유한 부수적 기록이나 통상적 업무과정에서 생 성되는 기록 등은 제외				
학부모의 검사·열람권리	·학부모의 자녀 교육기록에 대한 검사나 열람을 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면 이용 가능한 기금의 사용을 금지함. ·교육기관은 학생기록에 대해 통지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함. 하나의 문서에 다수의 학생이 기록된 경우 각각의 학부모가 해당기록을 검사·열람할 수 있도록 보장				
학부모의 정정권, 삭제권 및 반론권	·학부모의 정정 및 삭제권: 학생의 부모가 자녀의 교육기록의 부정확, 오인 또는 다른 학생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기록에 대해 정정이나 삭제를 청구한 경우에 청문의 기회 를 보장해야 함. 부정확·오인 등이 있는 경우 정정 혹은 삭제 ·학부모의 반론권: 학생기록의 내용에 대하여 학부모가 반론서 를 제출한 경우에 그 학생기록에 이를 첨부하여야 이용 가능한 기금을 활용할 수 있음. ·학교가 정정을 거부하는 경우, 학부모나 (18세 이상)자격이 있 는 학생은 공청회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 학부모나 자격이 있 는 학생은 공청회 후에도 학교가 정정을 거부하는 경우 분쟁이 있는 정보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기록에 표시할 권리가 있음.				
18세 이상의 학생의 열람 권리	·자격 있는 학생: 학생이 18세 이상이 되거나 또는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과정에 참여하면 이 권리가 학생에게 이전됨, 즉 자격이 있는 학생은 학교에서 보관하는 학생기록을 열람할 권리가 있음.				
학부모 및 자격 있는 학생의 서면 동의	·학교가 학생기록의 내용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나 자격이 있는 학생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함 ·예외사항: (i) 교육상 정당한 이익을 가진 학교관계자, (ii) 학생이 전학 가는 학교, (iii) 감사나 평가를 위한 특정된 관계자, (iv) 학생의 재정적인 지원과 관련된 관계자, (v) 학교에 관하여 또는 학교를 대신하여 조사를 행하는 기관, (vi) 승인 받은기관, (vii) 법원의 명령이나 정당한 영장을 따르는 경우, (viii) 보건 및 안전 조치에 관련된 관계자, (ix) 주 법에 의하여 청소년사법제도 내에서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기관에 한해 동의 없이 기록을 공개할 수 있음.				

구분	주요내용
인명정보 공개의 사전 고지	·교육기관은 학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수상경력, 그리고 출석일수 등과 같은 인명정보(directory information)를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음. ·그렇지만 학교는 인명정보에 대하여 학부모와 자격이 있는 학 생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학부모와 자격이 있는 학생에게 인 명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결정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을 주 어야 함. ·학교는 매년 학부모와 자격이 있는 학생에게 이 법에 의하여 이 들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하고, 실질적인 통지수단(예컨대, 서 신, 학생수첩, 또는 학교신문 등)은 해당 학교에 위임되어 있음.

주. 세계법제정보센터(2007. 7. 26). 미국의 "가족의교육권및프라이버시에관한법률"에 관한 소개의 내용을 정리함. http://world.moleg.go.kr/World/NorthAmerica/US/trend/2374?pageIndex=17 (인출일 2015년 11월 25일).

# 2. 국내외 유치원·어린이집의 CCTV 현황

## 가. 국내 현황

## 1) 아동학대 현황

기관 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보육교직원에 의한 발생 건수가 39.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23.8%, 유치원 교직원은 13.3% 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통계수치는 기관 종사자에 한해 발생한 학대 사례를 산정한 수치이다.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2014: 122)에 따르면, 아동 학대 발생 장소 중 가정 내 학대 비율이 83.8%(8,400건수)로 어린이집 3.0%(300 건), 유치원 1.0%(96건)에 비해 적은 비율임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부분이다.

〈표 II-2-1〉기관 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 사례 기관별 발생 건수

						<u> 난위 : 건, %</u>
유형기관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초·중·고 교직원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기타시설 종사자	계
계	295	99	145	177	29	745
비율	39.6	13.3	19.5	23.8	3.9	100.0

출처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221-222, <표 5-46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 기관별 발생 건수> 중 전체 소계 건수 자료만 정리하여 재구성함. 비율은 건수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산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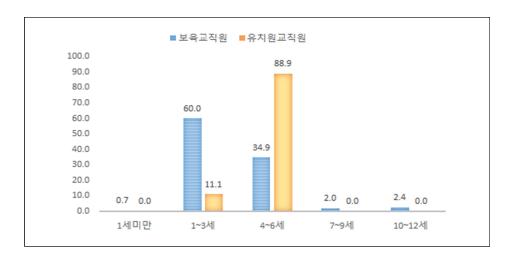
기관 종사자 유형별 피해 학대 아동 연령은 보육교직원은 1-3세가 177건으로 전체 연령 중 60.0%로 가장 많았으며, 유치원 교직원은 4-6세가 88건으로 전체 연령 중 88.9%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이러한 연령별 수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을 이용하는 아동 연령대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으므로 다른 기관 종사자 수 치와 비교 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보인다.

〈표 Ⅱ-2-2〉기관 종사자 유형별 피해 학대 아동 연령

<u>단위 : 건,%</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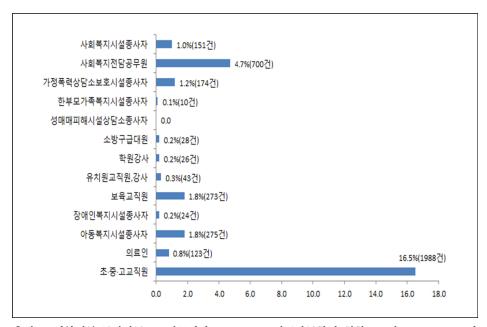
	_					<u> 1기 · 신,%</u>
유형 연령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초·중·고교 직원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기타시설 종사자	계
1세미만	2(0.7)	0(0.0)	0(0.0)	0(0.0)	0(0.0)	2(0.3)
1~3세	177(60.0)	11(11.1)	0(0.0)	3(1.7)	0(0.0)	191(25.6)
4~6세	103(34.9)	88(88.9)	3(2.1)	9(5.1)	1(3.4)	204(27.4)
7~9세	6(2.0)	0(0.0)	18(12.4)	37(20.9)	10(34.5)	71(9.5)
10~12세	7(2.4)	0(0.0)	52(35.9)	53(29.9)	7(24.1)	119(16.0)
13~15세	0(0.0)	0(0.0)	62(42.8)	54(30.5)	9(31.0)	125(16.8)
16~17세	0(0.0)	0(0.0)	10(6.9)	21(11.9)	2(6.9)	33(4.4)
계	295(100.0)	99(100.0)	145(100.0)	177(100.0)	29(100.0)	745(100.0)

출처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224<표 5-48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그림 II-2-1] 기관종사자 유형별 피해 학대 아동 연령(어린이집/유치원)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지정되어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보육교직원과 유치원 교직원의 신고의무자로서 아동학대 신고를 한 비율은 각각 1.8%(273건), 0.3%(43건)로 적은 비율이다. 이는 초·중·고교 직원의 16.5%(1,988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4.6%(700건)에 비하면 낮은 수치처럼 보이지만, 동일 보고서에서 나타난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사례 295건, 유치원교직원 99건을 감안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내에서 신고의무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출처: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66<표 2-7 기관별 신고자 유형> 전체 수치를 그래프로 변환함.

[그림 11-2-2] 기관별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

## 2) 유치원과 어린이집 CCTV 설치 현황

아동보호구역별 CCTV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은 5.2%, 유치원은 29.0%로 특수학교(42.0%)와 초등학교(83.3%)에 비해 낮은 수치였다. 하지만 이 수

치는 2013년 기준으로 2015년 어린이집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되기 이전의 통계라는 점에서 2015년 현재 설치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 가) 유치원

유치원 내 CCTV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8,699개 유치원 중 CCTV를 설치한 유치원은 8,173개원으로 전체 94.0%이었다. 반면, 교실 내에 CCTV를 설치한 경우는 전체 교실수 33,814개 중 설치된 교실수는 17,493개로 51.7%가 설치되어 있다.

〈표 II-2-3〉 유치원 내 CCTV 설치 현황('15년 1월 기준)

전체 설치 유치워 전체 설치교실 유치원수 원수 교실수 비율 교실수 비율 8,699 8,173 94.0% 33,814 17,493 51.7%

출처: 교육부(2015). 유치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확대 추진 기본 계획, p2 <설치 현황 중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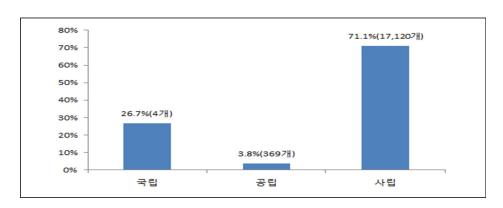
설립유형별로 유치원 내 CCTV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국립유치원은 전체 교실 15개 중 4개 교실에 설치하였으며, 25.7%이었다. 반면 사립유치원은 전체 교실수 24,066개 중 17,120개로 71.1%의 설치 비율을 보였다. 공립유치원은 전체 9,733개 교실 중 369개 교실에 설치되어 3.8%로 사립유치원에 비해 국립과 국공립유치원 설치 비율은 낮은 편이었다.

〈표 II-2-4〉 유치원 설립유형별 CCTV 설치 현황('15년 1월 기준)

단위: %, 개

 설립 구분	전체 원수	전체 교실수	설치	교실
2百 丁元	선세 선구 	전세 표결구	교실 수	비율
계	8,699	33,814	17,493	51.7%
국립	3	15	4	26.7%
공립	4,872	9,733	369	3.8%
사립	4,124	24,066	17,120	71.1%

출처: 교육부(2015). 유치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확대 추진 기본 계획, p2 <설치 현황 중 교실 내 설치 세부 현황>



[그림 II-2-3] 유치원 설립유형별 CCTV 설치 현황

교육부 자료(2015)에 의하면 향후 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 계획은 15년에 9,588개로 전체 80%의 비율로 높일 계획이며, 16년에는 3,382개를 추가하여 전체 90%로 설치할 계획임을 파악할 수 있다.

〈표 II-2-5〉향후 유치원 내 CCTV 설치계획

단위: 개, %

구분	'14년 (설치완료)	'15년(예정)	'16년(예정)
설치 교실수	17,493	9,588	3,382
누 계	17,493	27,051	30,433
설치 비율	51.7%	80%	90%

※ 실외 공간 설치 지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별로 별도 추진 출처: 교육부(2015). 유치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확대 추진 기본 계획, p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확대 및 지원 기준 중 목표>

### 나) 어린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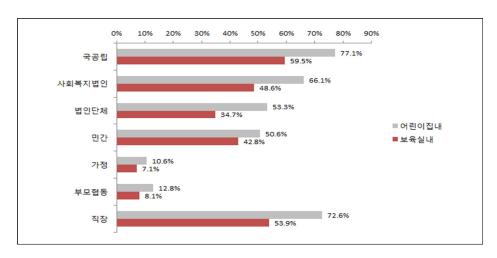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CCTV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43,763개원 중 설치된 기관은 13,822개로 전체 31.6%가 설치되어 있다. 보육실 내 설치 현황은 전체 43,763개 중 10,874개로 전체 24.8%이었다. 설립유형별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은 CCTV가 설치된 비율이 77.1%, 보육실 내 설치 비율은 59.5%로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지만, 보육실 내 설치 비율이 절반을 약간 넘긴 상황이었다. 직장어린이집은 전체 515개 중 374개가 CCTV를 설치하여 전체 72.6%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보육실 내 설치 비율은 53.9%로 국공립어린이집과 비슷한 비율이었다. 반면, 가정어린이집은 CCTV 설치 비율은 10.6%, 보육실 내 설치는 7.1%로

낮은 수치였다. 부모협동어린이집도 CCTV 설치 비율이 12.8%, 보육실 내 설치는 8.1%로 낮은 편이었다.

〈표 II-2-6〉어린이집 설립유형별 CCTV 설치 현황('15년 1월 기준)

단위: 건. 구분 CCTV 설치 현황 보육실 내 설치 현황 전체 설치 비율 전체 설치 비율 전체 43,763 13,822 43,763 24.8 31.6 10,874 국공립 2,503 1.930 2,503 59.5 77.1 1,490 사회복지법인 939 1,420 66.1 1,420 690 48.6 법인단체 850 453 53.3 850 295 34.7 14,826 6,346 민간 7,504 14,826 42.8 50.6 가정 23,322 2,462 10.6 23,322 1,667 7.1 부모협동 148 19 12.8 148 8.1 12 직장 374 72.6 694 374 53.9 515

자료 : 어린이집 정보공시 항목 조회 (2015년 1월 현재) 출처: 보건복지위원회(201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p49, 50<어린이집 CCTV 설치 현황 (분류별), 어린이집 CCTV 설치 현황 (보육실 내) 합계 수치>



[그림 II-2-4] 설립 유형별 어린이집과 보육실 내 CCTV 설치 현황

2014년 지자체 수합자료에는 CCTV이외에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현황이 제시되어 있다. 2014년 자료이기는 하지만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3,108대로 전체 어린이집 개소수 대비 비율로 산정하면 7.2%라고 파악할수 있다.

〈표 Ⅱ-2-7〉어린이집 CCTV/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내역('14년 6월 기준)

단위: 개소수, 대 %

	전체	설치		세브	부 설치내역(대)	
시도	어린이	어린이	설치율	CCTV	네트	 계
	집수	집수		CCIV	워크 카메라	/1
총계	43,368	9,081	20.9%	48,236	3,108	51,344

자료 : 보건복지부 (2014년 6월 기준, 지자체 취합자료)

출처: 보건복지위원회(201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p49, 50<어린이집 CCTV 설치 현황 (분류별), 어린이집 폐쇄회로텔레비전,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현황 중 전체 내용만 발췌함>

## 나. 국외현황18)

국외 CCTV 설치 현황은 영미권, 유럽권, 아시아권의 대표적인 나라를 중심으로 CCTV 설치 현황 및 관리 제도를 살펴보았다. 본 내용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 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홈페이지<sup>19</sup>) 해외교육동향에 게재되어 있는 해외 보육·교육시설 CCTV 설치 현황 관련 기획기사를 요약 발췌하였다. 해당 기사 중 본 연구 범위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련 내용만을 정리하여 표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 1) 영미권

영미권 지역은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두 국가 모두 국가가 의무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내 CCTV를 설치하거나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이없고,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다.

<표 Ⅱ-2-8>을 보면, 미국은 사립 어린이집 비중이 높은 편으로, 국가 단위의설치 현황 자료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학부모들 동의가 있을 경우 기관 내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며, 대부분은 주별로 판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기관 내 CCTV를 설치하는 기관은 기관내 폭력,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지만 주된 평가는 CCTV 설치만으로 문제를 예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표 Ⅱ-2-8>을 보면, 최근 영국은 학부모 요구로 인해 CCTV나 Webcam 설비를 갖춘 기관이 증가하고 있으며, 설치여부가 기관을 선택하거나 홍보수단으로

<sup>18)</sup>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해외교육동향 기획기사(인출알 2015년 11월 23일). http://www.edpolicy.net/EpnicGlobal/Epnic/EpnicGlobal01Lst.php

활용되기도 한다. 관리 감독이나 열람은 자격을 갖춘 담당자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교실 내 상황을 볼 수 있는 Webcam 설치 기관이 증가하면서, 교사들의 스트레스, 교사와 아동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준다.

〈표 II-2-8〉미국/영국 보육 및 교육시설 내 CCTV 설치 현황

국 가	설치 현황	관리
미 국	○미국 내 보육시설 사립 비율이 높음. 연방정부 차원의 CCTV 설치 실태조 사는 없음. 단, 학부모 동의 시 어린 이집 내 CCTV 설치 가능 ○학교와 어린이집 CCTV 설치 관련 법령은 주단위 판례를 통해 결정됨. (연방정부 법령은 없음)	°학교 내 CCTV 설치는 학교 내 폭력, 총기 난사 등 예방이 주된 목적임. 하지만 이러한 폭력을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임.
- 영국	○ 학부모 불안 해소 위해 CCTV나 Webcam 설비 갖춘 유치원·어린이집 비율 높아지고 있음. 유치원·어린이 집 종사자 인권침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의 논의가 진행중임. ○ 일부 어린이집은 CCTV 설치를 홍보에 활용하고 있음. ○ 2000년 초반부터 Webcam을 통해 온라인으로 교실 내 상황을 확인할수 있는 어린이집도 늘어나고 있음. ○ 학부모는 Webcam 사용에 긍정적임. ○ 최근에는 스마트폰, 컴퓨터 통해 자녀의 어린이집 생활을 볼 수 있는 Nursery Cam(유치원 캠) 사용 기관도늘어나고 있음.	○ 정보관리감독자만 CCIV 열람 및 관리 가능함. ○ 교육기준청(Ofsted)에서 파견된 아동 감사관(Early Years Childcare Inspector)이 어린이집 10%를 선정, 감사 실시함. ○기관내 Webcam 설치 관련(기기명, 개수, 장소 등) 정보 공개 ○ Webcam으로 인해 어린이집 교사들 의 소극적인 자세, 스트레스가 문제 가 되고 있으며, 영상 정보 유출 우 려가 발생함.

출처: 1) 미국: 이세웅(2015. 2. 25). 미국의 보육·교육시설에 설치된 CCTV 관리 현황. 교육정 책네트워크 정보센터 해외교육동향, 250호, 기획기사 중 1. 마라의 보육 및 교육사설의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설치 현황 3 CCTV 효과내용 요약 및 발췌

http://www.edpolicy.net/Epnic/Global/Epnic/Global/Olivinphp?PageNum=1&Ac\_Group=4&search6d=::Ac\_Group=4&search

2) 영국: 강호원(2015. 2. 25). 영국의 보육교육시설에 설치된 CCTV 관리 현황. 교육정책네트 워크 정보센터. 해외교육동향 250호, 기획기사 중 서두, 2. CCTV 설치 현황, 3. CCTV 모니 터링 현황 요약 및 발췌

http://www.edpolicy.net/EpnicGlobal/EpnicGlobalOIViw.php?PageNim=1&Ac\_Group=4&search6d=:AC\_GONT&searchKeyword=CCTV&Ac\_Nim=5&Ac\_Goode=100060100&Ac\_Nim0=17809&Ac\_Nim0=2=(인물일 2015년 11월 23일).

## 2) 유럽권

유럽권 지역에는 독일, 프랑스, 핀란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유럽권 나라

들은 대부분 CCTV 설치보다는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표 Ⅱ-2-9>를 보면, 독일의 경우 CCTV를 통해 유출될 수 있는 개인정보, 기본권 침해 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대신 아동의 훈육이나 교육 시폭력을 금지하는 법을 강화함으로써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표 Ⅱ-2-9>를 보면, 프랑스의 경우에도 2001년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었을 때, 아동과 교사의 초상권, 개인정보보호가 논의의 중심에 있었다. 따라서 기관 내 CCTV가 설치 관련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용을 관할하는 국립 정보자유위원회(CNIL)에서 관리하고 있음.

<표 Ⅱ-2-9>를 보면, 핀란드는 기본적으로 공교육과 교사에 대한 신뢰를 중요
 시하고 있다. 따라서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은 거의 없는 편이며, 설치되는 경우는 기물 파손 등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CCTV 설치 대신 일반가정, 학교에서 신체적 체벌을 금지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있다.

〈표 II-2-9〉독일/프랑스/핀란드 보육 및 교육시설 내 CCTV 설치 현황

국 가	설치 현황	관리
독일	○ 아동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아동학대 보호 위한 CCTV 설치 논의도 없음. ○ CCTV가 설치는 도난방지 목적이며, 극히 일부 기관만 해당됨. ○ 법률에서 기본권, 개인정보보호법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CCTV 설치는 사실상 금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아동 폭력 문제 발생 빈도가 낮다는 점과 개인정보호정책의 강력성이 기관 내 CCTV 설치를 필요하지 않게만드는 요인으로 볼 수 있음.
프랑스	○ 2001년 외곽지역의 어린이집에서 CCTV 설치 후 아동, 교사 초상권, 개인정보에 관한 논란이 발생함. ○ 2009년 교육부 장관이 학교 내 CCTV 설치를 권장함으로써 CCTV 설치는 증가함. 하지만 자유 침해 제소가 늘어나면서 학급, 식당 같은 생활공간에는 CCTV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용을 관할하는 국립정보자유위원회(CNIL)가 CCTV 정책이나 제도를 관리함. ○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이후 개인 정보 침해, 감시하는 사회 등에 대 한 부정적 여론이 있음. ○ CCTV 녹화 영상은 학교장, 해당 학부모 등 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관리되고 있음.
핀 란 드	○ 가정, 학교 내 신체적 체벌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공교육과 교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음. ○ CCTV 설치된 어린이집은 거의 없으	<ul> <li>CCIV 모니터링은 교육기관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령 따르고 있음.</li> <li>법령에는 CCIV 관리, 열람이 가능한 사람의 범위 등에 대해 명시되</li> </ul>

국 가	설치 현황	관리
	며, 기물 파손 대비 등 목적으로 일부 기관에서 설치하고 있는 추세임. 최근 범죄 발생률이 높은 인구 밀집 지역에 설치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 "최근 정부차원에서 신설 기관에 CCTV 설치를 권고하고 있으며, 설치위치는 공개되고 있음.	어 있음설치목적에 맞게 사용, 영상은 1년후 폐기 -피해 사건 발생시 경찰, 학교 시스템 담당자가 녹화 영상 열람 권한가점. 녹화 기록 조사할 권한 있음.

출처: 1) 독일: 정수정(2015. 2. 25). 독일 보육·교육기관의 CCTV 설치 관련 논의.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해외교육동향 250호, 기획기사 중 서두, 1. 독일 보육·교육기관에서의 CCTV설치 현황과 관련 규정, 특징 내용 요약및발췌

http://www.edpolicy.net/EpnicGlobal/Epnic/EpnicGlobal01Viw.php?PageNum=1&Ac\_Group=4&searchS el=::AC\_CONT&searchKeyword=CCTV&Ac\_Name=&Ac\_Code=D0060100&Ac\_Code2=D0060100&Ac\_Num 0=17810&Ac\_Name2=(인출일: 2015년 11월 23일).

2) 프랑스: 최지선(2015. 2. 25). 프랑스의 보육·교육시설에 설치된 CCTV.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해외교육동향 250호, 기획기사 중 1. 관련 정책 및 제도. 2. CCTV 설치 및 모니터 링 현황 내옹 요약 및 발췌

http://www.edpolicy.net/EpnicGlobal/Epnic/EpnicGlobal01Viw.php?PageNum=1&Ac\_Group=4&searchS el=::AC\_CONT&searchKeyword=CCTV&Ac\_Name=&Ac\_Code=D0060100&Ac\_Code2=D0060100&Ac\_Num 0=17811&Ac\_Name2=(인출일: 2015년 11월 23일).

3) 핀란드: 남궁옥(2015. 2. 25). 핀란드의 보육·교육시설에 설치된 CCTV 관리 현황. 교육정책 네트워크 정보센터. 해외교육동향 250호, 기획기사 중 1. 관련 정책 및 제도, 2. CCTV 설치 현황. 3. CCTV 모니터링 현황 내용 요약 및 발췌

http://www.edpolicy.net/EpnicGlobal/Epnic/EpnicGlobal01Viw.php?PageNum=1&Ac\_Group=4&searchSel=::AC\_CONT&searchKeyword=CCTV&Ac\_Name=&Ac\_Code=D0060100&Ac\_Code2=D0060100&Ac\_Num0=17812&Ac\_Name2=(인출일: 2015년 11월 23일).

## 3) 아시아권

아시아권 국가에서는 일본과 중국을 살펴보았다. 일본과 중국은 모두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하고 있었다.

<표 Ⅱ-2-10>을 보면, 일본은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서, 기관 내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현재 CCTV가 설치된 경우가 많으며, 2010년 유치원 경우 전체 49.99%가 기관 내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네트워크 카메라와 비슷한 '라이브 카메라'를 설치하는 기관 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실시간으로 기관 내 상황을 볼 수 있는 라이브 카메라 설치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다.

〈표 II-2-10〉일본/중국 보육시설 및 교육시설 내 CCTV 설치 현황

 국 가	설치 현황	관리
일보	아린이집 내 아동학대 사건 발생으로 CCTV 설치 여론이 커지면서 설치 기관이 많아지고 있음. ○CCTV 설치는 입구, 현관 등에 주로 설치되며, 외부침입에 대한 방범 목 적으로 한정되어 설치되고 있음.  <*2011년도 CCTV 설치 개수(2010. 3월기준)>1)  학교급 전체 CCTV 설치 기관수 (%) 유치원 9,999 4,991(49.99%) 자료: 문부과학성 '학교인천주산에 관한 계획의 시책주진 상황조사 (2011년도 살짝 p52 표 '방법감시 시스템의 정비상황 내역을 재편집 http://www.next.gsip/component/a.nenu/education/detail/_ic sfiles/afidelfile/2013/18/20/128/807/2pfi 출처: 일본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기획기사: 일본의 보육교육사설에 설치된 CCTV 관리 현황 중 CCTV 설치 현황 자료 중 <표1> 2011년도 학교급별 CCTV 설치 한화 구료 주 우차원 부분만 재인용  의 최근 부모들이 실시간으로 자녀 활동 상황을 볼 수 있는 '라이브 카메라'도입됨.	○ 원장이 관리책임자를 맡으며, 기록 장치 조작은 담당 직원만 할 수 있 도록 제한됨. ○ CCTV 운영 관련 기준은 교육위원 회에서 결정됨. ○ 라이브 카메라'에 대해서는 의견 이 나누어짐. - 찬성: 자녀 상황 파악 가능해서 안심이 된다는 반응. - 반대: 교사와 아동의 불편함과 부담 감 증가, 교사-부모간 신뢰감 저하
중국	○ 학교 내 사고 관리, 수업과정 녹화하여 교육 질 평가, 교수 학습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됨. ○ 설치 현황과 관련된 국가차원의 통계 데이터는 없음. 하지만 보도자료를 통해, 도시지역 대부분 유치원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교육위원회 문건에 의해 설치여부를 결정하며, 일부 기관은 의무사항으로 지켜지고 있음.	。CCTV를 포함하여 총체적인 안전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담팀도 구성되어 있음.

출처: 1) 일본. 김지영(2015. 2. 25). 일본의 보육·교육시설에 설치된 CCTV 관리 현황.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해외교육동향 250호, 기획기사 중 서두, 1. 관련 정책 및 제도, 2 CCTV 설치 현황, 3. CCTV 설치와 운영기준, 4. 특징 내용 요약및 발췌

http://www.edpolicy.net/EpnicGlobal/Epnic/EpnicGlobal01Viw.php?PageNum=1&Ac\_Group=4&searchSel=::AC\_CONT&searchKeyword=CCTV&Ac\_Name=&Ac\_Code=D0060100&Ac\_Code2=D0060100&Ac\_Num0=17813&Ac\_Name2=(인출일: 2015년 11월 23일).

2) 중국: 이수진(2015. 2. 25). 중국 보육·교육시설 감시카메라 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 현황.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해외교육동향 250호, 기획기사 중 서두, 1. 관련 정책 및 제도, 2. 감시카메라 설치 현황, 3. 특징 내용 요약 및 발췌

http://www.edpolicy.net/EpnicGlobal/Epnic/EpnicGlobal01Viw.php?PageNum=1&Ac\_Group=4&searchSel=::AC\_CO NT&searchKeyword=CCTV&Ac\_Name=&Ac\_Code=D0060100&Ac\_Code2=D0060100&Ac\_Num0=17814&Ac\_Name2=(인물일 2015년 11월 23일).

상기 <표 Ⅱ-2-10>을 보면, 중국은 기관 내 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교수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CCTV를 활용하고 있다. 설치 현황은 정부 차원의 통계 자료는 없지만, 도시지역 대부분 유치원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일부지역에는 의무사항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관리에 있어서는 CCTV를 포함하여 기관 내 안전관리를 위한 총체적인 시스템 구축을 마련하면서, 전담팀도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 3. 선행연구

# 가.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CCTV

영국의 철학자이자 법학자인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은 CCTV를 죄수를 감시할 목적으로 설계한 팬옵티콘(panopticon)에 비유하였다(Hope, 2009: 894). 팬옵티콘은 '모두'를 뜻하는 'pan'과 '본다'는 뜻의 'opticon'을 합성한 것으로 CCTV가 지닌 사회적 감시와 시각적 통제기제로서의 기능을 지적한 것이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에 있어 CCTV의 사용이 일반화되었으나, 교육기관의 설치는 다른 사회적 맥락과는 구별된다. 학교는 구성원이 대개 아동과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고, 둘째, 다른 장소와 달리 참석이 선택적이 아니라 의무적이라는 점, 셋째, 학교는 적어도 다른 공간에 비해 민주적으로 인식되며, 넷째, 아동의 학습과 발달을 위한 곳이라는 점에서 학교 밖에서 도덕적으로 수용 가능한 것도 학교 내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등이 다른 장소와의 차이점이다(Warnick, 2007: 318). 유아교육·보육기관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서도 동일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기관에 소속된 교직원과 영유아라면 누구나 등원과 함께 CCTV에 기록되며, 정보주체인 영유아의 대부분이 자기의사표현이 능숙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들의 인권에 대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아동의 인권은 1989년 UN총회에서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이 채택되며 국제법으로 공포되었다. 아동권리협약은 전문과 54개조로 구성되었으며,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평등하게 적용되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제3조)을 지향하면서도 부모의 지도를 존중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아동을 권리향유의 주체로 파악하는 입장에서 권리행

사의 주체로 인식하는 아동관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이용교·황옥경·김영지·김형욱·이중섭, 2004: 11).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를 생존권(제6조), 보호받을 권리(제19조 제1항), 발달권(제28조 제1항), 참여권(제12조)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아동권리 협약 제19조는 당사국이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 착취, 위기와 응급상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4).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 주도하에 중앙아동학대 예방센터를 두고 지방아동학대 예방센터 및 소규모아동학대 예방센터의 전달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민간 위탁운영의 한계로 인해 UN 인권위원회에서는 학대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의 국가 책임 강조와 민간단체의 경우도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할수 있도록 감독하고, 피해 입은 아동의 육체적·정신적 회복을 실현하기 위한 포괄적 조치를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다(이용교 외, 2004: 71). 그리고 아동학대를 포함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전사고의 원인을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과 설비의 구조적 문제, 안전장치의 부족, 영유아에게 부적절한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감독 소홀, 안전지식과이해의 부족 등을 꼽고,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물리적시설기준 강화와, 놀이시설 정기점검 실시, 아동관련 종사자의 의무 안전교육실시, 통합버스 운전사에 대한 규정 등을 권고하였다(이용교 외, 2004: 91-92).

아동학대20)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7항). 유치원·어린이집의 기관장은 소속 기관의 신고의무자 즉,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사들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아동복지법 제26조). 실제로 2014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의 통계에 의하면 2014년 기준 아동학대를 신고한 신고자 총 15,025명 중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총 4,358(29.0%)이었으며, 그중 보육교직원이 273건(1.8%), 유치원교직원 43건(0.3%)이었다. 반대로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총 10,027건 중 8.18%는 부모였으나, 보육교직원이 295건(2.9%), 유치원교직원이 99건(1.0%)(보건복지부, 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117)에 해당되어,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는 신고의무자임과 동시에 아동학대 행위자의 범주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sup>20)</sup> 아동복지법, 법제처, http://www.law.go.kr/main.html(인출일: 2015년 11월 16일).

2008년 아동복지법 개정안의 공포로 인해 아동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체제를 운영하는 등 아동권리수준제고 및 실효성 확보와 더불어, 아동범죄 예방과 보호를 더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는데 기역하였다(김종세, 2008: 74). 2015년 1월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영유아보육법에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신설(제15조 제4항)되었다. 이에 대해 조재현(2015: 276-278)은 국가가 아동학대로부터 자유로운 안전지대를 확보하기 위해, 위험이 발생하기 이전단계부터 예방과 사전 배려를 제공할 의무를 지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아동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은 이미 그것이 발생하고 난 후에는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아동학대 영역에서도 예방의 원칙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동도 권리의 주체로서 권리를 향유하고 권리를 침해당하는 상황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음이 마땅하며, 특히 유아기는 권리 인식의 결정적 시기라고 할수 있다(구미향·황소영, 2014: 120). 그러므로 아동이 생애초기에 경험하는 학대 경험은 아동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며, 보호권뿐만 아니라 발달권 등 다른 권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일반논평 제7조 '영유아의 권리 이행'(국가인권위원회, 2006: 125-126)에서도 초기 유년기의 아동이 자신의 권리에 있어 인격체로 존중받을 것과, 이들의 권리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법률과 정책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제안하고 있어,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CCTV의 설치가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임을 말해준다.

다른 한편, 아동이 '보호의 대상자'임과 동시에 '권리의 주체자'라는 UN아동 권리협약의 기본 가정(황옥경, 2012: 32)을 고려할 때 영유아도 자신의 개인정보 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도 결정할 수 있는 주체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일 반논평 13은 '아동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 유아를 대표할 수 있도록 허 용하고 필요한 법적절차에 있어 유아가 자신의 선호와 견해를 피력할 수 있도 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일반논평 14에서는 협약 제12조에 근거 해 유아의 연령과 미성숙을 근거로 유아의 행위나 의사가 거부되어서는 안된다 고 강조하고 있다(황옥경, 2012: 37). 이에 따르면 아동들도 CCTV 녹화와 영상 기록물에 포함된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권리가 있다. 또한 나주 성폭행 피 해자 나영이에 대한 언론의 지나친 보도로 가족을 포함한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 침해 등 2차 피해가 심각했던 사례(강동욱, 2015)와 같이, 유치원·어린이 집에서 CCTV의 열람과 문제해결 과정에서 아동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CCTV의 도입만이 아니라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한 운영상의 고려가 요구된다.

## 나. 유치원·어린이집 내 CCTV 설치의 쟁점

#### 1) 교육기관 내 CCTV 설치의 효과와 문제점

교육기관에서의 CCTV 사용은 주로 외부인의 접근 통제, 행동 통제, 정보 수집의 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Taylor(2011)는 학교 내 시각적 감시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교사에게 CCTV는 '잊기 쉬운 것'이며 학생의 행동통제에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의 CCTV 설치에 대해침입하는 외부자로부터의 위험을 통제하고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게 하는 기능과 함께 기관 내 교직원 및 학생의 행동을 통제·감시하는 기능도 담당하며, 위험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기 보다는 사각지대에서의 '풍선효과'(김민호, 2013: 220)로 범죄발생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미국의 공립학교에도 학교폭력방지나 청소년들의 비행 근절을 위해 CCTV 설치가 증가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교사나 직원들의 업무수행평가를 지원하는데 적용되기도 한다(조재현, 2015: 288)고 하여, 교육기관의 CCTV 설치가 교직원들의 통제·감시에도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주주자(2014)는 학교 내 범죄예방이라는 명목 하에 CCTV와 같은 감시와 통제 도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의문을 제기하고, 학생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하였다. 총 2,092명의 초중고 학생과 2,266명의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생들은 CCTV 설치와 증설에 대해 동의하고 있었으며, 복도용 CCTV와 교무실용 CCTV 설치에 긍정적인 입장이나 교실용 CCTV 설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반면 교사들은 CCTV 설치에 대해 학생들보다 더 긍정적인 입장이며 교실용 CCTV와 교무실용 CCTV 설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 내 범죄가 자주 발생한다고 인식할수록, 여학생일수록, 저학년일수록 CCTV 설치에 대해 동의하고 있으며, 학교 내 범죄가 자주 발생한다고 인식할수록, 남학생일수록 CCTV로 인한 인권침해를 더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교사들은 낮은 학교급에 근무할수록, 경력이 짧을수록, 교내 범죄가 자주 발생한다고 인식할수록 CCTV 설치에 동의하였으며, 높은 학교급에 근무할수록 CCTV 설치로 인한 인권침해를 더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자는 특히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인권침해에 대해 덜 예민하고 CCTV에 대한 의존도도 높다는 결과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보사회 과학기술 발달과그로 인한 편익으로 자칫 학교 공동체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구성원들 간의 소통이 아닌 CCTV라는 하나의 수단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 2) 유치원·어린이집 내 CCTV 설치의 효과 및 문제점

서울시는 2009년 4월 '안심보육' 서비스의 일환으로 서울형 어린이집에 CCTV를 달아 IPTV로 중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유인책으로 IPTV 시스템 채택 시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제와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권건보, 2011). 그러나 CCTV 설치가 교사와 유아의 개인정보 침해, 교사의 노동권 침해 등 설치와 운영에 있어서 문제의 불씨는 남아 있다고 하였다(권건보, 2011: 82).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나 네트워크 카메라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촬영된 기록도개인정보에 해당될 수 있어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sup>21)</sup>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CCTV와 IPTV를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 감시는 보육교사가 가지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권건보, 2011: 101). 그러므로「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20조 14호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에 의거하여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이 되므로, 보육기관에 CCTV를 설치하려면 보육교사로부터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권건보, 2011: 102).

국내 CCTV 관련 선행연구들은 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CCTV 설치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강미경(2015: 74-75)은 유치원·어린이집 내 CCTV 설치에 대한 유치원 및 보육교사의 인식을 Q-방법론을 통해 유형화하였는데, 연구에 참여한 43명의 교사들의 인식은 세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18명은 제1유형에 해당되었는데 CCTV가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주기보다 보이는 것만 믿게 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의무설치 사항도 아닌 것으로 교사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기계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12명은 CCTV의 일부 기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는데, CCTV가 음성이 녹음되지 않아

<sup>21)</sup> 정보주체가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의 흐름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정확한 상황을 이해하기는 힘드나 문제가 발생하면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증거자료가 된다고 인식하였다. 13명의 유아들은 CCTV가 교사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며 안전사고 예방과 교사보호 차원에서도 필요하며, 교사의 시선이 미치는 교실 보다는 사각지대 등에 대안적으로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자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유치원·어린이집 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CCTV 설치 목적 및 활용 방안 등을 자세히 안내하여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반드시 유아교사의 사전 동의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유아교사들이 CCTV가 자신과 유아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감시하는 기능도 있으나 반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최소한의 장치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다른 교사들은 CCTV 설치로 인한 사생활침해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어 이는 부모나 사회적인 압박의 결과라고해석하기도 하였다.

선행연구에서도 CCTV 설치·운영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한 연구들이 있었다. 권미란(2012)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여부에 따라 교사들의 안전의식에 차이가 있으며, 안전실천에도 차이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임수정·이일랑·이대균(2013)은 CCTV 설치로 유아교사들은 개인의 공간이 없어지고, 누군가 자신을 감시한다는 부담감을 지니며, 자신보다 CCTV를 더 신뢰하는 학부모님들과의 신뢰형성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보고한 반면, CCTV로 인해 자신을 의식하며 자기계발에 대해 고민하고, CCTV를 활용해 학부모와의 오해를 풀며, 미처 관찰하지 못한 유아들 간의 다툼이나 사건을 해결하는 긍정적 효과도존재한다고 하였다.

유치원·어린이집 내 CCTV 설치가 유아교사의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강선혜(2015)는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 총 6명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교사들은 아동들이 CCTV를 의식해 행동을 조심하거나, 아동끼리 분쟁 시 CCTV를 언급하며 중재하거나, 문제행동을 보인 아동이 CCTV 속의 자신을 보고 스스로 행동을 개선하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자신과 유아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교육방법이 개선되도록 기능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고 하였다.

반면 문제 행동하는 아동에게 부정적 낙인 효과나 아동성장 시 자신의 침해 당한 사생활에 대해 인지할 수 있다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다. 이 연구는 CCTV와 관련해 아동의 인권에 대해서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유아교사의 일반적 업무에 있어서 교사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유아와의 신체접촉을 기피하거나 행동이 위축되어 유아에 대한 관심이 저하될 수 있다는 측면과 추후 CCTV 공개범위는 정규수업만으로 제한하고 교사의 동의 후 공개할 것과, CCTV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교사처우 개선 및 교사 보호 법안과 CCTV의 순기능에 대한 부모 교육, CCTV 사용 매뉴얼의 마련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은하(2013)의 연구에서는 교사와 부모의 CCTV에 대한 입장 차 이를 보여 주었다. 어린이집 교사 102명과 부모 176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의 CCTV 설치와 활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이 23.5%로 적 었으며, CCTV 설치기관과 미설치기관으로 분류하여 부모와 교사의 인식을 비 교하였다. 어린이집 CCTV의 필요성, 선호도, 관리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 차이를 살펴본 결과 어린이집 CCTV 설치는 교사보다는 부모가 필요성을 더 높 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CCTV 설치 목적으로 교사들은 문제 상황을 식별·검거· 증거 확보를 위해서라고 답한 반면, 부모들은 모두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서라 고 말해 서로의 입장차를 드러냈다. 선호도에 대해 교사들은 CCTV가 미설치된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반면, 부모는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육시 키겠다고 응답하였으며, CCTV 설치에 대해 교사는 원장, 교사, 부모의 동의를 모두 거쳐서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관리 또한 어린이집에서 하길 원한 반면, 부모는 의무적 설치와 관리도 관할 시·구청에서 해주길 원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셋째, CCTV 미설치 집단의 교사는 CCTV에 대해 행동의 제약을 많이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으나, CCTV 설치 집단의 교사들은 생각했 던 것보다는 신경 쓰이지 않는다고 응답해, 부모에게 실시간 중계되지 않고 문 제가 발생했을 때만 선택적으로 열람하는 방식으로 CCTV가 설치된다면 교사들 의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위의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교사가 CCTV를 활용해 감시나 안심보호의 목적 외에 좀 더 긍정적인 활용방안으로 자신의 수업을 모니터링하는 자기장학 개념 의 활용과 유아 행동 관찰시 사용함으로써 부모상담에 활용하는 방법 등의 제 안이 있음을 조사하였으며, 부모들도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보육 환경 개선이 나 자녀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응답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 CCTV 설치의 비용, 부모의 지나친 간섭, 정 보 유출과 초상권 침해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며, CCTV가 모든 문제의 해결 책으로 인식되어서는 안되며 CCTV 관리 운영지침과 법적 체계가 마련되고, CCTV활용에 따른 상시적 이상 유무 점검, 테이프 관리, 주기적 A/S 등 체계적 관리와 더불어 교사와 부모간의 존중과 배려, 신뢰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서울형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와 IPTV에 대한 운영 실태를 살펴본 정현옥(2011)은 교사들이 CCTV와 IPTV 설치·운영에 대해 생각했던 것보다 행동의 제약을 많이 느끼며 부담도 크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고했다. 특히 교실 내부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큰 부담감을 지니며, 사생활 침해의 소지로 인한 거부감이 있다고 토로하였다. 최문선(2011)도 IPTV 실시 이후 긴장과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학부모의 간섭과 요구사항이 많아졌다는 부정적 측면에 대해 응답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주로 실시간으로 영상을 송출하는 IPTV에 관한 것으로 교사들의 스트레스와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부담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특히 네트워크 카메라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것으로 이는 보육교사 인권상황 실태조사(김연아동발달지원센터, 2013: 133)의 결과 와도 연결된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IPTV의 도입이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아 반대하는 경우가 75.8%나 되었으며, 그 이유로 교사가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며(37.6%), 감시하는 것 같아 달갑지 않다는 의견(34.2%)도 많아 IPTV 제도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감시와 같은 부정적인 역할을 수행해 교사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평가하였다.

# 4. 요약 및 시사점

다음은 2장에서 논의되었던 국내외 유치원·어린이집 내 CCTV 설치 및 운영 관련 국내외 법령, 국내외 CCTV 설치 현황, 선행연구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모 색하였다.

첫째, 유치원·어린이집 CCTV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국내 법령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CCTV에만 적용되는 내용이 아닌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이 되는 법령으로 영상정보 정의, 범위, 설치구역, 설치 위한 의견 수렴 절

차, 동의 절차, 안전한 운영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준하여 어린이집 상황에 맞게 CCTV 설치 목적, 절차, 열람절차나 대장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령은 아니지만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서는 좀 더 세분화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영유아보육법, 영상정보처리 가이드라인은 어린이집 내 설치된 CCTV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며, 유치원 내 설치된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운영되어야 한다.

유치원·어린이집 CCTV 관련 법령에서 가장 문제라고 보여지는 부분은 CCTV 영상에 노출이 되는 영유아와 교사의 정보 보호를 위한 절차가 너무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CCTV 미설치를 위한 의견 수렴 절차에서 교사의 의견은 포함되지 않는 점, 진단서 등 확실한 증거 제시가 아닌 학부모가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심증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 열람 이후 학부모 비밀보장에 대한 제재 내용이 없다는점이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개선점으로 판단된다.

한편, 해외의 CCTV 관련 법안 중 영국의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 ACT)와 미국의 가족교육권및프라이버시법(Family Education Rights and Privacy)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영국은 개인정보보호기구인 IOC를 중심으로 데이터보호법과 부칙, 감시카메라 사용 규정 등을 구체화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와 교육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CCTV 및 감시시스템 활용에 있어시민의 자유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학생의 정보가 연방법과 판례법에 의해 보호되며, 학생정보에 대한 공개 및 학부모의 열람권, 정정권, 삭제권 및 반론권이 명문화되어 이들의 권리 실현을 위해 적절한 조치도 함께 규정되고 있어, 국내에서도 교육기관 내처리되는 학생정보와 관련한 학생과 그 가족의 프라이버시를 강화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국내 유치원·어린이집의 CCTV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유치원은 전체 8,699개 중 CCTV가 설치된 경우가 8,173개원으로 전체 94.0%이었으며, 교실내 CCTV를 설치한 경우는 전체 51.7%로(교육부, 2015)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이었다.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 유치원 교실 내 설치 비율은 3.8%, 사립 유치원의 71.1%로(교육부, 2015) 설립유형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어린이집은

전체 43,763개원 중에 CCTV가 설치된 기관은 13,822개원으로 전체 31.6% 이었으며, 보육실 내 설치는 10,874개원으로 전체 24.8%로 1/4 수준이었다. 설립유 형별로 보육실 내 설치된 기관을 비교해 보면, 국공립과 직장이 각각 59.5%, 53.9%로 가정 7.1%, 민간 42.8%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국외 CCTV 설치 현황은 영미권, 유럽권, 아시아권으로 나누어 대표적인 나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영미권 지역은 미국와 영국을 살펴보았는데, 미국과 영국 모두 주정부 단위에서 일괄적으로 CCTV 설치를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으며, 지자체 혹은 기관마다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모두 사립 기관 중심으로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공통적으로 폭력이나 총기사고 예방 차원에서 설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CCTV 설치만으로 기관 내 폭력이나 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영국에서도 학부모들 요구로 Webcam이 많이 설치되어 있으나, 교사들의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럽권에서는 독일, 프랑스, 핀란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유럽권 나라들은 CCTV 설치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인권 침해 위험에 좀 더 논의의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핀란드의 경우 기관 내 CCTV가 설치된 경우가 거의 없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공교육과 교사에 대한 강한 신뢰감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두 번째는 일반가정, 학교에서 신체적 체벌 금지법령을 강화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핀란드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권은 우리나라와 비슷한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을 살펴보았다. 두 나라 모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다만, 일본에서는 CCTV 운영기준을 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 중국의 경우 CCTV 뿐만 아니라 안전을 위한 총체적인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CCTV 운영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준다.

셋째, 선행연구들은 CCTV가 안심보육이나 아동학대 예방 및 감시라는 기능에 대해 인정하나 CCTV 영상의 무분별한 열람으로 인한 교사의 사생활 권리침해와 아동의 낙인 효과,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교사의 동의를 통해 CCTV의 설치와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반면유치원·어린이집 내 CCTV 설치로 인해 안전에 대한 인식이나 실천이 높아졌으며, 아동 간 분쟁의 원인을 발견하고, 교사들을 보호하며, 아동관찰을 통한 부모

상담에 활용 또는 교사의 자기 수업 모니터링 자료로 적용가능하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제안되었다. 그러나 실시간으로 영상을 출력하는 IPTV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위해서는 부모 및 사회의 CCTV에 대한 인식이 변화될 필요가 있으며, CCTV설치와 운영에 대한 매뉴얼 및 교사 보호에 대한 규정 마련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 Ⅲ. 유치원·어린이집의 CCTV 설치·운영 현황 및 요구

3장에서는 최근 6년간의 CCTV 관련 신문기사 분석,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대상 설문조사, 원장, 교사, 학부모 대상의 면접 결과를 토대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CCTV 설치·운영에 대한 현황과 요구를 파악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의 CCTV 관련 신문기사 분석을 통한 유치원·어린이집의 CCTV 설치의 배경, 심층면담과 설문조사 결과를 통한 유치원·어린이집의 CCTV 설치현황과 요구, 유치원·어린이집의 CCTV 운영 현황과 요구 등을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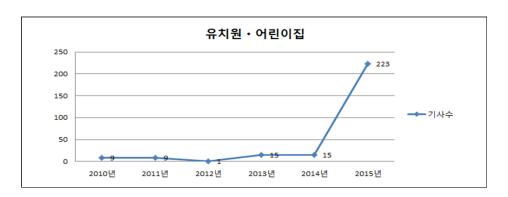
# 1. 유치원·어린이집의 CCTV 설치에 대한 전반적 인식

# 가. 신문기사에 나타난 CCTV 관련 인식

2010년부터 2015년 9월까지 4대 일간지에 실린 CCTV관련 기사를 검색한 결과,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기사가 272건, 초중고 관련 기사가 169건, 일반 기사가 53건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어린이집 관련기사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이전 년도에 비해 2015년 223건(82%)으로 급격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1-1	1〉연도별	CCTV관련	기사	수
------------	-------	--------	----	---

		:	:		-	딘	<u> 위: %(개)</u>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수)
유치원· 어린이집	3.3(9)	3.3(9)	0.4(1)	5.5(15)	5.5(15)	82(223)	100(272)
초중고	36.1(61)	10.7(18)	15.4(26)	26(44)	4.1(7)	7.7(13)	100(169)
일반	15.1(8)	18.9(10)	30.2(16)	1.9(1)	18.9(10)	15.1(8)	100(53)
전체	15.8(78)	7.5(37)	8.7(43)	12.1(60)	6.5(32)	49.4(244)	100(4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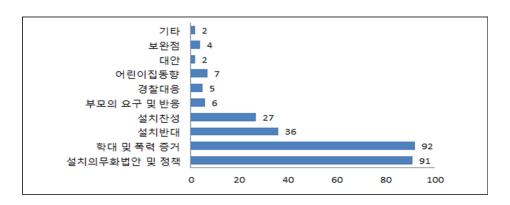


[그림 Ⅲ-1-1] 연도별 유치원·어린이집 CCTV 기사 수

유치원·어린이집의 CCTV관련 신문기사의 내용을 상위범주로 범주화한 결과 크게 9개의 범주로 나뉘었다. 총 272건의 기사 중 CCTV가 학대 및 폭력에 대한 증거로 사용된다는 내용이 92건(33.8%)으로 가장 많았으며,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및 정책관련 내용이 91건(33.5%), 설치 반대에 대한 내용이 36건 (13.2%), 설치 찬성에 대한 내용이 27건으로 나타났다. 그 외, 부모의 요구 및 반응, 경찰 대응, 어린이집 동향, 대안, 보완점, 기타 등에 관한 내용이 2건~7건 (0.7%~2.2%) 정도로 나타났다.

〈표 III-1-2〉 유치원·어린이집의 CCTV관련 신문기사 분류 범주

		범주별 빈도수
범주	빈도	비율(%)
전체	272	100
설치 의무화 법안 및 정책	91	33.5
학대 및 폭력 증거	92	33.8
설치 반대	36	13.2
설치 찬성	27	9.9
부모의 요구 및 반응	62	2.2
경찰 대응	5	1.8
어린이집 동향	7	2.6
대안	2	0.7
보완점	4	1.5
기타	2	0.7



[그림 Ⅲ-1-2] 유치원·어린이집의 CCTV관련 신문기사 분류 범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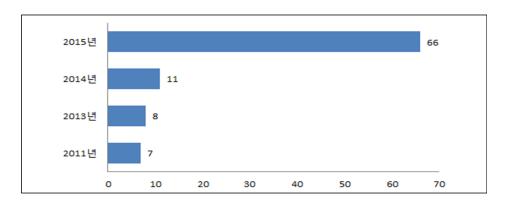
각 범주에 따른 연도별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학대 및 폭력 증거

CCTV가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학대 및 폭력의 증거로 사용되었다는 기사를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2011년 7건(7.6%), 2013년 8건(8.7%), 2014년 11건 (12%)인데 반해, 2015년은 66건으로 급격히 많아져 전체 71.7%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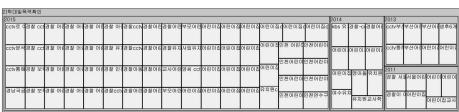
범주 빈도 비율(%) 2011년 7 7.6 2013년 8 8.7 2014년 11 12 2015년 71.7 66 계 92 100

〈표 Ⅲ-1-3〉 연도별 학대 및 폭력 증거 기사 빈도



[그림 Ⅲ-1-3] 연도별 학대 및 폭력 증거 기사 빈도

위의 표와 그래프와 관련하여 나무지도를 통해 코딩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2015년의 면적이 2011년, 2013년, 2014년보다 월등히 넓어 2015년의 코딩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아동학대와 폭력의 증거에 대한 기사가 다른 년도에 비해 2015년 급작스럽게 증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Nodes compared by number of items cod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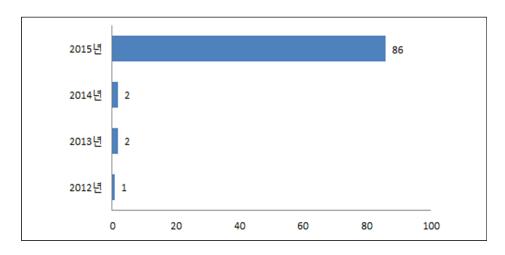
[그림 III-1-4] 학대 및 폭력 증거의 연도별 코딩 분포(Tree Map)

## 2) 설치 의무화 법안 및 정책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및 정책에 관한 내용을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2010-11년에는 한 건도 나타나지 않았고, 2012-14년까지는 12건인데 반해 2015년 은 86건으로 전체 94.5%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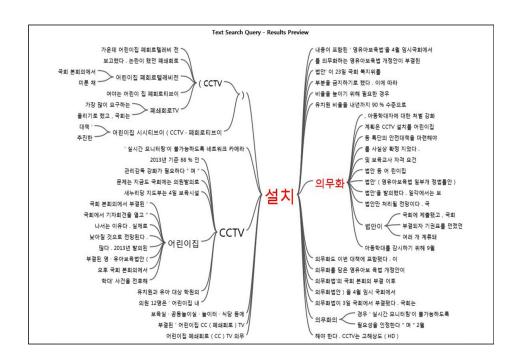
〈표 Ⅲ-1-4〉 연도별 설치 의무화 법안 및 정책 기사 빈도

범주	빈도	비율(%)
2012년	1	1.1
2013년	2	2.2
	2	2.2
 2015년	86	94.5
	91	100



[그림 Ⅲ-1-5] 연도별 설치 의무화 법안 및 정책 기사 빈도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설치 의무화'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기사들을 검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결지도를 구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설치 의무화'의 구체적인 맥락을 파악하였다. 다음의 연결지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서 관련된 단어는 '어린이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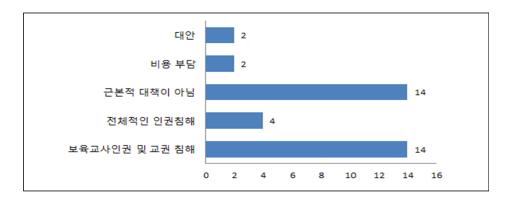
[그림 III-1-6] '설치 의무화'에 대한 연결지도(Tree Map)

# 3) 설치 반대

CCTV 설치 반대에 대한 기사를 코딩하여 범주화 한 결과, 보육교사 인권 및 교권 침해와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는 내용이 각 14건(38.9%)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체적인 인권 침해가 4건(11.1%), 비용 부담과 대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2건(5.6%) 순으로 나타났다.

범주	빈도	비율(%)
보육교사인권 및 교권 침해	14	38.9
전체적인 인권 침해	4	11.1
근본적 대책이 아님	14	38.9
비용 부담	2	5.6
대안	2	5.6
	36	100.0

〈표 III-1-5〉 CCTV 설치 반대에 대한 기사 빈도



[그림 Ⅲ-1-7] CCTV 설치 반대에 대한 기사 빈도

위의 표와 그래프와 관련된 나무지도를 통해 코딩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근 본적 대책이 아니라는 내용과 보육교사 인권 및 교권 침해와 관련된 코딩 수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설치반대
3-3)문학자에 어떻게 하는 이용 학교 에린이집CCIV는 어린이집CCIV설치 학교에 한다. 이런이집CCIV설치 학교적으로 하는 CCIV에 인이집 기록에 인리집CCIV설치 학교적으로 하는 CCIV에 인이집 기록에 인리집CCIV설치 및 CCIV에 인이집 기록에 인리집CCIV설치 및 CCIV에 인이집 기록에 인리집CCIV설시 및 CCIV에 인이집 기록에 인리집CCIV에 인이집 기록에 인리집CCIV에 인리집 기록에 인리집 CCIV에 인리집 CCIV에 인리집 CCIV에 인리집 기록에 인리집 CCIV에 인집 CCIV에 인

Nodes compared by number of items cod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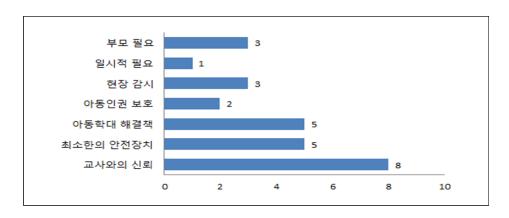
[그림 III-1-8] 설치반대 코딩 분포(Tree Map)

# 4) 설치 찬성

CCTV 설치 찬성에 대한 기사를 코딩하여 범주화 한 결과, 교사와의 신뢰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8건(29.6%), CCTV가 최소한의 안전장치, 아동학대 해결 책이라고 보는 내용이 각 5건(18.5%), 현장 감시, 부모가 필요해서라는 내용이 각 3건(11.1%), 아동인권 보호가 2건(7.4%), 일시적으로 필요하다는 내용이 1건 (3.7%)로 나타났다.

범주 빈도 비율(%) 교사와의 신뢰 8 29.6 최소한의 안전장치 5 18.5 아동학대 해결책 5 18.5 아동인권 보호 7.4 현장 감시 3 11.1 일시적 필요 1 3.7 부모 필요 3 11.1 계 27 100.0

〈표 Ⅲ-1-6〉 CCTV 설치 찬성에 대한 기사 빈도



[그림 Ⅲ-1-9] CCTV 설치 찬성에 대한 기사 빈도

위의 표와 그래프와 관련하여 나무지도를 통해 코딩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교사와의 신뢰의 코딩수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있고, 다음으로 최소한의 안전장 치, 아동학대 해결책임을 알 수 있다.

4-2)화소한의 안전장치 4-3)아동학대해결책 4-5)현장감시 4-7)부모필요 4-4)아동인권보호 cctv우리아이들을 뿌모-어린이집Cctl 모든어린이집Cctv목표시 어린이집웜 보육교사총연합회-여 어린이집Cctv는 아이 여린이집엄방마다 cc

Nodes compared by number of items coded

[그림 Ⅲ-1-10] 설치 찬성 코딩 분포(Tree Map)

## 5) 그 외 의견

## 가) 부모의 요구 및 반응

CCTV 설치와 관련한 부모의 요구 및 반응을 살펴본 기사를 코딩한 결과 전체 6건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모들이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으로 이동하며 네트워크 카메라로 실시간 열람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반응과 열람하고 싶으나 자녀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참는다는 소극적인 반응까지 다양했다.

〈표 III-1-7〉 CCTV 설치에 대한 부모의 요구 및 반응 관련 기사 빈도

범주	빈도
CCTV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이동	1
CCTV 설치하니 생중계하라는 부모	1
부모들의 어린이집CCTV 설치 의무화 서명운동	1
부모-어린이집 CCTV 확인하고 싶지만 해코지할까 참음	1
부모-유치원 주방 내 CCTV 설치요구	1
학대 알 수 있도록 어린이집CCTV 설치 의무화(학부모)	1
	6

# 나) 경찰의 반응

CCTV 설치와 관련한 경찰의 반응을 살펴본 기사는 총 5건으로 아동학대 관련 조사 시 CCTV 설치 기관의 녹화영상도 조사하며, 공개를 거부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표 III-1-8〉 CCTV 설치에 대한 경찰의 반응 관련 기사 빈도

범주	빈도
아동학대전담팀구성 CCTV 설치된 어린이집·유치원은 녹화영상조사시도	2
경찰 관계부처에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요구	1
경찰-아동학대 관련 조사 시 CCTV 공개 거부 어린이집 명단 공개	2
	5

#### 다) 어린이집 동향

CCTV 설치와 관련한 어린이집의 동향과 관련된 기사는 전체 6건으로 CCTV 설치 증가가 학부모들의 편의를 높인다는 측면과 교사의 동의 없이 설치한 CCTV의 촬영을 방해한 경우 무죄로 판결된 사례가 다루어졌다.

〈표 III-1-9〉 CCTV 설치에 대한 어린이집 동향 관련 기사 빈도

범주	빈도
어린이집교사 동의 없이 설치한 CCTV촬영 방해 무죄	3
서울형어린이집 400개 CCTV 설치 인기가 높아지며 설치증가	1
정부세종청사어린이집CCTV는 학부모가 실시간으로 영상시청 가능	2
	6

## 라) 대안

CCTV 설치에 대한 대안과 관련한 기사는 전체 2건으로 열린어린이집의 도입으로 교사와의 신뢰를 쌓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다루어졌다.

〈표 III-1-10〉 CCTV 설치에 대한 대안 관련 기사 빈도

<u></u> 범주	<u></u> 빈도
열린어린이집-교사 신뢰 쌓임	2
	2

# 마) 보완점

CCTV 설치와 관련하여 보완되어야 할 점에 대해, CCTV 설치는 일시적 해결 책이므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아동학대의 증거확보에도 활용되면서 교사 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열람 절차의 보완과 무분별한 반출로 인한 폐해는 예방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 III-1-11〉 CCTV 설치에 대한 보완점 관련 기사 빈도

범주	빈도
CCTV의무화 비해 열람절차 고민은 부족	1
대통령 CCTV근본적 해결책 아니나 일시적 필요함	1
아란집CIV 중기 확 충분히 활용되며 교사 프아버시 참되지 않도록 책임 분형	1
영상실시간 열람과 무분별한 반출은 막아야함(교사인권보호)	1
	4

# 바) 기타

그밖에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 영상을 전송하는 CCTV의 개발에 대한 내용

과 어린이집 CCTV 법제화가 이후에 유치원과 학교 교실까지 번질 수 있다는 내용이 기사로 다루어졌다.

〈표 III-1-12〉 CCTV 설치에 대한 기타 기사 빈도

범주	빈도
영상을 스마트폰 통해 실시간 볼 수 있는 CCTV개발	1
유치원CCTV 법제화되면 학교 교실 차례일 지 모름	1
계	2

이상과 같이 최근 5년간 CCTV 관련 기사들 중 다른 연도에 비해 2015년 아동학대 관련 기사와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기사 빈도가 급속히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CCTV 설치에 대한 반대 근거로는 아동학대의 근본적대책이 아니라는 내용과 보육교사 인권 및 교권 침해와 관련된 의견이 많이 분포되어 있었으며, 설치 찬성의 근거로는 교사와의 신뢰, 최소한의 안전장치, 아동학대 해결책을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CCTV 설치에 대한 부모와 경찰의 반응, 어린이집의 동향, CCTV 열람에 대한 대안 및 보완책에 대한 내용이 소수이지만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교사, 학부모의 CCTV 설치에 대한 인식

신문기사를 통해 다루어진 CCTV에 대한 논의와의 차이와 유사점을 살펴보기위해 유치원·어린이집의 직접적인 관계자인 원장,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Ⅲ-1-13> 와 같다.

〈표 Ⅲ-1-13〉학부모, 교사, 원장의 CCTV에 대한 인식 면담 결과

						Ę	단위: %(수)
	 범주	학부모	71/	!사	원	!장	게(스)
	音子	러구도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	- 계(수)
	CCTV 장점	50(16)	15.6(5)	15.6(5)	15.6(5)	3.1(1)	100(32)
인식 -	CCTV 단점	14(7)	18(9)	20(10)	24(12)	24(12)	100(50)
_	근본 대책	21.2(7)	9.1(3)	30.3(10)	30.3(10)	9.1(3)	100(33)
	계	26.1(30)	14.8(17)	21.7(25)	23.5(27)	13.9(16)	100(115)

학부모, 교사, 원장과의 면담 결과, 전체적으로 CCTV의 단점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하였으며, 근본대책, CCTV의 장점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하였다. 특히 학부모 는 CCTV의 장점을, 교사와 원장은 CCTV의 단점을 더 많이 언급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본 절에서는 CCTV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각 범주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설치·운영에 대한 의견은 다음 장에서 다루도록 한다.)

#### 1) CCTV의 장점

CCTV의 장점에 대한 학부모, 교사, 원장의 인식을 범주화하면 <표 Ⅲ-1-14>와 같다. 가장 많이 언급된 CCTV의 장점은 '부모, 교사, 기관의 관계에 플러스알파'이며, '안전장치', 그리고 '교사보호'라는 측면이었다. 반면 교사가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교사의 수업을 개선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거나 아동학대 예방에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상대적으로 적게 언급되었다.

범주	원장		교사		하보고	비ㄷ	비율(%)
· Б· I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	417	민도	日吾(///)
교사와 아이의 부정적 관계 막음				3	1	4	12.5
부모와 교사, 기관과의 관계에 풀라스 일파	1		1		4	6	18.8
안전장치로 안심과 믿음이 감	1		1		4	6	18.8
교사가 행동 조심하게 됨					2	2	6.3
아이의 갈등과 문제 있을 때 필요	1				2	3	9.4
연령에 따라 필요(어린 연령)					2	2	63
교사 보호와 오해 해명	1	1	3		1	6	18.8
아동학대 예방에 도움				1		1	3.1
교수활용도구	1	•	•	1	•	2	6.3
	5	1	5	5	16	32	100

〈표 Ⅲ-1-14〉 CCTV의 장점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가장 많이 언급된 순으로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부모, 교사, 기관과의 관계에 플러스 알파

CCTV의 설치가 부모, 교사, 기관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형성된 후에는 CCTV가 관계에 있어 플러스 알파의 기능을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가장 기본은 사람간의 신뢰형성이며, CCTV의 존재로 인해 조금 더 배가된다는 것이다.

선생님과 저의 믿음. 평소에 아이를 케어해주시는 걸 보고 제가 듣고 아이가 반응 하는 걸 보고 이런 믿음에 플러스 알파 정도의 영향만 CCTV가 주는 것 같아요. 10% 정도 되려나요, 별로 큰 영향은 안 주는 것 같아요. 일단 믿음이 생기는 건 선생님과 가장 중요한 것 같고(가정어린이집학부모, 2015. 10. 30).

경력 1년차 교사가 많이 놀랐죠. 엄마와 관계가 그렇게 되는 게 경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할지 본인이 많이 당황을 하고..CCTV가 있어서 저희에게 도움이크게 됐죠(유치원교사, 2015. 11. 5).

## 나) 안전장치로 안심과 믿음이 감

CCTV 설치가 부모에게는 자녀가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인식되는 한편, 교사와 원장에게는 안전사고를 위한 방지책으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인식하였다.

제가 그거를 보든 안 보든 이용을 하든 안 하든, 일단은 어쨌든 무슨 큰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이랬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이가 조금은 더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없다면 할 수 없지 만 있으니까 좀 더 안심이 되는, 그런 것 같아요(가정어린이집학부모 면담, 2015. 10. 30).

안전장치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시는 것 같아요(유치원교사, 2015. 11. 5).

현관 같은 곳이나 실외 놀이 시설 같은 데는 안전에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놓을 수 있죠(국공립유치원 원장, 2015. 10. 12).

# 다) 교사 보호와 오해 해명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들의 이의제기가 증가하는 요즈음 CCTV의 영 상자료가 오히려 교사의 행동을 증명함으로써 부모들의 오해를 해결하고 교사 를 보호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도 있었다.

원장님께서 교육적인 아이들 안전도 그렇고. CCTV가 유치원 교사도, 유치원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냥 한다고 하시는 의견에 그냥 교사들 모두다 '아, 네'하고 그렇게 해서 다 동의하면서 CCTV가 설치가 되었죠(유치원교사, 2015. 11. 5).

교사들이 보호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엄마들 이 컴플레인을 했는데, 교사들이 자기행동을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CCTV가 있는 유치원 원장, 2015. 11. 5).

#### 라) 교사와 아이의 부정적인 관계를 막음

CCTV 설치가 교사와 영유아와의 부정적인 관계를 막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교사가 영유아의 행동으로 인해 감정조절이 어려울 때 CCTV의 존재가 교사로 하여금 절제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보았다.

아이와 선생님이 부딪히는 거를 CCTV가 약간 막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적인 상호 작용은 선생님과 아이의 몫이지만 선생님이 뭔가 아이에게 해코 지를 한다거나 뭔가 순간 욱했다가도, 조절을 못한다든가, 네. 그건 거에 대한 역할을 CCTV가 좀 방어를 해주지 않을까(가정어린이집학부모, 2015, 10, 30).

교사 인권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동과 교사의 이야기가 다를 때 증명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때, 그런 면에 있어서도 플러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직장어린이집교사, 2015. 10.23).

#### 마) 아이들 간의 갈등과 문제 발생 시 필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유아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CCTV가 활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갈등 해결의 여러 방법 중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이를 너무 못살게 굴거나 아니면 아이들에게 소위 말하는 왕따를 당하고 그러면 CCTV가 필요할 것 같아요(국공립유치원학부모, 2015. 10. 22).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도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가 있는 데 그 중 하나로 도입을 하는 거지(CCTV가 있는 유치원원장, 2015. 11. 5).

#### 바) 교수활용도구

소수의 교사와 원장은 CCTV가 교사의 수업능력과 문제점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CCTV라는 기계가 감시목적이 아니라 교수학습 기술의 개선을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사들도 원장님 동의하에, 언제든지 자기가 수업 개발이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때 자기가 스스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위치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감시가 아닌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 사들한테 함께 상의하고 토론해서 지침을 정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잘 활용되어 졌으면 좋겠어요(직장어린이집교사, 2015. 10. 31).

교사의 인성이라든지 교수의 기술을 바꾸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는 있는 거죠. 교수학습 기술을 개선하는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에서는 긍정적으로 봐요(CCTV가 있는 유치원원장, 2015. 11. 5).

#### 사) 기타

이 외에도 영아들이 많은 어린이집에는 아이들의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유 치원보다 CCTV가 더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과 CCTV를 의식해 교사가 아무래 도 행동을 조심함으로써 아동학대가 예방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아이들 연령 때문에. 선생님은. 어린이집은 사실 있어야 될 것 같고, 유치원도 있으면 좋지만 꼭 굳이 교실까지는 없어도(사립유치원학부모, 2015. 11. 5)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게, 아무래도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을 거라고 조금 더 조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아동학대 예방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직장어린이집교사, 2015. 10. 31).

## 2) CCTV의 단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치원·어린이집 구성원들과의 면담에서 추출된 197개의 의미 중 50%가 CCTV의 단점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를 범주에 따라 요약하면 〈표 Ⅲ-1-15〉와 같다. CCTV의 단점에 대해 통제와 감시로 불신과 오해가 생기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교권에 대한 도전, 인권침해, CCTV의 사각지대, 교사의 부담과 사기 저하 등의 순으로 반대 근거가 제시되었다.

〈표 III-1-15〉 CCTV의 단점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범주 -	원장		교사		학부모	н]⊏	——— н] ◊ <i>ю</i> ∧
김구 -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	이집 러무도		미판(/%)
인권 침해	1	1	2		1	5	10
CCTV 사각지대 및 조작가능	1	1			3	5	10
교사의 불편함이 아이에게 영향		1		2	1	4	8
아동학대 예방 안 됨			2		1	3	6
CCTV보다 신뢰문제가 중요					1	1	2
통제와 감시로 불신과 오해	3	1	3	4		11	22
교권에 대한 도전(자율성감소)	3	1	1	2		7	14
CCTV의 지나친 관심	1	1	1			3	6
부모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	1	2		1		4	8
교사의 부담과 사기 저하	1	3		1		5	10
비용 비효율	1	1				2	4
	12	12	9	10	7	50	100

## 가) 통제와 감시로 불신과 오해 초래

구성원들은 CCTV가 통제와 감시의 도구이며, 이를 통해 오히려 불신과 오해가 쌓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CCTV에 담긴 정보들은 상황과 맥락에 대한 설명 없이 고정된 각도에서 촬영된 단편적인 화면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부모와 교사의 신뢰관계가 기초가 되어야 하는 교육환경에서 교사의 말을 신뢰하기보다 CCTV의 영상정보를 더 믿게되는 것이 우려스럽다는 의견도 있었다.

CCTV는 아닌 것 같아요. 소리가 녹음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말 그런 멘토가 필요 하다면 교사의 말투라든지 그런 모든 게 다 전반적으로 이뤄져야지 화면만 갖고 는 약간 통제하겠다라는 것 밖에는 느껴지지 않죠(사립유치원교사, 2015. 11. 5).

다양한 각도에서 상황을 봐야지 단면적으로만 보이니까 오해의 소지가 많을 것 같아요.(민간어린이집교사, 2015. 11. 3).

조그만 싸움이 있어도. 얘하고 얘하고 싸웠어. 그런데 그거를 선생님 말에 신뢰 감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는 교사의 말에 신뢰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과연 이게 어디까지 갈건가지요. 이게 교사의 신뢰도가 떨어져서 교사의 말보다는 CCTV 켜 주세요, 우리가 볼 거예요. 그러고 며칠까지 보고 그러고서 확산이되는 거야(CCTV가 없는 유치원 원장, 2015. 11. 5).

# 나) 교권에 대한 도전(교사의 자율성 감소)

CCTV의 설치가 교권에 도전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유치원·어린이집에서 발생하게 되는 갈등을 구성원들이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기보다는 CCTV에 의존함으로써 오히려 교사의 자율성이 보호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약간 교권, 인권도 문제지만 교권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사립유 치원교사, 2015. 11. 5).

우리 사회가 너무나 모든 규칙과 그런 걸 지켜서 자율성을 다 말소시키는 것 같아요. 스스로 알아서 이걸 해결해 정말 민주적이 되어야 하는데, 타율적인 거예요. 모든 게 다. 그거는 정말 생각해 봐야 할 문제 같고. 그리고 CCTV 문제에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거를 보호 받는다? 보호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CCTV가 없는 유치원 원장, 2015. 11. 5).

#### 다) 인권 침해

CCTV가 영유아와 교사의 인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모자이크로 해당 영유아의 얼굴만 보이도록 처리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영유아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불특정다수가 이동하는 공공장소와 달리 유치원·어린이집은 특정 영유아와 교사들이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모자이크처리가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역부족일 수 있다.

CCTV라는 얘기를 듣고 그런 거를 조금 잠깐씩 오며 가며 잠깐씩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인권 보호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모자이크 처리를 해도 저는 저희 반 애들 다 알아볼 것 같거든요(가정어린이집 학부모, 2015. 10. 30).

화질 좋은 CCTV는 다른 사람의 인권이 너무나 침해가 다(국공립어린이집 원장, 2015. 10.12).

## 라) CCTV 사각지대 및 조작 가능성

기존에 발생했던 아동학대 사건들이 CCTV가 있음에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상기하며 구성원들은 CCTV가 아동학대의 예방책이 될 수 없으며, 풍선효과처럼 사각지대에서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표현하였다.

사각지대로 데려가서 혼낼 수도 있는 거고, CCTV가 없는 데가 많잖아요. 다른데 가서 혼낼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또 CCTV를 의무화한다고(국공립유치원 학부모, 2015. 10. 22).

CCTV 밑에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보이잖아. 가운데도 어안렌즈를 사용하지 않는 한. 코너에는 사각지대가 반드시 생기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민간어린이집원장, 2015. 10. 19).

CCTV가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때릴 사람은 때릴 것이고 CCTV가 있다고 그게 무서워서 안 할 것 같지는 않아요(국공립어린이집원장, 2015, 10, 12).

# 마) 교사의 부담과 사기 떨어뜨림

구성원들 중 교사와 원장이 주로 CCTV의 설치가 교사들이 영유아와 활동하는데 부담을 주며, 열람 후 부모로부터 의심을 받았다는 느낌 때문에 교사로서

#### 의 사기가 저하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자유롭게 놀이도 하고, 같이 누워서 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또 평가가 되고 하니까 부담스럽기도 하고(직장어린이집 교사, 2015. 10. 23).

아무것도 안 나왔어도 교사의 사기는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물론 언제든지 보 러오세요는 하지만 그래도 사람 마음이 일단 보러 오시면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사실(민간어린이집 원감, 2015. 11. 3).

## 바) 교사의 불편함이 아이에게 영향

구성원들은 교사의 불편함이 결국 영유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부모들은 이러한 이유로 CCTV 열람을 자제하고 있으며, 교사들도 자신과 아이들의 상호작용을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아이들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행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선생님들이 편해야 애들이 편하지 않을까(국공립유치원학부모, 2015. 10. 22).

좀 더 정이 없어질 것 같아요. 전에는 막 안아주고 서로 스킨십 하면서 하잖아요. 서로 농담도 하고 하면서 편한 관계였는데, 어머니들이 본다고 하시니까 조금 경직된다고 할까요(민간어린이집교사, 2015. 11. 3).

#### 사) 부모와의 관계 부정적인 영향

CCTV가 오히려 부모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입장도 있었다. 부모들이 교사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열람에 대한 요구를 강하게 하는 경우 그 영향으로 영유아도 교사를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어머니들은 아이들 말이나 CCTV만을 믿고 오히려 선생님 말을 안 믿고, 신뢰감을 잃고 그럴 것 같아요(민간어린이집교사, 2015. 11. 3).

언론에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부모들이 조심스럽게 접근 했는데, 지금은 정서적인 부분 백업, 전문가랑 같이 오겠다 이렇게 요구가 지나치게(민간어린이집원 장. 2015. 10. 19).

#### 아) 아동학대 예방 안 됨

무엇보다 CCTV의 설치가 아동학대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기 보다는 감시차

원이며 실제로 아동학대가 이루어진 사례들을 보면 교사나 원장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경우들로 CCTV가 있다고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러한 의견들은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해 다른 대안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거를 인식하고 있는 정도라면 아이에게 그렇게 안할 것 같아요. 대부분 학대를 할 때는 감정이 고조되어 있다든지, 우발적이라든지 이럴 텐데, 그때 CCTV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정도라면 그 사람들은 그게 있었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민간어린이집학부모, 2015. 11. 3).

효과라기보다는 그냥 감시 차원. 그냥 이렇게, 이게 없으면 그냥 묻어갈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다. 이게 만약 없었다면 언제 몇 번 일어났을 지도 모르는 일들인 데, 이게 있음으로 해서 이슈화되고, 알게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 방은 안 될 것 같아요. 이것만 단다고 해서(민간어린이집교사, 2015. 11. 3).

## 자) 기타

이 외에도 CCTV의 이슈화로 오히려 부모들의 관심이 늘어났으며, 설치와 유지비용에 비해 그 효과가 의심스럽다는 의견도 있었다.

CCTV 얘기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CCTV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면 있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아~ 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사립유치원교사, 2015, 11, 05).

어제 뉴스에서는 A라는 주인공만 부각이 되게 하고 나머지는 모자이크를 하는 기술을 (말했다.). 그런데 지금 CCTV도 굉장히 금액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기술이 향상된 것으로 한다고 했을 때,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전국적으로. 근데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으로 다른 것을 지원해 주시고(국공립유치원원감, 2015. 10. 12).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그런 사례를 위해서 이 많은 돈과 에너지와 감정을 낭비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그 돈과 에너지와 감정을 보육에 쏟아넣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것인지 좀 복지부에서 비용 효율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민간어린이집원장, 2015. 10. 19).

CCTV가 굳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그게 있어도 큰 문제가 되어서 열람을 한다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믿고 맡기는 그게 가장 큰 것 같고(국공립어린이집학부모. 2015. 10. 23).

#### 3) 근본대책

CCTV의 장점과 단점 외에도 CCTV의 설치가 아동학대 예방의 근본 대책이될 수 없다는 의견도 다수였다. CCTV 보다는 교사의 자질과 CCTV가 없어도되는 신뢰관계 형성이 더욱 중요하며,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범주	빈도	비율(%)
교사의 자질	9	27.3
교사 근무환경 개선	6	18.2
교사의 인성 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5	15.2
CCTV 없어도 되는 신뢰관계가 우선되어야 함	9	27.3
학부모를 자원봉사자로(개방)	4	12.1
	33	100

〈표 Ⅲ-1-16〉 CCTV 설치에 대한 근본 대책

#### 가) 교사의 자질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CCTV 설치와 보육료 지원에 앞서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좋은 교사, 유능한 교사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CCTV 설치보다 교사의 질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냥 선생님들의 자질이나 이런 걸 보는 거지. 굳이 그렇게 CCTV가 있어서 보여달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건가 모르겠어요(국공립유치원 학부모, 2015. 10. 22).

차라리 보육료를 조금 받더라도 교사 질을 높여야지 아이들이 가서 행복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그런 것 없이 CCTV만 설치하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문제가심각하죠(국공립유치원 교사, 2015. 10. 22).

CCTV도 있고, 뭐도 있고, 마치 다 해결된 것 같애. 근데 아니거든요. 근본적인 건 교사의 자질이거든요(CCTV가 없는 유치원 원장. 2015. 11. 5).

#### 나) CCTV 없어도 되는 신뢰관계가 우선되어야 함

아동학대 예방의 근본 대책은 교사와 부모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는 입장도 있었다. 현재 CCTV 설치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일시적인 방편일 뿐이며 궁극적으로는 CCTV가 없더라도 서로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지적하였다.

결국에는 CCTV가 어떤 이동학대 대한 방지책으로 나온 것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 없는 사회로 가는 게 제일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제일 많이 커요(민간어린이집 학부모, 2015, 10, 23).

#### 다)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

아동학대를 일삼는 나쁜 교사는 CCTV만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교사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교사의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이 효 과적인 방안이라고 하였다.

그것만 된다고 해서 나쁜 교사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CCTV는 그냥 어떤 행위의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 결과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는 게 정말,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일인데. 그게 정말 강조되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처음 해결책, 교사 처우를 개선해준다든가 아니면 진짜 그런 교사가 다시는 발을 디디지 못하게 해서 환경자체를 안전하게 만든다 이런 것 보다는 사후처리에 급급해가지고 CCTV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 원래의 그 원론적인 문제를 잊고 지내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로 몰고 가는 건 아니다 싶었거든요(민간어린이집 학부모, 2015. 10. 23).

이런 일이 생기는 거는 100프로까진 아니더라도 95프로까진 어린이집 교사들이 아이들과 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국공립 유치원 교사, 2015, 10, 22).

## 라) 교사의 인성 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교사들에게 아동학대를 구분할 수 있는 재교육이 필요하며 자신의 인성과 정 신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대부분 학대를 할 때는 감정이 고조되어 있다든지, 우발적이라든지 이럴 텐데, 그 때 CCTV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정도라면 그 사람들은 그게 있었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안 했다고하기 때문에 증거로서 필요한 것이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다면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적성 검사, 정신 건강 그런 걸 체크를 해서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한 거지(민간어린이집학부모, 2015, 11, 3).

중요한 건 교사들이 조금 더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을 조금 더 잘 받아야 될 것 같고, 자주 자주 그런 것을 리마인드 하는 그런 계기를 갖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교사들도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튀어나오 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자주 리마인드 한다면 그래도 그 빈도가 줄어들고 그렇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직장어린이집 교사, 2015. 10. 31).

#### 마) 학부모를 자원봉사자로(개방)

다른 한편 학부모를 자원봉사자로 교실/보육실을 개방함으로써 CCTV보다 더 무서운 학부모의 눈으로 교사를 지켜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오히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에 대한 이해가 깊어 지고 동시에 교사에 대한 신뢰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CCTV보다 무서운 게 학부모에요. 근데 학부모가 내 교실에 있어, 수업하는데 온 종일. 자원봉사자 때문에. 지금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 무서우면 CCTV 대신학부모를 한 분씩 넣으라고 해서(국공립유치원원장, 2015. 10. 12).

엄마들이 교실에 와서 자원봉사를 하면 선생님을 이해하고 아이들을 객관적으로 보는 눈도 생기고. 아,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구나 욕심을 버리고, 유치원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그런 걸 다 이해하잖아요(국공립유치원원장, 2015. 10. 12).

## 다.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들의 CCTV 설치에 대한 의견 조사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들의 CCTV 설치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설문결과를 분석하였다.

## 1) CCTV 설치에 대한 찬·반 의견

유치원·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유치원 교사들의 64.5%는 찬성, 반대는 35.5%로 찬성이 절반 이상이었다.

유치원의 설립유형에 따라 설치에 대한 의견에 차이가 있었다. 공립유치원 교사들은 반대한다는 응답이 60.7%로 높았던 것에 비해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찬성 비율이 73.4%로 높았다. 이것은 이미 사립유치원에 CCTV 설치 비율이 높은 것에서 기인하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담당 학급 연령에 따라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찬성하는 의견이 50% 이상이었다.

그리고 3~6년 미만 교사(54.5%), 6년 이상 교사(56.4%)와 같이 경력이 많은 교사보다는 1년 미만(90.9%), 1~3년 미만 경력 교사들이(79.2%) 찬성하는 경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신규교사들이 CCTV에 대한 거부감이 적음을 알수 있다.

〈표 Ⅲ-1-17〉 유치원 CCTV 설치에 대한 찬반 의견

<u>단위: %(명</u>) 구분 찬성한다 반대한다 계 전체 35.5 100.0(107) 64.5 설립유형 39.3 공립 60.7 100.0(28 사립 73.4 26.6 100.0(79)  $\chi^2$  (df) 10.52(1) 기관규모 40인 이하 66.7 33.3 100.0(3) 41~80인 이하 61.1 38.9 100.0(18) 81인 아상 65.1 34.9 100.0(86) 0.11(2) $\chi^2$  (df) 담당 학급 연령 만3세반 60.0 40.0 100.0(35) 만4세반 68.8 31.3 100.0(32) 만5세반 56.5 100.0(23) 43.5 혼합연령 71.4 28.6 100.0(7) 해당없음 80.0 20.0 100.0(10) 2.40(4) $\chi^2$  (df) 유치원교사경력 1년 미만 90.9 9.1 100.0(11) 1-3년 미만 79.2 20.8 100.0(24) 3-6년 미만 54.5 45.5 100.0(33) 6년 이상 56.4 43.6 100.0(39) 8.15(3)  $\chi^2$  (df)

\*p<.05, \*\* p<.01

CCTV 설치에 찬성하는 유치원 교사들은 그 이유로 '안전사고 발생 시 확인 및 예방'이라는 응답이 45.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부모-교사 분쟁발생 시 객관적 자료를 통한 교사 보호'(35.7%)라고 응답하여 CCTV 설치로 인해 안전사고 확인과 예방, 교사의 보호를 주된 이유로 삼고 있었다. 반면, 유치원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CCTV 설치를 찬성한다는 의견은 1.4%로 가장 낮게나타나 실제 유치원 교사들이 CCTV 설치를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설립유형, 기관규모, 담당학급 연령, 교사경력에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Ⅲ-1-18〉 유치원 CCTV 설치 찬성 이유

	(11		10, ,,,	1, 2			0171	다	위: %(명)
구분	유치원 내 아동학 대 예방	부모 -교사 분쟁시 객관료 자료한 교사 보호	유아 간 갈등파 악 및 문제해 결	안전사 고 발생시 확인 및 예방	부모의 불안 해소	부모와 교사간 신뢰 회복	수업 모니터링 통한 교사의 자기계발	기타	<u>用</u>
전체	1.4	35.7	1.4	45.7	1.4	4.3	7.1	2.9	100.0(70)
설립유형									
공립	0.0	27.3	9.1	54.5	0.0	0.0	0.0	9.1	100.0(11)
사립	1.7	37.3	0.0	44.1	1.7	5.1	8.5	1.7	100.0(59)
$\chi^2$ (df)					9.49(7)				
기관규모									
40인 이하	0.0	100.0	0.0	0.0	0.0	0.0	0.0	0.0	100.0(2)
41~80인 이하	0.0	45.5	0.0	54.5	0.0	0.0	0.0	0.0	100.0(11)
81인 이상	1.8	31.6	1.8	45.6	1.8	5.3	8.8	3.5	100.0(57)
$\chi^2$ (df)					6.95(14)				
담당 학급 연령									
만3세반	0.0	28.6	0.0	52.4	0.0	4.8	9.5	4.8	100.0(21)
만4세반	0.0	40.9	4.5	40.9	4.5	0.0	4.5	4.5	100.0(22)
만5세반	0.0	42.9	0.0	35.7	0.0	14.3	7.1	0.0	100.0(14)
혼합연령	0.0	40.0	0.0	60.0	0.0	0.0	0.0	0.0	100.0(5)
해당없음	12.5	25.0	0.0	50.0	0.0	0.0	12.5	0.0	100.0(8)
$\chi^2$ (df)	21.03(28)								
유치원교사경력									
1년 미만	0.0	30.0	10.0	40.0	0.0	0.0	10.0	10.0	100.0(10)
1-3년 미만	5.3	26.3	0.0	52.6	0.0	5.3	10.5	0.0	100.0(19)
3-6년 미만	0.0	63.2	0.0	26.3	0.0	5.3	5.3	0.0	100.0(19)
6년 이상	0.0	22.7	0.0	59.1	4.5	4.5	4.5	4.5	100.0(22)
$\chi^2$ (df)	23.50(21)								

반면 유치원의 CCTV 설치를 반대하는 교사들은 '(교사를 잠재적범죄자로 인식) 교사의 사기가 저하됨'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그 다음으로 '교사의 교육자율권 침해'를 들었다. 또한 '교사와 유아의 개인정보 노출' 및 '아동학대와 무관한 해결책'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특히 1~3년 미만 경력의 교사들이 '교사의사기가 저하'된다는 입장을 밝혀 이 시기가 이직을 고려하는 시점임을 감안할때 CCTV의 존재가 교사의 이직에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 III-1-19〉 유치원 CCTV 설치반대 이유

	\ <u></u>		· / / / / / /			171	듸	·위: %(명)	
구분	대상 유아 이외 유아와 교사의 개인정보 노출위험	교사의 교육 자 <del>율</del> 권 침해	(교사를 잠재적범 죄자로 인식)교 사의 사기저하	CCTV에 촬영된 개인정보 의 의 관리부실 위험	근본적인 아동학대 해결책과 무관	교사와 부모, 유아의 신뢰 저하	기타	<del>개 조(S)</del> 계	
전체	12.8	23.1	41.0	2.6	12.8	5.1	2.6	100.0(39)	
설립유형									
공립	5.6	27.8	38.9	0.0	22.2	5.6	0.0	100.0(18)	
사립	19.0	19.0	42.9	4.8	4.8	4.8	4.8	100.0(21)	
$\chi^2$ (df)				5.7	6(6)				
기관규모									
40인 이하	0.0	100.0	0.0	0.0	0.0	0.0	0.0	100.0(1)	
41~80인 이하	14.3	14.3	42.9	0.0	14.3	0.0	14.3	100.0(7)	
81인 이상	12.9	22.6	41.9	3.2	12.9	6.5	0.0	100.0(31)	
$\chi^2$ (df)		8.85(12)							
담당 학급 연령									
만3세반	14.3	28.6	35.7	7.1	7.1	0.0	7.1	100.0(14)	
만4세반	9.1	27.3	45.5	0.0	18.2	0.0	0.0	100.0(11)	
만5세반	20.0	10.0	50.0	0.0	10.0	10.0	0.0	100.0(10)	
혼합연령	0.0	50.0	0.0	0.0	0.0	50.0	0.0	100.0(2)	
해당없음	0.0	0.0	50.0	0.0	50.0	0.0	0.0	100.0(2)	
$\chi^2$ (df)	20.71(24)								
유치원교사경력									
1년 미만	0.0	0.0	0.0	0.0	0.0	0.0	100.0	100.0(1)	
1-3년 미만	0.0	20.0	80.0	0.0	0.0	0.0	0.0	100.0(5)	
3-6년 미만	18.8	25.0	31.3	6.3	12.5	6.3	0.0	100.0(16)	
6년 이상	11.8	23.5	41.2	0.0	17.6	5.9	0.0	100.0(17)	
$\chi^2$ (df)				45.02	(18)***				
*** p<.001									

한편, 어린이집 교사들의 60.7%가 CCTV 설치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집의 설립유형과 기관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직장어린이집 교사들은 찬성 의견이 더 많은 반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교사들의 반대의견이더 많았으며, 다른 규모에 비해 40인 이하의 소규모 어린이집 교사의 반대 도더 많았다. 국공립과 대규모 어린이집이 이미 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 반해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미설치 기관이 많아 교사들의 거부감이 크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 III-1-20〉어린이집 CCTV 설치에 대한 찬반 의견

			단위: %(명)
구분	찬성한다	반대한다	계
전체	39.3	60.7	100.0(107)
설립유형			
국공립	52.6	47.4	100.0(19)
법인	50.0	50.0	100.0(6)
민간	29.5	70.5	100.0(44)
가정	24.0	76.0	100.0(25)
직장	76.9	23.1	100.0(13)
$\chi^2$ (df)		13.63(4)**	
기관규모		,	
40인 이하	19.5	80.5	100.0(41)
41~80인 이하	48.9	51.1	100.0(45)
81인 이상	57.1	42.9	100.0(21)
$\chi^2$ (df)		11.27(2)**	
담당 학급 연령		, ,	
0세반	10.0	90.0	100.0(10)
1세반	32.1	67.9	100.0(28)
2세반	39.4	60.6	100.0(33)
3세반	57.1	42.9	100.0(14)
4세반	40.0	60.0	100.0(5)
5세반	83.3	16.7	100.0(6)
혼합연령	36.4	63.6	100.0(11)
$\chi^2$ (df)		11.00(6)	
보육경력			
1년 미만	25.0	75.0	100.0(8)
1-3년 미만	29.2	70.8	100.0(24)
3-6년 미만	42.9	57.1	100.0(49)
6년 이상	46.2	53.8	100.0(26)
$\chi^2$ (df)		2.49(3)	
** p<.01		, ,	

어린이집 교사들의 설치 반대 이유를 살펴본 결과, '교사의 사기 저하'가 27.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교사의 교육 자율권 침해', '대상 영유아이외의 영유아와 교사의 개인정보 노출', '근본적인 아동학대 해결책과 무관'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기관규모가 40인 이하인 어린이집 교사들은 아동학대 해결책과 무관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데 반해, 41-80인 이하 어린이집 교사들은 교사의 교육 자율권 침해라는 의견이, 81인 이상의 어린이집 교사들은 교사와 부모, 영유아의 신뢰가 저하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표 Ⅲ-1-21〉어린이집 CCTV 설치 반대 이유

	,					. , .	단위: %(명)		
구분	대상 영유아 이외 영유아와 교사의 개인정보 노출위험	교사의 교육 자율권 침해	(교사를 잠재적범 죄자로 인식)교 사의 사기저하	근본적인 아동학대 해결책과 무관	교사와 부모, 영유아의 신뢰 저하	기타	계		
전체	20.0	23.1	27.7	18.5	9.2	1.5	100.0(65)		
설립유형									
국공립	22.2	11.1	33.3	22.2	11.1	0.0	100.0(9)		
법인	33.3	33.3	0.0	0.0	0.0	33.3	100.0(3)		
민간	22.6	25.8	29.0	16.1	6.5	0.0	100.0(31)		
가정	10.5	26.3	21.1	26.3	15.8	0.0	100.0(19)		
직장	33.3	0.0	66.7	0.0	0.0	0.0	100.0(3)		
$\chi^2$ (df)		30.29(20)							
기관규모				,	,				
40인 이하	0.0	9.1	27.3	30.3	18.2	15.2	100.0(33)		
41~80인 이하	4.3	43.5	17.4	26.1	8.7	0.0	100.0(23)		
81인 이상	0.0	0.0	22.2	22.2	44.4	11.1	100.0(9)		
$\chi^2$ (df)				20.60(10	)*				
담당 학급 연령				,					
0세반	22.2	33.3	11.1	11.1	22.2	5.3	100.0(9)		
1세반	0.0	26.3	36.8	26.3	5.3	0.0	100.0(19)		
2세반	40.0	20.0	20.0	10.0	10.0	0.0	100.0(20)		
3세반	50.0	16.7	16.7	16.7	0.0	0.0	100.0(6)		
4세반	0.0	33.3	33.3	33.3	0.0	0.0	100.0(3)		
5세반	0.0	0.0	100.0	0.0	0.0	0.0	100.0(1)		
혼합연령	0.0	14.3	42.9	28.6	14.3	0.0	100.0(7)		
$\chi^2$ (df)				26.81(30	))				
보육경력				,					
1년 미만	50.0	16.7	16.7	16.7	0.0	0.0	100.0(6)		
1-3년 미만	17.6	23.5	35.3	11.8	11.8	0.0	100.0(17)		
3-6년 미만	14.3	25.0	28.6	21.4	10.7	0.0	100.0(28)		
6년 이상	21.4	21.4	21.4	21.4	7.1	7.1	100.0(14)		
					• • • • • • • • • • • • • • • • • • • •				
$\chi^2$ (df)				9.28(15)	)				

반면 CCTV 설치를 찬성하는 어린이집 교사들은 그 이유로 50.0%가 '안전사고 발생 시 확인 및 예방'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부모-교사 분쟁발생 시 객관적자료를 통한 교사보호' 한다는 의견도 38.1%에 해당되었다.

〈표 III-1-22〉어린이집 CCTV 설치 찬성 이유

	•	,			단위: %(명)
구분	부모-교사 분쟁발생시 객관적 자료를 통한 교사보호	안전사고 발생시 확인 및 예방	부모의 불안 해소	부모와 교사간 신뢰 회복	A 利
전체	38.1	50.0	2.4	9.5	100.0(42)
설립유형					
국공립	60.0	40.0	0.0	0.0	100.0(10)
법인	33.3	66.7	0.0	0.0	100.0(3)
민간	30.8	61.5	7.7	0.0	100.0(13)
가정	33.3	33.3	0.0	33.3	100.0(6)
직장	30.0	50.0	0.0	20.0	100.0(10)
$\chi^2$ (df)			12.15(12)		
기관규모					
40인 이하	25.0	50.0	0.0	25.0	100.0(8)
41~80인 이하	31.8	59.1	0.0	9.1	100.0(22)
81인 이상	58.3	33.3	8.3	0.0	100.0(12)
$\chi^2$ (df)			8.57(6)		
담당 학급 연령					
0세반	0.0	100.0	0.0	0.0	100.0(1)
1세반	44.4	44.4	0.0	11.1	100.0(9)
2세반	30.8	61.5	0.0	7.7	100.0(13)
3세반	25.0	62.5	12.5	0.0	100.0(8)
4세반	100.0	0.0	0.0	0.0	100.0(2)
5세반	40.0	40.0	0.0	20.0	100.0(5)
혼합연령	50.0	25.0		25.0	100.0(4)
$\chi^2$ (df)			12.89(18)		
보육경력					
1년 미만	100.0	0.0	0.0	0.0	100.0(2)
1-3년 미만	28.6	42.9	0.0	28.6	100.0(7)
3-6년 미만	33.3	57.1	0.0	9.5	100.0(21)
6년 이상	41.7	50.0	8.3	0.0	100.0(12)
$\chi^2$ (df)			10.13(9)		

# 2) 교실/보육실의 CCTV 설치에 대한 의견

더 나아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실/보육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물어보았다. 그 결과, 유치원 교사의 52.3%가 찬성하였으며, 47.7%는 반대라고 응답하였다. CCTV를 교실에 설치하는 데 찬성하는 비율은 유치원 CCTV 설치에 대한 찬성 비율(64.5%)보다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으

며, 특히 공립유치원 교사들의 대부분이 교실 내 설치를 반대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II-1-23〉 교실 CCTV 설치에 대한 찬반 의견(유치원)

<u>단위: %(명</u>) 구분 찬성 반대 계 전체 52.3 47.7 100.0(107) 설립유형 3.6 96.4 공립 100.0(28) 사립 69.6 30.4 100.0(79) 36.15(1)  $\chi^2$  (df) 기관규모 40인 이하 33.3 66.7 100.0(3) 41~80인 이하 38.9 61.1 100.0(18) 81인 이상 54.7 45.3 100.0(86)  $\chi^2$  (df) 1.74(2)담당 학급 연령 만3세반 48.6 51.4 100.0(35) 100.0(32) 만4세반 53.1 46.9 만5세반 52.2 47.8 100.0(23) 혼합연령 42.9 57.1 100.0(7) 해당없음 70.0 30.0 100.0(10)  $\chi^2$  (df) 1.71(4) 유치원교사경력 1년 미만 72.7 27.3 100.0(11) 1-3년 미만 62.5 37.5 100.0(24) 3-6년 미만 48.5 100.0(33) 51.5 6년 이상 59.0 41.0 100.0(39)  $\chi^2$  (df) 4.84(3)

\*\*\* p<.001

CCTV의 교실 설치를 찬성하는 교사들은 그 이유로 '안전사고 발생 시 확인 및 예방'과 '객관적 자료를 통한 교사 보호'를 들고 있었다.

〈표 III-1-24〉교실 CCTV 설치 찬성 이유(유치원)

`	\丑 III-1-	-24/ 业登	CCIV 2	일시 신경	UI뉴(뉴스	1건)	
							<u>단위: %(명)</u>
구분	유치원 내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사 분쟁발생 시 객관적 자료를 통한 교사보호	유아 간 갈등파악 및 문제해결	안전사고 발생 시 확인 및 예방	부모와 교사 간 신뢰 회복	수업 모니터링 통한 교사의 자기계발	계
전체	1.8	41.1	8.9	41.1	1.8	5.4	100.0(56)
설립유형							
공립	0.0	100.0	0.0	0.0	0.0	0.0	100.0(1)
사립	1.8	40.0	9.1	41.8	1.8	5.5	100.0(55)
$\chi^2$ (df)				1.46(5)			
기관규모							
40인 이하	0.0	100.0	0.0	0.0	0.0	0.0	100.0(2)
41~80인 이하	0.0	42.9	14.3	42.9	0.0	0.0	100.0(7)
81인 이상	2.1	38.3	8.5	42.6	2.1	6.4	100.0(47)
$\chi^2$ (df)				4.01(10)			
담당 학급 연령							
만3세반	0.0	35.3	5.9	47.1	5.9	5.9	100.0(17)
만4세반	0.0	41.2	11.8	41.2	0.0	5.9	100.0(17)
만5세반	0.0	58.3	8.3	25.0	0.0	8.3	100.0(12)
혼합연령	0.0	66.7	0.0	33.3	0.0	0.0	100.0(3)
해당없음	14.3	14.3	14.3	57.1	0.0	0.0	100.0(7)
$\chi^2$ (df)				14.97(20)			
유치원교사경력							
1년 미만	0.0	37.5	12.5	37.5	0.0	12.5	100.0(8)
1-3년 미만	6.7	13.3	6.7	60.0	6.7	6.7	100.0(15)
3-6년 미만	0.0	70.6	5.9	23.5	0.0	0.0	100.0(17)
6년 이상	0.0	37.5	12.5	43.8	0.0	6.3	100.0(16)
$\chi^2$ (df)				16.94(15)			

한편 교실 내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은 앞서 유치원에 CCTV 설치를 반대한 이유와 유사하게 '교사의 사기저하'와 '교사의 교육 자율권 침해'를 이유 로 들었으며, 특히 1~3년 미만과 고경력 교사들이 주로 이와 같이 응답하였다. 소수이나 1년 미만 교사들은 '교사와 부모, 유아의 신뢰 저하'를 이유로 들었다.

〈표 III-1-25〉 교실 CCTV 설치 반대 이유(유치원)

	(11 111	1 207	#E 0			71(71741	-/	.roi. v/lm/
	디사							<u>산위: %(명)</u>
구분	대상 유아 이외 유아와 교사의 개인정보 노출위험	교사의 교육 자율권 침해	(교사를 잠재적범 죄자로 인식)교 사의 사기저하	CCTV에 촬영된 개인정보 의 관리부실 위험	근본적인 아동학대 해결책과 무관	교사와 부모, 유아의 신뢰 저하	기타	계
전체	13.7	21.6	35.3	2.0	<b>17.6</b>	5.9	3.9	100.0(51)
설립유형								
공립	11.1	29.6	33.3	0.0	18.5	3.7	3.7	100.0(27)
사립	16.7	12.5	37.5	4.2	16.7	8.3	4.2	100.0(24)
$\chi^2$ (df)				3.7	0(6)			
기관규모								
40인 이하	0.0	100.0	0.0	0.0	0.0	0.0	0.0	100.0(1)
41~80인 이하	9.1	27.3	27.3	0.0	27.3	0.0	9.1	100.0(11)
81인 <mark>이</mark> 상	15.4	17.9	38.5	2.6	15.4	7.7	2.6	100.0(39)
$\chi^2$ (df)				7.38	8(12)			
담당 학급 연령								
만3세반	16.7	27.8	33.3	5.6	11.1	0.0	5.6	100.0(18)
만4세반	13.3	20.0	33.3	0.0	20.0	6.7	6.7	100.0(15)
만5세반	9.1	9.1	54.5	0.0	27.3	0.0	0.0	100.0(11)
혼합연령	25.0	50.0	0.0	0.0	0.0	25.0	0.0	100.0(4)
해당없음	0.0	0.0	33.3	0.0	33.3	33.3	0.0	100.0(3)
$\chi^2$ (df)				20.1	4(24)			
유치원교사경력								
1년 미만	0.0	0.0	0.0	0.0	0.0	33.3	66.7	100.0(3)
1-3년 미만	11.1	44.4	44.4	0.0	0.0	0.0	0.0	100.0(9)
3-6년 미만	18.8	12.5	31.3	6.3	25.0	6.3	0.0	100.0(16)
6년 이상	13.0	21.7	39.1	0.0	21.7	4.3	0.0	100.0(23)
$\chi^2$ (df)				47.12	2(18)***			
*** p<.001	•							

한편 어린이집 교사들은 보육실 내 CCTV에 대해 64.5%가 반대 의견을 표현하였다. 국공립과 법인어린이집은 반반의 의견이었으나,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반대하는 입장이 많았으며, 직장어린이집은 찬성하는 입장이 많아 각 기관의유형에 따라 견해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40인 이하의 어린이집에서 반대하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 영아반 교사들과 4세반 교사들이 설치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5세반 교사들은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III-1-26〉 보육실 CCTV 설치에 대한 찬반 의견

			단위: %(명)
구분	찬성	반대	계
전체	35.5	64.5	100.0(107)
설립유형			
국공립	52.6	47.4	100.0(19)
법인	50.0	50.0	100.0(6)
민간	25.0	75.0	100.0(44)
가정	20.0	80.0	100.0(25)
직장	69.2	30.8	100.0(13)
$\chi^2(df)$		14.19(4)**	
기관규모			
40인 이하	17.1	82.9	100.0(41
41~80인 이하	42.2	57.8	100.0(45)
81인 이상	57.1	42.9	100.0(21
$\chi^2$ (df)		11.26(2)**	
담당 학급 연령		. ,	
0세반	10.0	90.0	100.0(10)
1세반	32.1	67.9	100.0(28)
2세반	33.3	66.7	100.0(33)
3세반	57.1	42.9	100.0(14)
4세반	20.0	80.0	100.0(5)
5세반	83.3	16.7	100.0(6)
혼합연령	27.3	72.7	100.0(11)
$\chi^2$ (df)		12.75(6)*	
보육경력			
1년 미만	25.0	75.0	100.0(8)
1-3년 미만	29.2	70.8	100.0(24)
3-6년 미만	38.8	61.2	100.0(49)
6년 이상	38.5	61.5	100.0(26)
$\chi^2(df)$		1.14(3)	
*p<.05, ** p<.01			

보육실 내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로 교사들은 '교사의 교육 자율권 침해'와 더불어 '교사의 사기 저하', '근본적인 아동학대 해결과 무관', '영유아와 교사의 개인정보 노출위험' 등을 고르게 응답하였다. 어린이집의 기관 유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들은 교사의 사기저하를, 가정어린이집 교사들은 아동학대 해결책과 무관함을, 직장어린이집 교사들은 교사의 교육자율권 침해를 주요 반대 이유로 꼽고 있었다.

〈표 III-1-27〉 보육실 CCTV 설치 반대 이유

	\ <del>11</del> III	1 21/	T45 00	1 2 2 1			단위: %(명)
구분	대상 영유아 이외 여유아와 교사의 개인정보 노출위험	교사의 교육 자율권 침해	(교사를 잠재적범 죄자로 인식)교사 의 사기저하	근본적인 아동학대 해결책과 무관	교사와 부모, 영유아의 신뢰 저하	기타	계
전체	18.8	27.5	21.7	21.7	8.7	1.4	100.0(69)
설립유형							
국공립	11.1	22.2	44.4	22.2	0.0	0.0	100.0(9)
법인	33.3	33.3	0.0	0.0	0.0	33.3	100.0(3)
민간	27.3	27.3	21.2	15.2	9.1	0.0	100.0(33)
가정	10.0	25.0	20.0	35.0	10.0	0.0	100.0(20)
직장	0.0	50.0	0.0	25.0	25.0	0.0	100.0(4)
$\chi^2$ (df)				35.31(20)*			
기관규모							
40인 이하	8.8	26.5	32.4	23.5	8.8	0.0	100.0(34)
41~80인 이하	34.6	26.9	11.5	15.4	15.4	3.8	100.0(26)
81인 이상	11.1	33.3	11.1	33.3	33.3	0.0	100.0(9)
$\chi^2$ (df)				11.97(10)			
담당 학급 연령							
0세반	0.0	44.4	11.1	33.3	11.1	0.0	100.0(9)
1세반	15.8	15.8	15.8	31.6	15.8	5.3	100.0(19)
2세반	22.7	36.4	22.7	9.1	9.1	0.0	100.0(22)
3세반	50.0	16.7	16.7	16.7	0.0	0.0	100.0(6)
4세반	50.0	0.0	0.0	50.0	0.0	0.0	100.0(4)
5세반	0.0	0.0	100.0	0.0	0.0	0.0	100.0(1)
혼합연령	0.0	37.5	50.0	12.5	0.0	0.0	100.0(8)
$\chi^2$ (df)				31.27(30)			
보육경력				. ,			
1년 미만	50.0	16.7	16.7	16.7	0.0	0.0	100.0(6)
1-3년 미만	23.5	23.5	17.6	23.5	11.8	0.0	100.0(17)
3-6년 미만	16.7	33.3	30.0	10.0	10.0	0.0	100.0(30)
6년 이상	6.3	25.0	12.5	43.8	6.3	0.0	100.0(16)
$\chi^2$ (df)				17.00(15)			
*p<.05				. ,			

반면 보육실 내 CCTV 설치 찬성 이유로 '안전사고 발생 시 확인 및 예방'과 '객관적 자료를 통한 교사 보호'를 들었다.

〈표 Ⅲ-1-28〉 보육실 CCTV 설치 찬성 이유

						단위: %(명
구분	부모-교사 분쟁발생시 객관적 자료를 통한 교사보호	영유아 간 갈등파악 및 문제해결	안전사고 발생시 확인 및 예방	부모의 불안 해소	부모와 교사간 신뢰 회복	계
전체	39.5	2.6	50.0	5.3	2.6	100.0(38)
설립유형						
국공립	50.0	0.0	30.0	10.0	10.0	100.0(10)
법인	33.3	0.0	66.7	0.0	0.0	100.0(3)
민간	36.4	0.0	54.5	9.1	0.0	100.0(11)
가정	60.0	0.0	40.0	0.0	0.0	100.0(5)
직장	22.2	11.1	66.7	0.0	0.0	100.0(9)
$\chi^2$ (df)			10.81(	16)		
기관규모						
40인 이하	42.9	0.0	42.9	14.3	0.0	100.0(7
41~80인 이하	31.6	5.3	63.2	0.0	0.0	100.0(19)
81인 이상	50.0	0.0	33.3	8.3	8.3	100.0(12
$\chi^2$ (df)			7.52(	8)		
담당 학급 연령						
0세반	0.0	0.0	100.0	0.0	0.0	100.0(1)
1세반	55.6	9.1	44.4	0.0	0.0	100.0(9)
2세반	45.5	0.0	27.3	18.2	0.0	100.0(11)
3세반	25.0	0.0	75.0	0.0	0.0	100.0(8)
4세반	100.0	0.0	0.0	0.0	0.0	100.0(1)
5세반	20.0	0.0	60.0	0.0	20.0	100.0(5)
혼합연령	33.3	0.0	66.7	0.0	0.0	100.0(3)
$\chi^2$ (df)			20.37(	24)		
보육경력						
1년 미만	100.0	0.0	0.0	0.0	0.0	100.0(2)
1-3년 미만	42.9	0.0	57.1	10.5	0.0	100.0(7)
3-6년 미만	31.6	5.3	47.4	0.0	5.3	100.0(19)
6년 이상	40.0	0.0	60.0	0.0	0.0	100.0(10)
$\chi^2$ (df)			7.48(1	2)		

## 3) CCTV 설치의 기여 정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CCTV 설치가 아동학대 예방 등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4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 그 결과, 유치원 교사들과 어린이집 교사 모두 안전사고 발생 시 확인 및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각각 3.12점, 2.94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그 다음은 부모-교사 분쟁 발생 시 객관적 자료를 통해 교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유치원 교사 2.92점, 어린이집 교사 2.65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유아 간 갈등 파악 및 문제해결, 안전사고 발생시 확인 및 예방, 부모와 교사 간 신뢰회복에도 CCTV 설치가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평가하였다. 대부분 유치원 교사의 평균이 어린이집 교사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반면 부모의 불안해소나 수업 모니터링을 통한 교사의 자기계발에 도움이 되는 정도는 두 기관의 교사 모두 낮게 평가하였다.

〈표 III-1-29〉 CCTV 설치의 기여정도(유치원/어린이집)

					<u> 단위: 점</u>
구부	유	치원	어택	<b>민이집</b>	1
一七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τ
유치원/어린이집 내 아 동학대 예방	2.59	0.76	2.37	0.73	2.10*
부모-교사 분쟁 발생 시 객 관 적 자료를 통한 교사보호	2.92	0.75	2.65	0.79	2.48*
유아 간 갈등 파악 및 문제 해결	2.71	0.74	2.49	0.84	2.07*
안전사고 발생 시 확인 및 예방	3.12	0.67	2.94	0.63	2.00*
부모의 불안 해소	2.61	0.68	2.64	0.73	0.39
부모와 교사 간 신뢰 회복	2.25	0.84	2.01	0.81	2.16*
수업 모니터링을 통한 교사의 자기 계발	2.14	0.85	2.04	0.80	0.91

<sup>\*</sup>p<.05

# 2. 유치원·어린이집의 CCTV 설치 현황 및 요구

#### 가. 기관별 CCTV 설치 현황

# 1) 기관별 설치여부 및 설치 장소

설문조사를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CCTV 설치여부와 설치 장소를 살펴본 결과, 유치원 교사 107명 중 86.9%가 유치원에 CCTV가 설치되어있다고 응답하였다. CCTV 설치 장소를 살펴본 결과 '복도 및 계단', '실외놀이터', '공동놀이실', '식당 및 강당'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실'은 54.8%에 해당되었다. 특히 '식당 및 강당'과 '교실'은 공립보다는 사립의 비율이 높았으며, '복도 및 계단'은 사립보다는 공립유치원의 비율이 높았다.

〈표 III-2-1〉 CCTV 설치여부 및 설치 장소(유치원)

단위: %(개) 설치여부 설치 장소(n=93) 구분 실외놀 공동놀 식당 및 복도 및 아니 예 계 교실 주차장 기타 오 이터 이실 강당 계단 정체 23.7 86.9 13.1 100.0(107) 74.2 76.3 54.8 66.7 62.4 51.6 설립유형 100.0 0.0 100.0(28) 60.7 92.9 28.6 공립 67.9 39.3 3.6 57.1 사립 82.3 17.1 100.0(79) 76.9 69.2 72.3 69.2 49.2 21.5 76.9 5.71(1)\* 0.84(1) 0.64(1)  $9.09(1)^{**}$   $6.05(1)^{*}$   $42.52(1)^{***}$ 0.49(1) 0.54(1)  $\chi^2$  (df) 기관규모 40인 이하 66.7 33.3 100.0(3) 50.0 50.0 100.0 100.0 50.0 100.0 100.0 41~80인 이하 77.8 22.2 100.0(18) 50.0 57.1 42.9 71.4 42.9 21.4 21.4 81인 이상 89.5 10.5 100.0(86) 77.9 71.4 63.6 76.6 57.1 55.8 22.1 2.92(2) 3.30(2) 4.61(2) 2.17(2) 0.81(2) $\chi^2$  (df) 1.00(2)  $7.53(2)^*$   $6.60(2)^*$ 

\*p<.05, \*\* p<.01, \*\*\* p<.001

어린이집 교사 107명에게 조사한 결과, 73.8%가 CCTV가 설치되었다고 응답하였는데 국공립, 법인, 민간, 직장어린이집에서 설치했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가정어린이집은 CCTV를 설치하지 않은 비율이 높았다. 어린이집의 CCTV 설치장소를 질문한 결과, '보육실'이 100%로 가장 많았고, '복도 및 계단', '공동놀이실', '식당 및 강당'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다소 높은 CCTV 설치 비율은 본 조사가 편의표집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을 수 있고, 올해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인해 2015년도 신규 설치가 다소 증가한 영향일 수도 있다고 추정된다.

〈표 III-2-2〉 CCTV 설치여부 및 설치 장소(어린이집)

	단위: %(개)											
		설치이	<b>부</b>			설	치 장소					
구분	예	아니	계	실외놀	공동놀이	식당 및	복도 및	보육	주차장	기타		
	બા	오	/1	이터	실	강당	계단	실	十个6			
전체	73.8	26.2	100.0(107)	25.3	59.5	30.4	77.2	100.0	34.2	11.4		
설립유형												
국공립	84.2	15.8	100(19)	56.3	75.0	31.3	93.8	100.0	18.8	31.3		
법인	100.0	0.0	100.0(6)	0.0	50.0	0.0	100.0	100.0	50.0	0.0		
민간	79.5	20.5	100.0(44)	20.0	31.4	22.9	74.3	100.0	54.3	8.6		
가정	36.0	64.0	100.0(25)	11.1	88.9	0.0	22.2	100.0	11.1	0.0		
직장	100.0	0.0	100.0(13)	23.1	100.0	84.6	92.3	100.0	7.7	7.7		
$x^2$ (df)		27.06(	4)***	11.65(4)*	25.34(4)***	25.57(4)***	21.58(4)***	-	14.83(4)*	8.63(4)		
기관규모												
40인 이하	43.9	56.1	100.0(41)	16.7	77.8	11.1	33.3	100.0	16.7	5.6		
41-80인 이하	93.3	6.7	100.0(45)	23.8	57.1	40.5	90.5	100.0	23.8	9.5		
81인 이상	90.5	9.5	100.0(21)	36.8	47.4	26.3	89.5	100.0	73.7	21.1		
$\underline{x}^2$ (df)		30.88(	2)***	2.10(2)	3.75(2)	5.33(2)	25.52(2)***	-	17.64(2)***	2.51(2)		

\*p<.05, \*\*\*\* p<.001

#### 2) 기관 내 설치된 CCTV에 대한 교사들의 배경 지식

교사들에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의 기기종류와 설치비용 출처를 살펴본 결과, 유치원 교사들의 60.2%가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며, HD급(130만화소)라는 응답이 18.3%였다. 기관규모별로는 40인 이하 기관에서 HD급(130만화소) 설치 비율이 50.0%인 반면, 41인 이상 규모에서는 설치 비율이 20% 미만으로 차이가 있었다.

설치비용 출처와 임대여부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응답이 49.5%로 많았고, 그 다음은 '자부담으로 설치했다'는 응답이 31.2%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지원교사의 경력에 따라서는 뚜렷한 차이는 없었다.

반면, 기관규모별로는 40인 이하 규모에서는 '자부담+시군구 지원으로 설치했다'는 응답이 100%인 반면, 41-80인 이하 규모에서는 '자부담'이 50.0%로 절반 가까이 되었다. 반면, 81인 이상 규모에서는 '모른다'는 응답이 54.5%로 가장 많았다.

〈표 III-2-3〉 CCTV 기기종류 및 설치 유형(유치원)

다위: %

								단위: %
		기기	종류			설치비용	출처	
구분	SD급	HD급 100만화소	HD급 130만화소	모름	자부담	자부담+시 군구지원	임대	모름
전체	7.5	14.0	18.3	602	31.2	18.3	1.1	49.5
설립유형								
공립	17.9	7.1	25.0	50.0	17.9	28.6	0.0	53.6
사립	3.1	16.9	15.4	64.6	36.9	13.8	1.5	47.7
$\chi^2$ (df)		8.70	)(3)*			5.17(3	3)	
기관규모								
40인 이하	0.0	0.0	50.0	50.5	0.0	100.0	0.0	0.0
41~80인 이하	14.3	7.1	14.3	64.3	50.0	21.4	0.0	28.6
81인 이상	6.5	15.6	18.2	59.7	28.6	15.6	1.3	54.5
$\chi^2$ (df)		3.30	0(6)		12.91(6)*			
유치원교사경력							•	
1년 미만	0.0	50.0	0.0	50.0	50.0	20.0	0.0	30.0
1-3년 미만	4.5	13.6	13.6	68.2	27.3	9.1	0.0	63.6
3-6년 미만	7.1	10.7	21.4	60.7	28.6	17.9	3.6	50.0
6년 이상	12.1	6.1	24.2	57.6	30.3	24.2	0.0	45.5
$\chi^2$ (df)		16.2	25(9)		7.08(9)			
*p<.05								

어린이집 교사들의 54.4%도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며, 'SD급'이라는 응답도 27.8%였다. 설치유형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응답이 41.8%에 해당되었으며, 32.9%가 '자부담', 25.3%가 '자부담과 시군구지원으로 설치했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2-4〉CCTV 기기종류 및 설치 유형(어린이집)

단위: %

							그거 / /	
		기기	종류			설치유형		
구분	SD급	HD급 100만화 소	HD급 130만화 소	모름	자부담	자부담+시 군구지원	임대	
전체	27.8	5.1	12.7	54.4	32.9	25.3	41.8	
설립유형								
국공립	18.8	6.3	12.5	62.5	12.5	31.3	56.3	
법인	50.0	0.0	0.0	50.0	50.0	0.0	50.5	
민간	31.4	2.9	5.7	60.0	45.7	28.6	25.7	
가정	11.1	0.0	66.7	22.2	11.1	55.6	33.3	
직장	30.8	15.4	0.0	53.8	30.8	0.0	69.2	
$\chi^2$ (df)		33.12	(12)***			19.61(8)*		

		기기	종류			설치유형	
구분	SD급	HD급 100만화 소	HD급 130만화 소	모름	자부담	자부담+시 군구지원	임대
기관규모							
40인 이하	11.1	0.0	38.9	50.0	5.6	66.7	27.8
41~80인 이하	42.9	7.1	0.0	50.0	45.2	4.8	50.0
81인 이상	10.5	5.3	15.8	68.4	31.6	31.6	36.8
$\chi^2$ (df)		24.67	7(6)***			27.14(4)***	
보육경력							
1년 미만	28.6	0.0	0.0	71.4	28.6	0.0	71.4
1-3년 미만	17.6	11.8	17.6	52.9	23.5	23.5	52.9
3-6년 미만	29.7	2.7	13.5	54.1	24.3	37.8	37.8
6-9년 미만	33.3	5.6	11.1	50.0	61.1	11.1	27.8
$\chi^2$ (df)	4.88(9) 14.16(6)*						
*p<.05, *** p<.001							

한편 교사들에게 CCTV가 설치된 시기에 대해 질문한 결과, 유치원교사의 55.9%가 근무 이전이라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며, 어린이집교사의 34.2%가 모른 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2015년에 설치되었다는 응답도 14.0%에 해당되어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신규 설치된 기관임을 알 수 있었다.

〈표 Ⅲ-2-5〉 CCTV 설치시기(유치원)

구분	2000-2014년	2015년	근무이전이라 모름
전체	30.1	14.0	55.9
설립유형			
공립	10.7	35.7	53.6
사립	38.5	4.6	56.9
$\chi^2$ (df)		18.58(2)***	
유치원교사경력		, ,	
1년 미만	30.0	10.0	60.0
1-3년 미만	31.8	9.1	59.1
3-6년 미만	39.3	14.3	46.4
6년 이상	21.2	18.2	60.6
$\chi^2$ (df)		3.23(6)	

〈표 III-2-6〉 CCTV 설치시기(어린이집)

\_	2 0/ 0011 2/1		
			단위: %
구분	2000-2014년	2015년	근무이전이라 모름
전체	43.0	22.8	34.2
설립유형			
국공립	18.8	18.8	62.5
법인	50.0	0.0	50.0
민간	42.9	22.9	34.3
가정	0.0	77.8	22.2
직장	100.0	0.0	0.0
$\chi^2$ (df)		41.34(8)***	
기관규모			
40인 이하	5.6	66.7	27.8
41~80인 이하	54.8	4.8	40.5
81인 이상	52.6	21.1	26.3
$\chi^2$ (df)		29.90(4)***	
보육경력			
1년 미만	14.3	0.0	85.7
1-3년 미만	41.2	17.6	41.2
3-6년 미만	43.2	29.7	27.0
6-9년 미만	55.6	22.2	22.2
$\chi^2$ (df)		11.58(6)	

\*p<.05, \*\*\* p<.001

## 3) CCTV 설치기관의 이유 및 의견 공유 여부

각 기관의 교사들에게 CCTV 설치 시 이유와 의견 공유 여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유치원교사들은 설치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41.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안전사고 예방 21.5%, 교육청의 지원이 15.1% 순으로 나타났다. 설립유형별로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공립유치원은 교육청 지원으로 설치했다는 이유가 17.9%로 사립유치원의 13.8%에 비해 높은 반면, 사립유치원은 원장의 강한 설치 의지가 이유인 경우는 사립유치원이 12.3%로 공립유치원 보다 높았다.

설치 시 교사들과 의견 공유 여부에 대해 근무 이전이라 모르는 경우가 43.0%로 가장 많았으며, 공지와 의사표현의 기회가 있었다고 응답한 교사가 28.0%, 공지만 이루어졌다고 응답한 교사도 21.5%였다.

〈표 Ⅲ-2-7〉 CCTV 설치이유 및 설치 시 공지/의사표현 기회 제공 여부(유치원)

											딘	위: %(명)
				설치	이유			설		고사들이		
								- \	의사표	현기회	제공이	<sup>벽무</sup>
								공지·	-7 -1	공지·	H	
구분	교육 청의 지원	부모	원장	아저						의사		
	청의	들의	강한 설치	사고	기타	모름	계	표면 기회		표현 기회		계
	지원	요구	의지	예방				기외 없었	어짐	기외 있었		
								음	-1.0	음	ㅗㅁ	
 전체	15.1	4.3	8.6	21.5	8.6	41.9	100.0(93)	7.5	21.5	28.0	43.0	100.0(93)
설립유형							` ′					` '
공립	17.9	3.6	0.0	21.4	10.7	46.4	100.0(28)	7.1	35.7	7.1	50.0	100.0(28)
사립	13.8	4.6	12.3	21.5	7.7	40.0	100.0(65)	7.7	15.4	36.9	40.0	100.0(65)
$\chi^2$ (df)				4.11	.(5)					10.43(3	3)*	
기관규모												
40인 이하	50.0	0.0	0.0	0.0	50.0	0.0	100.0(2)	0.0	50.0	0.0	50.0	100.0(2)
41~80인이하	21.4	0.0	14.3	7.1	14.3	42.9	100.0(14)	14.3	35.7	14.3	35.7	100.0(14)
81인 이상	13.0	5.2	7.8	24.7	6.5	42.9	100.0(77)	6.5	18.2	31.2	44.2	100.0(77)
$\chi^2$ (df)				11.71	(10)					5.57(6	5)	
유치원교사경 력												
1년 미만	30.0	0.0	0.0	40.0	10.0	20.0	100.0(10)	10.0	0.0	60.0	30.0	100.0(10)
1-3년 미만	9.1	9.1	9.1	13.6	0.0	59.1	100.0(22)	4.5	18.2	27.3	50.0	100.0(22)
3-6년 미만	10.7	3.6	14.3	17.9	10.7	42.9	100.0(28)	10.7	21.4	25.0	42.9	100.0(28)
6년 이상	18.2	3.0	6.1	24.2	12.1	36.4	100.0(33)	6.1	30.3	21.2	42.4	100.0(33)
$\chi^2$ (df)				14.49	9(15)					9.21(9	9)	
*p<.05												

<표 Ⅲ-2-8>를 보면, 어린이집의 경우,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설치했다는 답변이 34.2%로 가장 많았으며, 원장의 설치의지로 이루어졌다는 답변도 27.1%에 해당되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설치 의무화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법인과 민간어린이집은 설치 의무화와 원장의 의지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CCTV 설치 시 의견공유여부에 대해 근무 이전이라 모른다는 응답이 역시 가장 많았으며, 공지만 이루어졌다고 응답한 교사가 29.1%, 공지와 의사표현의 기회가 있었다고 응답한 교사가 25.3%였다. 기관규모에 따라서는 별 차이가 없었으나, 보육경력이 6~9년 미만인 경우 공지와 의사표현 기회도 있었다고 응답한비율이 높았다.

〈표 III-2-8〉 CCTV 설치이유 및 설치 시 공지/의사표현 기회 제공 여부(어린이집)

\ <u>_</u>		. –	, - , ,	. ~			O,	1		-1 / 111		- (	L 0//DI)
									ات لـر	,1 -	7 )] E		<u> : %(명)</u>
				설:	치이유	<del>}</del>							공지 및
										나 표현		제궁	강 여부
구분	지자 체 지원	부모 들의 요구	원장 강한 설치 의지	설치 의무 화	안전 사고 예방 위해	기타	모름	계	공지 ・의 사 표현 기회 없었 음	공지 만 이루 어짐	공지 ·의 사 표현 기회 있었 음	근무 이전 이라 모름	계
 전체	8.9	5.1	24.1	34.2	7.6	15.2	5.1	100.0(79)	10.1	29.1	25.3	35.4	100.0(79)
설립유형													
국공립	6.3	0.0	18.8	50.0	0.0	6.3	18.8	100.0(16)	18.8	6.3	12.5	62.5	100.0(16)
법인	0.0							100.0(6)					
민간	5.7	5.7						100.0(35)					
가정	44.4		22.2			0.0		100.0(9)					
직장	:							100.0(13)	:				` '
$\chi^2$ (df)					60(24						19.74(		
기관규모					\	/						\	
	22.2	0.0	22.2	55.6	0.0	0.0	0.0	100.0(18)	5.6	44.4	27.8	22.2	100.0(18)
41~80인 이하													
81인 이상	:							100.0(19)	:				` '
$\chi^2$ (df)						<u>?</u> )					8.04(		
보육경력						./						\/	
1년 미만	0.0	0.0	42.9	57.1	0.0	0.0	0.0	100.0(7)	0.0	0.0	0.0	100.0	100.0(7)
	11.8							100.0(17)	1				` '
	10.8		24.3					100.0(37)					
6-9년 미만	:							100.0(18)	:				` '
$\chi^2$ (df)					.21(18						24.18(		
*													

\*p<.05, \*\* p<.01

한편 임용 시 CCTV 설치여부에 대한 안내를 받았는지 물어본 결과, CCTV가설치되었다고 응답한 유치원의 교사 중 59.1%는 안내를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나, 21.5%는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해 CCTV 촬영에 대한 교사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기관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립의 경우 CCTV에 대한 안내를 받았으나, 공립에서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많아 이는 앞서 살펴본 CCTV 설치 장소와도 관련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기관규모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41~80인 이하 유치원에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으며, 81인 이상 규모의 유치원에서는 안내를 받았다는 응답이 높았다.

〈표 III-2-9〉 CCTV 설치에 대한 안내 여부(유치원)

				단위: %(명)
구분	안내를 받음	안내를 받지 못함	임용 후 설치	계
전체	59.1	21.5	19.4	100.0(93)
설립유형				
공립	32.1	46.4	21.4	100.0(28)
사립	70.8	10.8	18.5	100.0(65)
$\chi^2$ (df)		16.60(	2)***	
기관규모				
40인 이하	50.0	50.0	0.0	100.0(2)
41~80인 이하	21.4	57.1	21.4	100.0(14)
81인 이상	66.2	14.3	19.5	100.0(77)
$\chi^2$ (df)		15.36(	(4)**	
유치원교사경력				
1년 미만	90.0	10.0	0.0	100.0(10)
1-3년 미만	63.6	22.7	13.6	100.0(22)
3-6년 미만	50.0	17.9	32.1	100.0(28)
6년 이상	54.5	27.3	18.2	100.0(33)
$\chi^2$ (df)		8.21	(6)	
**p<.01, ***** p<.001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조사한 결과 임용 시 CCTV 설치여부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는 교사가 60.8%로 가장 많았다. 국공립, 법인, 민간, 직장 어린이집 모두 임용 시 CCTV 설치에 대해 안내하였으나, 가정어린이집은 임용 후 설치했다는 응답이 많아 최근에 설치된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2-10〉 CCTV 설치에 대한 안내 여부(어린이집)

단위: %(명)

				<u> </u>
구분	안내를 받음	안내를 받지 못함	임용 후 설치	계
전체	60.8	13.9	25.3	100.0(79)
설립유형				
국공립	<i>7</i> 5.0	18.8	6.3	100.0(16)
법인	50.0	16.7	33.3	100.0(6)
민간	54.3	17.1	28.6	100.0(35)
가정	33.3	0.0	66.7	100.0(9)
직장	84.6	7.7	7.7	100.0(13)

		<del></del>		
구분	안내를 받음	안내를 받지 못함	임용 후 설치	계
전체	60.8	13.9	25.3	100.0(79)
$\chi^2$ (df)		15.67		
기관규모				
40인 이하	33.3	16.7	50.0	100.0(18)
41~80인 이하	71.4	11.9	16.7	100.042)
81인 이상	63.2	15.5	21.1	100.0(19)
$\chi^2$ (df)		9.01		
보육경력				
1년 미만	57.1	42.9	0.0	100.0(7)
1-3년 미만	64.7	17.6	17.6	100.0(17)
3-6년 미만	64.9	13.5	21.6	100.0(37)
6-9년 미만	50.0	0.0	50.0	100.0(18)
$\chi^2$ (df)		14.09	0(6)	
*p<.05				

## 4) 기관의 CCTV 미설치 이유 및 향후 설치 계획

CCTV를 설치하지 않은 기관의 교사에게 미설치 이유와 향후 설치 계획을 조사한 결과, 유치원 교사 14명 중 50.0%는 원장의 반대를 가장 큰 이유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설치 및 운영비 부담을 꼽았다. 향후 설치 계획에 대해 57.1%가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며, 28.6%가 아니라고 하였다.

〈표 III-2-11〉 CCTV 설치하지 않는 주된 이유 및 향후 설치 계획(유치원)

								Ę	산위: %(명)
	C	CTV 실	설치하지	않는	이유	향후 CCTV 설치계획			
구분	교직원 반대	원장 강한 반대 의지	부모들 반대	설치 운영 비용 부담	계	예	아니오	모름	계
전체	7.1	50.0	7.1	35.7	100.0(14)	14.3	28.6	57.1	100.0(14)
설립유형									
사립	7.1	50.0	7.1	35.7	100.0(14)	14.3	28.6	57.1	100.0(14)
기관규모									
40인 이하	0.0	100.0	0.0	0.0	100.0(1)	0.0	0.0	100.0	100.0(1)
41~80인 이하	0.0	75.0	0.0	25.0	100.0(4)	25.0	25.0	50.0	100.0(4)
81인 이상	11.1	33.3	11.1	44.4	100.0(9)	11.1	33.3	55.6	100.0(9)
$\chi^2$ (df)			3.29(6)	)			1.26	6(4)	

CCTV를 미설치하였다고 응답한 어린이집의 교사 28명 중 46.4%가 설치 및 운영비 부담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35.7%는 교직원의 반대 때문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향후 CCTV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92.9%가 설치할 것이라고 응답해 CCTV 설치 의무화로 인해 CCTV 설치를 계획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2-12〉CCTV 설치하지 않는 주된 이유 및 향후 설치계획(어린이집)

							Ĺ	<u> </u>
	(	CCTV	설치하지	않는 ㅇ	]유	향후	CCTV 설치	치계획
구분	교직원 반대	원장 강한 반대 의지	부모들 의 반대	설치 및 운영 비용 부담	계	예	모름	<b>계</b>
전체	35.7	10.7	7.1	46.4	100.0(28)	92.9	<b>7.1</b>	100.0(28)
설립유형								
국공립	66.7	0.0	33.3	0.0	100.0(3)	100.0	0.0	100.0(3)
민간	11.1	22.2	0.0	66.7	100.0(9)	88.9	11.1	100.0(9)
가정	43.8	6.3	6.3	43.8	100.0(16)	93.8	6.3	100.0(16)
$\chi^2$ (df)			10.10(6)	)			0.46(2)	
기관규모								
40인 이하	34.8	8.7	8.7	47.8	100.0(23)	91.3	8.7	100.0(23)
41~80인 이하	33.3	33.3	0.0	33.3	100.0(3)	100.0	0.0	100.0(3)
81인 이상	0.0	0.0	0.0	50.0	100.0(2)	100.0	0.0	100.0(2)
$\chi^2$ (df)			2.42(6)				0.47(2)	

## 나.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 설치에 대한 요구

#### 1) CCTV 설치관리 규정에 대한 인지 및 만족도

한편 최근 제정된 CCTV 관련 법안에 대한 인지 및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유치원 교사들 중 55.1%가 영유아보육법의 CCTV 설치·관리에 대해 알고 있다 고 응답하였으며, 영유아보육법의 만족도는 4점 척도에 평균 2.34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공립유치원(1.94점)보다는 사립유치원(2.50점)에서 만족도 평균이 약 간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기관규모별로는 40인 이하, 41-80인 이하 규모에서는 CCTV 관련 법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60% 이상인 반면, 81인 이하 규모에서는 52.3%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유치원 교사 경력별로는 6년 이상 경력의 교사의 경우 관련 법안에 대해 알고 있는 비율이 71.8%로 6년 미만 교사들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Ⅲ-2-13〉CCTV 설치·관리에 대한 영유아보육법 인지여부 및 만족도(유치원)

단위: %(명)

						<u></u> 난	위: %(명)
	CCTV 4	설치·관리에	대한 영유여	<b>아보육법</b>	CCTV 설치·관리에 대한		
구분		인지	]여부		영유	아 보육법 민	족도
	예	아니오	계	$\chi^2$ (df)	평균	표준편차	F/t
전체	55.1	44.9	100.0(107)	10 \ //	2.34	0.71	
설립유형							
공립	60.7	39.3	100.0(28)	0.40(1)	1.94	0.75	-8.47**
사립	53.2	46.8	100.0(79)	0.48(1)	2.50	0.63	-0.4/
기관규모							
40인 이하	66.7	33.3	100.0(3)		2.50	0.71	
41~80인 이하	66.7	33.3	100.0(18)	1.40(2)	2.08	0.79	0.10
81인 이상	52.3	47.7	100.0(86)		2.40	0.69	
담당 학급 연령							
만3세반	45.7	54.3	100.0(35)		2.06	0.77	
만4세반	68.8	31.3	100.0(32)		2.36	0.73	
만5세반	43.5	56.5	100.0(23)	5.82(4)	2.40	0.52	1.17
혼합연령	57.1	42.9	100.0(7)		2.75	0.50	
해당없음	70.0	30.0	100.0(10)		2.57	0.79	
유치원교사경력							
1년 미만	45.5	54.5	100.0(11)		2.40	0.55	
1-3년 미만	41.7	58.3	100.0(24)	714(2)	2.70	0.67	1 10
3-6년 미만	48.5	51.5	100.0(33)	7.14(3)	2.31	0.70	1.18
6년 이상	71.8	28.2	100.0(39)		2.21	0.74	
44							

<sup>\*\*</sup> p<.01

반면, 어린이집 교사들은 76.6%가 영유아보육법의 CCTV 설치·관리에 대한 내용을 안다고 응답하였으며, 모른다는 응답은 23.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경향은 설립유형, 기관규모, 담당학급 연령, 보육경력에 관계없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 4점 만점에 2.23의 만족도를 보였다. 설립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2.07점)비해 직장어린이집 교사(2.73점)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만족도는 기관규모, 담당 학급 연령, 보육경력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Ⅲ-2-14〉CCTV 설치·관리에 대한 영유아 보육법 인지여부 및 만족도(어린이집) 단위: %(명)

	CCTV	/ 설치·관	리에 대한 여	경유아	CCTV	설치·관리어	대한
구분		보육법	인지여부		영유	아 보육법 만	족도
	안다	모른다	계	$\chi^2$ (df)	평균	표준편차	F
전체	76.6	23.4	100.0(107)		2.23	0.61	
설립유형							
국공립	78.9	21.1	100.0(19)		2.07 <sup>a</sup>	0.80	
법인	50.0	50.0	100.0(6)		2.33	0.58	
민간	<i>7</i> 5.0	25.0	100.0(44)	3.12(4)	2.12	0.55	2.53*
가정	80.0	20.0	100.0(25)		2.25	0.55	
직장	84.6	15.4	100.0(13)		2.73 <sup>b</sup>	0.47	
기관규모							
40인 이하	82.9	17.1	100.0(41)		2.18	0.58	
41~80인 이하	73.3	26.7	100.0(45)	1.50(2)	2.30	0.64	0.37
81인 이상	71.4	28.6	100.0(21)		2.20	0.68	
담당 학급 연령							
0세반	70.0	30.0	100.0(10)		2.14	0.69	
1세반	89.3	10.7	100.0(28)		2.24	0.66	
2세반	69.7	30.3	100.0(33)		2.26	0.62	
3세반	78.6	21.4	100.0(14)	4.94(6)	2.27	0.47	0.49
4세반	60.0	40.0	100.0(5)	, ,	1.67	0.58	
5세반	66.7	33.3	100.0(6)		2.25	0.96	
혼합연령	81.8	18.2	100.0(11)		2.33	0.50	
보육경력							
1년 미만	50.0	50.0	100.0(8)		2.00	0.82	
1-3년 미만	79.2	20.8	100.0(24)	4.00(0)	2.26	0.73	0.20
3-6년 미만	75.5	24.5	100.0(49)	4.22(3)	2.27	0.61	0.30
6년 이상	84.6	15.4	100.0(26)		2.18	0.50	

a, b 집단간 차이가 있음.

한편 CCTV 설치에 대한 영유아보육법의 각 규정에 대한 적절성 정도를 4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유치원 교사들은 영상물 보관 기관이 60일 이상이라는 항목이 적절하다는 평가가 2.6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어린이집 교사들은 CCTV 미설치 시 부모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항목이 적절하다는 평가가 2.54점으로 가장 높았다. 유치원 교사들이 어린이집 교사들보다 CCTV 설치에 대한 영유아보육법 항목의 적절성 평균이 다소 높아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으며, 대다수의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sup>\*</sup> p<.05

〈표 III-2-15〉 CCTV 설치에 관한 영유아보육법 적절도(유치원/어린이집)

					<u>단위: 점</u>
 구분	유	치원	어린		
—————————————————————————————————————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
CCTV 설치 의무화(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2.39	0.72	2.08	0.77	3.03**
교실/보육실에 CCTV 설치	2.34	0.78	2.27	0.78	0.61
영상기록물 보관 기간이 60일 이 상	2.63	0.67	2.19	0.79	4.39***
CCTV 미설치 시 부모 전원의 동의 필요	2.55	0.78	2.54	0.87	0.08
보호자의 영상정보 열람 요청가능		0.68	2.20	0.81	2.94**

<sup>\*\*</sup> p<.01, \*\*\* p<.001

## 2) 바람직한 CCTV 설치를 위한 조건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유치원 교사들의 79.4%가 '교직원의 동의'를 요구하였으며, 72.9%는 '부모와의 CCTV 열람 원칙합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CCTV 관리와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있었다. 어린이집 교사들도 77.6%가 '교직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71.%는 '부모와의 CCTV 열람 원칙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표 III-2-16〉 CCTV 설치 시 필요한 조건 1+2순위(유치원/어린이집)

							단위: %
		교직원 동의	CCTV관리 운영체계	CCTV 설치 지원비	부모와 CCTV 열람 원칙협의	CCTV 업무 담당 인력 배치	기타
	전체	79.4	21.5	12.1	72.9	12.1	1.9
유치원	설립유형						
(n=107)	공립	71.4	32.1	21.4	46.4	25.0	3.6
	사립	82.3	17.7	8.9	82.3	7.6	1.3
	전체	77.6	25.2	16.8	71.0	7.5	1.9
	설립유형						
*]=]*]=]	국공립	84.2	36.8	0.0	63.2	10.5	5.3
어린이집 (n=107)	법인	100.0	0.0	33.3	66.7	0.0	0.0
(11–107)	민간	81.8	20.5	22.7	68.2	6.8	0.0
	가정	68.0	28.0	20.0	68.0	12.0	4.0
	직장	61.5	30.8	7.7	100.0	0.0	0.0

## 3) CCTV 설치에 대한 의견

심층면담 중 CCTV 설치에 대한 의견은 총 23회 언급되었으며, 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 학부모에 의해 언급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표 Ⅲ-2-17>과 같다.

범주	빈도	비율(%)
연령에 따라 보육설치필요	1	4.3
설치 시 교사인권과 보호도 함께	5	21.7
매뉴얼 등을 통해 상세한 이해 필요	4	17.4
교사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	2	8.7
보육실설치 아닌 안전과 보안개념으로	1	4.3
비용지원필요	2	8.7
현장에 맞는 가이드라인 필요	8	34.8
	23	100

〈표 Ⅲ-2-17〉 CCTV 설치에 대한 의견

#### (1) 현장에 맞는 가이드라인 필요

구성원들은 현재 영상정보처리기기 가이드라인이 설치되었지만, 현장에 적합 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기존에 기업에서 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가져다 용어 몇 개 바꿔서 어린이집 가이드라인으로 바꿨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게 현장하고 그런 부분에서 맞 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여기서 운영담당자, 모니터링 전담자 용어를 썼다는 자 체가 복지부에서 대체 현장을 알고 가이드라인을 만든 건지(민간어린이집원장, 2015. 10. 19).

CCTV에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만큼 현장에 입장을 고려해서 좀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한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했으면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민간어린이집원장, 2015. 10. 19).

# (2) 설치 시 인권과 보호도 함께

CCTV 설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인권과 더불어 교사인권과 교사 보호를 위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며, CCTV와 관련된 문제가 불거졌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CCTV 설치를 전면적으로 내세울 때 아동인권 뿐만 아니라 교사 인권, 교사 보호 차원에서 같이 가줘야(국공립어린이집 학부모. 2015. 10. 23).

교사들 편에 객관적인 부분이 있으면,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힘들어요(민간어린이집원감. 2015. 11. 3).

#### (3) 매뉴얼 등을 통해 상세한 이해 필요

더 구체적으로 매뉴얼을 제시하여 CCTV 설치와 운영 시 고려될 수 있는 개 인정보노출 등에 대해 기관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 장도 있었다.

중요한 정책을 하고 중요한 기본적인 이런 것들을 고민한다고 하시면 양쪽 측면을 다 고려하셔서 하나하나 매뉴얼을 만들어주는 게 일차적인 거예요(사립유치원원장, 2015. 11. 5).

CCTV에, 영상정보에 대한 개인의 정보 노출에 대한 거가 굉장히 중요시되니까 거기에 대한 지식도 가져야 될 것 같아요(사립유치원원장, 2015. 11. 5).

# 3. 유치원·어린이집의 CCTV 운영 현황 및 요구

## 가. CCTV 운영 현황

#### 1) CCTV 운영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CCTV가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CCTV가 설치된 곳에 안내판 게시 여부'에서 유치원은 '아니오'의 응답이, 어린이집은 '예'의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모른다는 응답도 있어 교사들이 안내판에 대해 의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CCTV관리자의 정기적 관리여부'에 대해서는 유치원은 '예'라는 응답과 '모른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어린이집은 '예'라는 응답이 많았다. 셋째,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관련 소프트웨어 설치 여부'에 대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모른다는 응답이 과반수이상이었다. 네 번째, '유치원/어린이집에 CCTV 운영 관련 규정 유무'에 대한 질문에서

유치원은 '모른다'는 응답이 46.2%로 많았으며, '규정이 있다'는 응답은 31.2%였 다. 반면 어린이집은 '규정이 있다'는 응답이 59.5%로 가장 많았으며 '모른다'는 응답은 34.2%로 어린이집 교사들이 CCTV 설치의 의무화로 규정의 유무에 대해 더 의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CCTV를 통한 녹화물 관리기간의 준 수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유치원은 55.9%, 어린이집은 83.5%가 준수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학부모에게 영상자료 열람 규칙의 공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유치원은 47.3%가 '모른다'고 응답하였고, 34.4%가 '공지하지 않는 다'고 응답한 반면, 어린이집은 60.8%가 '공지한다'고 대답해 기관에 따라 부모 의 열람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표 Ⅲ-3-1〉 유치원/어린이집 CCTV 운영 현황

단위: %(명)

										<u> 1月・/((3)</u>
7.8			유치	원				어린이	기집	
구분	예	아니 오	모름	계	$\chi^2$ (df)	예	아니 오	모름	계	$\chi^2$ (df)
CCIV가 설치된 곳 에 안내판이 게시되 어있다	38.7			100.0 (93)	7.98(2)*	49.4	40.5	10.1	100.0 (79)	26.20(8)***
CCIV관리자가 정 기적으로 관리 한다	37.6	23.7	38.7	100.0 (93)	4.64(2)	51.9	7.6	31.3	100.0 (79)	2.87(8)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관련 소프트 웨어가 설치되어있다					9.58(2)**	30.4	19.0	50.6	100.0 (79)	13.52(8)
유치원/어린이집에 CCIV 운영 관련 규 정이 있다	31.2	22.6	46.2	100.0 (93)	11.09(2)**	59.5	6.3	34.2	100.0 (79)	24.42(8)**
CCIV를 통한 녹화 물 관리기간이 준수 되고 있다		7.5	36.6	100.0 (93)	4.02(2)	83.5	3.8	12.7	100.0 (79)	20.92(8)**
학부모에게 영상자 료를 열람하는 규칙 이 공지되었다	18.3	34.4	47.3	100.0 (93)	2.90(2)	60.8	19.0	20.3	100.0 (79)	16.92(8)*

\*p<.05, \*\* p<.01, \*\*\* p<.001

앞에서 '예'라고 응답한 경우에만 기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CCTV 관 리자의 정기적 관리', 'CCTV운영관련 규정마련', 'CCTV녹화물 관리기간 준수', '학부모에게 영상자료 열람 규칙 공지'에서 유치원에 비해 어린이집이 더 높은 비 율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어린이집이 CCTV 설치 의무화로 인해 아래와 같은 CCTV 운영방안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 III-3-2〉 유치원/어린이집 CCTV 운영 현황(예라고 응답한 경우만)

					-		단위: %
			CCTV	개인정보		CCTV	학부모
	7 11	CCTV	관리자	유출 막는	CCTV	녹화물	영상자료
	구분	안내판 설치	정기적	소프트웨	운영 관련 규정 마련	관리기간	열람 규칙
		E/1	관리	어 활용	110 112	준수	공지
	유치원	38.7	37.6	22.6	31.2	55.9	18.3
	어린이집	49.4	51.9	30.4	59.5	83.5	60.8
	$\chi^2$ (df)	3.13(2)	8.77(2)*	2.05(2)	16.74(2)***	15.31(2)***	33.08(2)***
*							

\**p*<.05, \*\*\* *p*<.001

## 2) CCTV 열람 빈도 및 이유

앞서 CCTV 운영에 대한 기관의 차이는 CCTV 녹화물에 대한 부모의 접근성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부모들이 CCTV 녹화물을 열람하는 빈도와 이유를 조사하였다. 유치원에서는 부모들이 CCTV를 열람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1년에 1회 정도가 12.9%에 불과했다. 열람 이유로는 '유아의 상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37.6%로 가장 많았으며, '열람 요청을한 경우가 없다'는 응답도 많았다. 공립유치원은 '열람 요청을한 경우가 없다'는 응답도 많았다. 공립유치원은 '열람 요청을한 경우가 없다'는 응답이, 사립유치원은 '유아의 상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많아 기관 유형에 따라 열람 이유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3-3〉 유치원 부모들의 CCTV 녹화물 열람 빈도 및 열람 이유

											단위	: %(명)
		1	열람 1	빈도		열람이유						
구분	월 1회 정도	6개 월 1회 정도	1년 1회 정도	거의 없음	계	유아 상처 원인 파악	유아 분실 물 확인	다른 유아 와 갈등 파악	교사 체벌 의심	열람 요청 없었 음	기타	계
전체	3.2	3.2	12.9	80.6	100.0(93)	37.6	7.5	14.0	1.1	22.6	17.2	100.0(93)
설립유형												
공립	3.6	0.0	0.0	96.4	100.0(28)	7.1	17.9	0.0	0.0	50.0	25.0	100.0(28)
사립	3.1	4.6	18.5	73.8	100.0(65)	50.8	3.1	20.0	1.5	10.8	13.8	100.0(65)
$\chi^2$ (df)			7.71(	(3)					3.36(5	***		
기관규모												
40인 이하	0.0	0.0	0.0	100.0	100.0(2)	50.0	0.0	0.0	0.0	50.0	0.0	100.0(2)
41~80인 이하	0.0	0.0	0.0	100.0	100.0(14)	35.7	7.1	7.1	0.0	28.6	21.4	100.0(14)
81인 이상	3.9	3.9	15.6	76.6	100.0(77)	37.7	7.8	15.6	1.3	20.8	16.9	100.0(77)
$\chi^2$ (df)		4.64(6)							2.85(1	.0)		

		1	열람 !	킨도		열람이유						
구분	월 1회 정도	6개 월 1회 정도	1년 1회 정도	거의 없음	계	유아 상처 원인 파악	유아 분실 물 확인	다른 유아 와 갈등 파악	교사 체벌 의심	열람 요청 없었 음	기타	계
전체	3.2	3.2	12.9	80.6	100.0(93)	37.6	7.5	14.0	1.1	22.6	17.2	100.0(93)
담당 학급 연령												
만3세반	3.3	3.3	13.3	80.0	100.0(30)	36.7	6.7	16.7	0.0	16.7	23.3	100.0(30)
만4세반	3.8	7.7	7.7	80.8	100.0(26)	38.5	7.7	77	0.0	23.1	23.1	100.0(26)
만5세반	0.0	0.0	0.0	85.7	100.0(21)	42.9	9.5	9.5	4.8	28.6	4.8	100.0(21)
혼합연령	14.3	0.0	0.0	85.7	100.0(7)	42.9	0.0	0.0	0.0	42.9	14.3	100.0(7)
해당없음	0.0	0.0	33.3	66.7	100.0(9)	22.2	11.1	44.4	0.0	11.1	11.1	100.0(9)
$\chi^2$ (df)			11.16(	12)		19.07(20)						
*** p<.001												

어린이집 교사들도 부모들이 CCTV 녹화물 열람 요청은 거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나, 6개월에 1회 정도가 11.4%에 해당되었다. 열람이유에 있어서 는 '유아의 상처원인 파악'이 44.3%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 영유아와의 갈등상 황 파악도 29.1%로 나타났다.

〈표 Ⅲ-3-4〉어린이집 부모들의 CCTV 녹화물 열람 빈도 및 열람 이유

단위:%(명)

												L 111/0(8)
			열람	빈도					열람	이유		
구분	월 1회 정 도	6개 월 1회 정 도	1년 1회 정 도	거 의 없음	계	유아 상처 원인 파악	분실 물	다른 유아 와 갈등 파악	교사 체벌 의심	열람 요청 없었 음	기타	계
전체	6.3	11.4	5.1	77.2	100.0(79)	44.3	1.3	29.1	3.8	17.7	3.8	100.0(79)
설립유형												
국공립	18.8	6.3	0.0	75.0	100.0(16)	62.5	0.0	0.0	12.5	25.0	0.0	100.0(16)
법인	0.0	0.0	0.0	100.0	100.0(6)	16.7	16.7	0.0	0.0	66.7	0.0	100.0(6)
민간	2.9	8.6	2.9	85.7	100.0(35)	45.7	0.0	40.0	2.9	8.6	2.9	100.0(35)
가정	0.0	0.0	0.0	100.0	100.0(9)	22.2	0.0	22.2	0.0	33.3	22.2	100.0(9)
직장	7.7	38.5	23.1	30.8	100.0(13)	46.2	0.0	53.8	0.0	0.0	0.0	100.0(13)
$\chi^2$ (df)			31.46	$(12)^{**}$					53.70	(20)***		
기관규모												
40인 이하	0.0	0.0	0.0	100.0	100.0(18)	22.2	0.0	33.3	5.6	22.2	16.7	100.0(18)
41~80인 이하	4.8	16.7	9.5	69.0	100.0(42)	47.6	2.4	23.8	4.8	21.4	0.0	100.0(42)
81인 이상	15.8	10.5	0.0	73.7	100.0(19)	57.9	0.0	36.8	0.0	5.3	0.0	100.0(19)
$\chi^2$ (df)	12.21(6)					18.00(10)						

			열람	빈도		열람이유						
구분	월 1회 정 도	6개 월 1회 정 도	1년 1회 정 도	거 의 없 음	계	유아 상처 원인 파악	유아 분실 물 확인	다른 유아 와 갈등 파악	교사 체벌 의심	열람 요청 없었 음	기타	계
전체	6.3	11.4	5.1	77.2	100.0(79)	44.3	1.3	29.1	3.8	17.7	3.8	100.0(79)
담당 학급 연령												
0세반	0.0	0.0	0.0	100.0	100.0(4)	50.0	0.0	50.0	0.0	0.0	0.0	100.0(4)
1세반	5.0	20.0	0.0	75.0	100.0(20)	40.0	0.0	25.0	0.0	30.0	5.0	100.0(20)
2세반	4.8	9.5	9.5	76.2	100.0(21)	61.9	4.8	14.3	0.0	14.3	4.8	100.0(21)
3세반	14.3	7.1	0.0	78.6	100.0(14)	50.0	0.0	28.6	7.1	14.3	0.0	100.0(14)
4세반	0.0	0.0	25.0	75.0	100.0(4)	25.0	0.0	50.0	25.0	0.0	0.0	100.0(4)
5세반	16.7	16.7	0.0	66.7	100.0(6)	16.7	0.0	50.0	16.7	16.7	0.0	100.0(6)
혼합연령	0.0	10.0	10.0	80.0	100.0(10)	30.0	0.0	40.0	0.0	20.0	10.0	100.0(10)
$\chi^2$ (df)			13.41	l(16)					25.93	3(30)		

<sup>\*\*</sup>p<.01, \*\*\* p<.001

## 3) 녹화물 열람 시 타 유아들의 개인정보 보호 방법

부모들에게 CCTV 녹화물의 열람을 제공함에 있어서 타 유아들의 프라이버시 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조사한 결과, 유치원 교사들은 '열람 요청이 없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열람 요청을 할 경우 '별다른 동의 절차 없이 다른 유아들과함께 열람 제공'한다는 응답도 21.5%에 해당되었으며, 특히 사립유치원에서 그응답이 높았다.

그리고 1년 미만 경력 교사들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많은 반면, 6년 이상 경력 교사들은 '열람 요청이 없다'고 응답해 교사의 경력에 따라 유아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열람 제공시 대처하는 방법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경력교사들에게도 자격연수 및 재교육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할 수 있다.

〈표 Ⅲ-3-5〉 녹화물 열람 시 타 유아들의 개인정보 보호 방법(유치원)

						(	단위: %(명)
	담당교사 가 미리 해당 유아만 모자이크 처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소프트웨 어를 사용	사전에 개인영상 정보 열람 동의서 받아 모든유아 를 보여줌	별다른 동의 절차 없이 다른 유아들과 함께 열람 제공	열람 요청없었 음	기타	계
전체	2.2	8.6	11.8	21.5	32.3	23.7	100.0(93)
설립유형							
공립	0.0	3.6	14.3	0.0	57.1	25.0	100.0(28)
사립	3.1	10.8	10.8	30.8	21.5	23.1	100.0(65)
$\chi^2$ (df)				18.58(5)**			
기관규모							
40인 이하	50.0	0.0	50.0	0.0	0.0	0.0	100.0(2)
41~80인 이하	7.1	0.0	14.3	14.3	42.9	21.4	100.0(14)
81인 이상	0.0	10.4	10.4	23.4	31.2	24.7	100.0(77)
$\chi^2$ (df)				31.50(10)***			
담당 학급 연령							
만3세반	0.0	13.3	20.0	20.0	36.7	10.0	100.0(30)
만4세반	3.8	7.7	3.8	19.2	30.8	34.6	100.0(26)
만5세반	0.0	4.8	14.3	23.8	23.8	33.3	100.0(21)
혼합연령	0.0	0.0	0.0	14.3	57.1	28.6	100.0(7)
해당없음	11.1	11.1	11.1	33.3	22.2	11.1	100.0(9)
$\chi^2$ (df)				61.20(20)			
유치원교사경력							
1년 미만	0.0	40.0	0.0	30.0	10.0	20.0	100.0(10)
1-3년 미만	0.0	4.5	18.2	13.6	22.7	40.9	100.0(22)
3-6년 미만	3.6	3.6	10.7	28.6	28.6	25.0	100.0(28)
6년 이상	3.0	6.1	12.1	18.2	48.5	12.1	100.0(33)
$\chi^2$ (df)	***			27.45(15)*			

\*p<.05, \*\* p<.01, \*\*\* p<.001

한편 어린이집 교사들은 '사전에 개인영상정보 열람 동의서 받아 모든 영유 아를 보여준다'는 응답이 34.2%로 많았으며, '별다른 동의 절차 없이 다른 영유 아들과 함께 열람 제공한다'는 응답도 29.1%로 많았다. 국공립과 직장어린이집 이 '사전 열람 동의서'를 받아 CCTV 녹화물 열람을 허용하는 반면, 민간어린이 집은 '별다른 동의 절차 없이 열람 제공'하고 있었다.

〈표 Ⅲ-3-6〉 녹화물 열람 시 타유아들의 개인정보 보호방법(어린이집)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소프트웨 어를 사용	사전개인 영상정보 열람 동의서 받아 모든 영류 보여줌	별다른 동절없다우아 당유하면 영과 함림 제공	열람 요청 없음	기타	모름	단위:%(\) 계
전체	8.9	34.2	29.1	12.7	8.9	6.3	100.0(79
 설립유형							
국공립	6.3	43.8	25.0	0.0	18.8	6.3	100.0(16
법인	0.0	0.0	0.0	66.7	0.0	33.3	100.0(6)
민간	14.3	20.0	45.7	8.6	5.7	5.7	100.0(35
가정	0.0	11.1	33.3	33.3	22.2	0.0	100.0(9)
직장	7.7	92.3	0.0	0.0	0.0	0.0	100.0(13)
$\chi^2$ (df)				65.40(20)	***		
기관규모							
40인 이하	11.1	22.2	27.8	27.8	11.1	0.0	100.0(18
41~80인 이하	4.8	45.2	21.4	11.9	9.5	7.1	100.0(42
81인 이상	15.8	21.1	47.4	0.0	5.3	10.5	100.0(19
$\chi^2$ (df)				15.97(10	)		
담당 학급 연령							
0세반	25.0	25.0	50.0	0.0	0.0	0.0	100.0(4)
1세반	10.0	40.0	30.0	10.0	10.0	0.0	100.0(20
2세반	4.8	38.1	28.6	9.5	14.3	4.8	100.0(21)
3세반	7.1	28.6	28.6	14.3	7.1	14.3	100.0(14
4세반	25.0	0.0	50.0	0.0	0.0	25.0	100.0(4)
5세반	0.0	50.0	33.3	16.7	0.0	0.0	100.0(6)
혼합연령	10.0	30.0	10.0	30.0	10.0	10.0	100.0(10
$\chi^2$ (df)				19.84(30	)		
보육경력							
1년 미만	0.0	42.9	42.9	0.0	0.0	14.3	100.0(7)
1-3년 미만	5.9	41.2	29.4	11.8	5.9	5.9	100.0(17
3-6년 미만	13.5	35.1	29.7	13.5	5.4	2.7	100.0(37
6년 이상	5.6	22.2	22.2	16.7	22.2	11.1	100.0(18
$\chi^2$ (df) $p$ <.001				12.02(15	<u>)</u>		

## 나. CCTV 운영에 대한 요구

## 1) CCTV 운영 시 고려할 점

CCTV가 바람직하게 운영되기 위해 바라는 점에 대해 유치원와 어린이집 교사들은 1순위로 '교사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한 기록물 관리', '교사 신뢰성 회복 방안 마련', '교사 보호 및 자기계발 활용 방안 마련', '보호자 열람 시부가적인 업무 담당 인력 배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III-3-7〉 CCTV 관리 및 운영 시 고려점 1+2순위(유치원/어린이집)

						단위: %
		교사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한 기록물관리	보호자 열람시 부가적인 업무 담당 인력 배치	교사 교원 보호 자기계발 활용 방안 마련	교사 신뢰성 회복 방안 마련	기타
	전체	68.2	36.4	45.8	46.7	2.8
유치원	설립유형					
(n=107)	공립	50.0	39.3	57.1	42.9	10.7
	사립	74.7	35.4	41.8	48.1	0.0
	전체	67.3	22.4	50.5	57.0	0.9
	설립유형					
ادامادادا	국공립	78.9	36.8	63.2	15.8	0.0
어린이집 (n=107)	법인	66.7	33.3	66.7	33.3	0.0
(11–107)	민간	65.9	15.9	43.2	72.7	0.0
	가정	72.0	20.0	52.0	52.0	4.0
	직장	46.2	23.1	46.2	84.6	0.0

마지막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CCTV 관리 및 운영 시 반영되어야 하는 규정들에 대해 4점 척도로 평정하게 하였다. 그 결과 유치원 교사들은 CCTV 열람 후 부모 비밀 준수 위반에 대한 규제 지침 마련이 반영되길 바라는 의견이 3.4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부모에게 CCTV 열람 신청 및 사후처리에 대한 규칙도 포함되길 원하는 의견이 3.37점이었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CCTV 열람 후 부모 비밀 준수 위반에 대한 규제 지침 마련, 부모에게 CCTV 열람 신청 및 사후처리에 대한 규칙도 포함, 설치 시 부모와 교직원의 전원 동의가 필요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모두 3.41점으로 가장 높았다. 유치원 교사들과 어린이집 교사들 간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학부모 대상 제재 지침이 마련되길 가장 원하는 점에서는 비슷하였다.

〈표 Ⅲ-3-8〉 CCTV 관리 및 운영 시 반영되길 바라는 점

					<u>단위: 점</u>
 구분	유치원		어린이집		t
T 世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
영위 보위법 기준 준한(영위)보위함에는 CCIV					
의무설치(과태로부과), 보육내 설치, 60일 이상 보관, 부모	2.54	0.63	2.39	0.72	1.47
쟨용의시CTV 마회가능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준한다	3.08	0.53	3.09	0.72	-0.12
설치 장소를 교실 밖으로 제한한다	2.84	0.74	2.70	0.75	1.32
설치기기에서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는 제한한다	3.12	0.63	3.18	0.72	-0.76
설치 시 부모와 교직원의 전원 동의 필요함 제시한다	3.34	0.66	3.41	0.55	-0.88
CCIV 관리 부실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제안한다.	2.89	0.63	2.83	0.77	0.63
부모에게 CCIV 열람 신청 및 사후처리에 대한					
규칙도 포함한다(예: 알게 된 영상정보에 대한 비	3.37	0.54	3.41	0.57	-0.47
밀 유지나 목적 외에 사용 등)					
CCIV 설치 및 운영을 구성원의 자율적 의사소통	3.05	0.54	3.01	0.73	0.31
과정에 맡김을 명시한다	5.05	0.54	5.01	0.73	0.31
CCTV 열람 후 부모 비밀 준수 위반에 대한	3.40	0.49	3.41	0.55	0.03
규제 지침 마련	J.40	0.49	5.41	0.55	0.03

# 2) CCTV 열람에 대한 의견

심충면담 중 CCTV 열람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은 총 30회 언급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Ⅲ-3-9〉 CCTV 열람에 대한 구성원의 의견

ນໄລ	11) <del>-</del>	21 O (0)
범주	빈도	비율(%)
제한 노출 필요	3	10
열람 시 전체 공지 필요	2	6.7
문제 있는 부분에 요청 시 열람 등 제약 필요	12	40
열람 후 면담 필요	1	3.3
열람 전 상담 필요	2	6.7
교사와 기관의 눈치 보게 됨	2	6.7
상시 열람은 부정적	3	10
열람 후 긍정적 교사행동변화	1	3.3
열람도 교사의 신뢰가 먼저	1	3.3
열람 전 동의서 필요	1	3.3
부모가 원하면 열람가능	1	3.3
외부발설 시 제약 필요	1	3.3
계	30	100

#### 가) 문제 있는 부분의 요청 시 열람 등 제약 필요

가장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던 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을 요청하였을 때 열람 등에서 제약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미심쩍은 부분이 있을 때마다혹은 아무 때나 영상정보를 열람하는 일들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필요하면. 문제가 없으면 딱히 할 일은 없을 것 같고, 갑자기 아이가 며칠 째 유치원 가기 싫다고 하거나 어떤 친구가 자기 괴롭힌다는 느낌을 내가 받게 되면은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고, 그래도 뭔가가 미심쩍거나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이 안 나오거나 그러면 보자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사립유치원학부모, 11. 16).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조금 규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교사실이나 사무실에, 아니면 원장님실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모니터가 있잖아요. 또한 아무나 들어와서 볼 수 없고, 다른 교사가 원하더라도 다른 교사의 반은 볼 수 없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막아줬으면 좋겠다.(직장어린이집교사, 2015. 10. 31).

#### 나) 노출 제한 필요

CCTV를 통해 아동과 교사가 너무 노출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는 의견도 있었다.

다른 아이들에 대한 게 너무 노출이 되고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너무 노출이 되는 게 아닌가(가정어린이집학부모, 2015. 10. 30).

#### 다) 상시 열람은 부정적

또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거나 상시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것은 반대라는 입장도 있었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된다면, 선생님들이 함부로 그런 걸 시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선생님이라면, 만약에 내가 이걸 시도를 했다가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지, 아니면 어머님들이 보고, 정착되기 이전까지의 모습을 보고 그 전에 미리 말이 나오면, 선생님들은 시도조차 못하고 계속 옛날 방법대로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열람을 함부로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면은 아닌 것 같아요(가정어린이집학부모, 2015. 10. 30).

지금 원에서 그냥 관리를 하고 문제시 됐을 때, 요청을 했을 때 그게 타당할 시에는 그런 CCTV 영상이나 그런 제공은 가능하지만 그걸 계속 자유롭게 오픈하는 건 반대라고 생각해요(사립유치원교사, 2015. 11.5).

## 3) 네트워크 카메라 및 모자이크

네트워크 카메라에 대한 의견과 모자이크 처리를 통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의견은 심층면담 중 총 7회 언급되었으며, 범주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범주	빈도	비율(%)
네트워크 카메라는 인권침해	1	14.3
네트워크 카메라는 아이 비교하게 됨	1	14.3
모자이크해도 누군지 인식 가능	1	14.3
네트워크 카메라는 부모의 불안감과 오해 소지 커짐	2	28.6
시간을 정한다면 가능	1	14.3
실시간 가능여부 문의	1	14.3
계	7	100

〈표 Ⅲ-3-10〉네트워크 카메라 및 모자이크

## 가) 네트워크 카메라는 부모의 불안감과 오해 소지 커짐

심층면담 결과 네트워크 카메라는 부모의 궁금증과 알 권리를 위해 적용되고 있지만 오히려 실시간으로 자녀와 교사의 행동을 봄으로써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제안한다. 영상정보만 제공됨으로써 전체적인 상황의 맥락이 모두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아동과 교사의 행동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엄마들에게 전송되는 것 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안 보는게 약이지 않을까요? 모르는 게 약. 보면은 득보다는 학부모님 입장에서도 불안감이 높아지실 것 같고, 그걸로 선생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눈으로 봐서 생기는 불안감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큰 건 소리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음성이 같이 전송이 된다면, 그런 무드가 다 전달이 되는데, 분위기가 전달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화면만 전달이 되는 거라. 오해의 소지가 크죠(사립유치원교사, 2015, 11, 5)

#### 나) 그 외의 예들

그밖에도 네트워크 카메라로 자녀와 타 아동을 비교함으로써 불거질 수 있는 문제가 많다는 점과, 원장들의 교사에 대한 근로감시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들 을 우려하였다.

네트워크 카메라가 있으면 남도 내 아이를 보고 나도 남의 아이를 보는 거잖아요. 그걸로 판단하고, 이야기를 만들고, 사실은 엄마들이 욕심이 많아서 내 아이 잘하는 것만 말하지 않아요. 남의 못하는 걸 얘기하고 싶어 하죠. 그런 면에서

네트워크 카메라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민간어린이집학부모, 2015. 11. 3).

네트워크 카메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저희 되어 있는 거는 상황으로는 될수 있대요. 뭐 열기만 하면 가능한데, 그거까지 하면 교사들이 정말, 교사들의 인권이 침해될까 봐 그것까지는 지원하지 않는다(사립유치원교사, 2015. 11. 5).

원장님도 핸드폰에 있잖아요. 다 들고 있어요. 원장님들이 나와 있잖아요, 많이. 나와 있으면 그걸 보고 교사들도 알아요(CCTV 없는 유치원원장, 2015. 11. 5).

# 4. 요약 및 시사점

다음에서 3장에서 논의되었던 신문기사 검색 결과,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원장, 교사 및 학부모 면접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모 색하였다.

첫째, 유치원·어린이집의 CCTV 설치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신문기사와 학부모, 교사, 원장과의 심층면담, 교사설문 결과를 분석하였다. 2010년부터 2015년 9월까지 CCTV관련 신문기사를 검색한 결과,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기사는 272건이었고, 이중 223건이 2015년 기사로 CCTV관련 내용이올해 가장 많이 기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72 건의 내용을 범주화 했을 때, 크게 9개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었고, 이 중 CCTV가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학대 및 폭력에 대한 증거로 사용된다는 내용이 92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및 정책관련 내용이 91건, 설치 반대에 대한 내용이 36건, 설치 찬성에 대한 내용이 27건으로 나타났다. 그 외, 부모의 요구 및 반응, 경찰 대응, 어린이집 동향, 대안, 보완점, 기타 등에 관한 내용이 2건~7건정도로 나타났다.

학부모, 교사, 원장을 대상으로 유치원·어린이집의 CCTV 설치에 대한 의견을 인터뷰한 결과, 학부모는 CCTV의 단점보다 장점에 대해 더 많이 언급한 데 반해, 교사와 원장은 장점보다 단점을 더 많이 언급한 것으로 나타나서 입장 차이를 나타냈다. 즉, 부모들은 CCTV가 부모와 교사, 기관과의 관계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보았고, CCTV가 안전장치 역할을 하여 안심과 믿음이 간다고 생각

하였으며, 교사 보호와 오해 해명 장치로 CCTV 설치의 장점을 들었다. 반면, 교사와 원장은 CCTV 설치는 통제와 감시로 불신과 오해를 초래, 교권에 대한 도전으로 교사의 자율성 감소된다고 보았고, 인권 침해 등의 이유로 단점을 들었다. 한편, CCTV 설치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도 있어, 근본적으로 교사의 자질을 높여야 하고, 신뢰 관계가 우선되어야 하며,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 학부모를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등의 보다 개방적인 기관 환경 조성 등을 더 우선시 되어 해결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제시하였다.

유치원·어린이집의 CCTV 설치에 대한 입장을 설문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유치원 교사들의 64.5%는 찬성한다고응답했으며, CCTV 설치로 인해 안전사고 확인 및 예방과 부모-교사 분쟁발생시 객관적 자료를 통한 교사 보호 측면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반면반대 이유로는 '교사가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됨으로 인하여 교사의 사기가 저하됨'과 '교사의 교육 자율권 침해'를 들었다. 또한 '교사와 유아의 개인정보 노출' 및 '아동학대와 무관한 해결책'이라는 응답도 나타났다. 한편, 어린이집 교사들은 CCTV 설치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60.7%로 더 많았으며, 특히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교사들의 반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CCTV 설치 찬성과 반대 이유는 유치원 교사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실/보육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의견 조사결과, 유치원 교사의 52.3%가 찬성하였으며 공립에 비해 사립유치원 교사들이더 많이 찬성하였다. 찬성과 반대 이유는 이상에서 살펴보았던 CCTV 설치 찬성 및 반대 이유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한편 어린이집 교사들은 반대하는 입장이 64.5%로 많았다.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이 반대하는 입장이 많았으며, 직장어린이집은 찬성하는 입장이 많아 각 기관의 유형에 따른 입장 차이를 보였다. 찬성 이유는 유치원과 동일하였고, 반대 이유는 유치원과 유사하였지만 응답 비율에서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영유아와 교사의 개인정보 노출 위험'은 유치원 13.7%, 어린이집 18.8%, '교사의 교육 자율권 침해'는 유치원 21.6%, 어린이집 27.5%, '근본적인 아동학대 해결과 무관'은 유치원 17.6%, 어린이집 21.7%로 비슷한 반면, '교사의 사기 저하'는 유치원 35.3%, 어린이집 8.7%로 차이를 보였다.

둘째, 유치원·어린이집의 CCTV 설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교사들에게 질문한 내용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먼

저 CCTV 설치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본 조사에 응답하였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각각 86.9%, 73.8%가 CCTV가 설치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본 조사가 편의표집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올해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인한 2015년도 신규 설치가 다소 증가한 영향일 수도 있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의 기기종류와 설치비용 출처는 과반수정도의 교사는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CCTV 설치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 유치원교사들은 설치 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41.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안전사고 예방 21.5%, 교육청의 지원이 15.1%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의 경우,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설치했다는 응답이 34.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원장의 설치의지로 이루어졌다는 응답이 27.1%로 나타났다. CCTV를 설치하지 않는 기관의 미설치 이유는 유치원의 경우, 원장의 강한 반대 의지를 가장 큰 이유로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설치및 운영비 부담을 들었다. 어린이집의 경우, 설치 및 운영비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이 46.4%로 가장 많았고, 교직원의 반대 때문도 35.7%로 나타났다.

최근 제정된 CCTV 관련 법안에 대한 인지 및 만족도에서는, 유치원 교사 중 55.1%, 어린이집 교사의 76.6%가 영유아보육법의 CCTV 설치·관리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공립 어린이집에 비해 직장어린이집 교사가 관련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대다수가 '교직원의 동의'와 '부모와의 CCTV 열람 원칙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원장, 교사, 부모에게 CCTV 설치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면담한 결과, 먼저 CCTV 설치에 관하여는 현장에 맞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 설치시 교사 인권 보호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 매뉴얼 등을 통한 정확한 지침 전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셋째, CCTV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CCTV가 설치된 곳에 안내판이 게시되었는지의 여부', 'CCTV 관리자의 정기적 관리 여부' 및 '유치원/어린이집에 CCTV 운영 관련 규정 유무'에 대한 질문에서 유치원에 비해서 어린이집이 안내판 게시가 더 많이 되어 있고, 관리도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운영 관련 규정이 있다는 응답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최근 CCTV와 관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내용이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더 민감하게 전달되어 시행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관련 소프트웨어 설치 여부'에 대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모른다는 응답이 과반수이상으로 나타나, 현재 CCTV 관련하여 주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련 내용이 향후 더 보완되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다음으로, 부모들이 CCTV 녹화물을 열람하는 빈도와 이유를 조사한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부모들이 CCTV를 열람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열람 이유로는 '유아의 상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가장 많았다. 또한, 부모들에게 CCTV 녹화물의 열람을 제공 시, 유치원 교사들은 '열람 요청이 없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열람 요청을 할 경우 '별다른 동의 절차 없이 다른 유아들과함께 열람 제공'한다는 응답이 21.5%로 가장 많았다. 반면 어린이집의 경우, '사전에 개인영상정보 열람 동의서를 받아 모든 영유아를 보여준다'는 응답이 34.2%, '별다른 동의 절차 없이 다른 영유아들과함께 열람 제공한다'는 응답이 29.1% 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이 유치원에 비해 동의 절차를 거친 후 다른 아이에 관한 영상을 열람하는 비율이 다소 높긴 하지만 동의 없이 제공하는 경우도 20%가 넘고 유치원의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 CCTV 운영이 확산될 것으로 추정되는 현 시점에서 다른 아동에대한 개인정보 노출과 관련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CCTV가 바람직하게 운영되기 위해 바라는 사항에 대해 유치원와 어린이집 교사들은 1순위로 '교사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록물 관리'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교사 신뢰성 회복 방안 마련', '교사 보호 및 자기계발 활용방안 마련', '보호자 열람 시 부가적인 업무 담당 인력 배치' 순으로 나타났다.

원장, 교사, 부모에게 CCTV 운영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면담한 결과, CCTV 열람에 있어서는 열람 요청 시 아무에게나 개방하지 않는 등의 제약이 필요하다는 의견, 노출에 대한 제한도 필요하고, 상시 열람은 문제가 많다는 의견 등이 제안되었다. 네트워크 카메라는 부모의 불안감과 오해의 소지만 커질뿐이라는 의견 등을 제시함으로써 네트워크 카메라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현하였다.

결론적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들은 CCTV 설치에 전적으로 부정적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CCTV 설치를 찬성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영유 아의 안전사고와 관련되어서였고, 반대 이유는 교사의 사기 저하, 교사 인권 침

해 등의 이유에서 이었다. 또한 CCTV 설치가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입장도 있었다. 즉, 보다 근본적으로, 교사의 자질함양, 교사-부 모 간 신뢰 형성,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 개방적인 기관 분위기 조성 등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였다.

### IV. 정책 제언

본 장에서는 유치원·어린이집의 CCTV 설치·운영과 관련된 규정, 선행연구, 기본현황과 신문기사, 설문조사, 심층면담의 분석 결과와 전문가 자문을 기초로 아동인권을 보호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는 개선방안에 대한 기본 방향과 포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기본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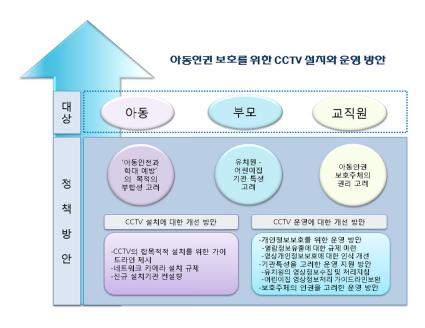
첫째, 유치원·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운영되는 주요목적은 '아동안전과 아동학대 예방'이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CCTV 설치에 찬성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은 안전사고 발생 시 확인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 응답이 46-50%, 부모와 교사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객관적 자료를 통해 교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응답이 36-38%에 해당되었으며, 오히려 CCTV의 설치가 아동학대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의견은 소수였다. 부모가 CCTV의 영상정보를 열람하는 주된 이유도 영유아의 상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유치원·어린이집의 교직원 및 학부모들은 CCTV를 아동의 안전사고 확인과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심층면담을 통해 CCTV가 원장이 교사의 근로 태도를 감시하거나 실시간 영상정보가 제공되는 네트워크 카메라로 인해 부모 간 갈등이 발생한 사례를 보게 되어, CCTV가 설치된 본래 취지와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그러므로 유치원·어린이집의 CCTV 설치와 운영이 본 취지인 '아동 안전의 발전과 예방'에 부합되도록 이루어질 것을 제안한다.

둘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관 특성에 따라 CCTV의 설치·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에는 이미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이 많았으나, 영유아보육법의 CCTV 설치 의무화로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도 새롭게 설치해야 하는 되는 상황이다. 유치원도 CCTV의 설치 비율은 높았으나 어린이집에 비해 교실에 설치 비율은 절반 수준이었으며, 특히 공립유치원에는 거의 설치되지 않았다. 유치원은 CCTV와 관련된 규정은 개인정보보

호법에 준해 운영되고 있어, 기관 유형에 따라 CCTV의 설치와 운영방안을 세분화한 정책 제언이 필요하다.

셋째, 자문회의 및 심흥면담에서 CCTV의 설치와 운영에 있어서 교사의 인권보호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유치원·어린이집에서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인권보호의 일차적 대상인 아동과 더불어 아동의 보호와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인권과 부모의 권리도 함께 고려되는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특히 CCTV 설치를 반대하는 교사들은 CCTV가 감시의눈으로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함으로써 교사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는데공감하며, 정보열람대상인 유아 이외의 유아와 교사의 개인정보 노출 위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들의 설문 결과에서도녹화물 열람 제공 시 타 유아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안이 효과적으로 강구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 교사와 유아의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에서 영유아의 인권보호에 대한 논의도 함께 되어야 한다. 반면 부모들은 영상정보 열람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가지고 있어, 부모와 기관이 협력하는 방안으로 CCTV의 운영을 보완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다음은 CCTV의 설치와 운영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그림 IV-1-1]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및 운영 정책방안

#### 2. CCTV 설치에 대한 개선방안

#### 가. CCTV의 합목적적인 설치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유치원·어린이집의 CCTV 설치는 아동의 안전사고 확인 및 예방을 위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적에 따라 CCTV의 설치장소를 고려함이 필요하다. 실외놀이터, 주차장 및 출입구는 외부인들의 침입을 감시하고 교사와 아동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이다. 복도 및계단, 공동 놀이실 등은 교사의 눈이 닿지 않은 장소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설치 가능하다.

그러나 교실/보육실의 CCTV 설치에 대해서는 본 설치 취지와 부합되는지에 대한 교직원들의 의견은 다양하다. 교실/보육실이 영유아와 교사의 교육·보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공간이므로 교사의 수업에 대한 자율적인 권한을 침해하며, 감시의 목적인 CCTV의 눈으로 교사를 바라본다는 측면에서 반대하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교실/보육실에서 교사가 못 보는 사이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확인하고, 부모의 오해를 풀기 위한 객관적 자료를 통해 교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CCTV의 설치를 찬성하는 입장도 있다. 그러므로 CCTV 설치 장소에 있어 교실/보육실의 설치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교실/보육실은 교육·보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공적 공간이기도 하지만, 교사실이나 교사휴게실이 없는 기관에서는 교사의 활동 준비나 휴식이 이루어지는 사적공간이 되기도 한다.

교실/보육실은 영유아와 교사가 가장 많이 머무는 공간이며, 상호작용을 통해 애착과 신뢰를 형성되는 공간이다. CCTV의 설치는 그 목적이 안전사고 확인과 예방이라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교사와 영유아의 모든 활동을 감시하는 용도로 기능하게 된다. 그 가운데 교사들은 영유아와의 활동에서 부자연스러움을 경험하게 되고 신체접촉이나 새로운 교수법은 시도하지 않는 등 그 영향은 고스란히 유아에게 미치게 된다. 무엇보다 교실/보육실의 CCTV 설치는 다른 장소에 비해 아동의 발달과 교육권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교육/보육실의 CCTV 설치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교사실이나교사휴게실이 없는 기관이라면 교실/보육실의 CCTV 자료수집 시간을 교육·보육활동 운영시간으로 제한한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실이나 교사휴게공간의 CCTV 설치는 제한되어야 한다.

#### 나.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운영에 대한 규제 마련

선행연구,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을 통해 아동과 교사의 인권과 가장 많이 상충하는 것이 네트워크 카메라임이 밝혀졌다. 네트워크 카메라는 인터넷망을 이용하면 서버는 다르지만 카메라는 원하는 곳에 설치할 수 있어, 비용 면에서 저렴하며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교사와의 심층면담에서네트워크 카메라를 통해 아동과 교사의 개인정보가 실시간으로 노출되며, 이로인해 CCTV 설치의 본 취지와는 무관한 다양한 문제들이 야기됨을 확인할 수있었다.

영상물을 기록하고 저장하여 필요한 경우 열람할 수 있는 CCTV와 달리 네트워크 카메라는 정해진 시간 동안 관련 학부모와 원장에게 실시간으로 정보가제공됨에 따라, 역효과로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와 타 유아를 비교하거나, 기관에서 발생한 영유아 간의 갈등이 부모 간의 갈등으로 번지는 일이 발생하기도하였다. 그리고 부모와 원장이 기관 안팎에서 실시간으로 교사의 행동을 관찰하고, 교사에게 직접적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등 교사의 행동 통제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단점도 발견되었다.

그러나 현재 유치원·어린이집에도 네트워크 카메라로도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기기들이 설치되어 있어 이에 대한 규정 마련이 시급하며, 아동과 교사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운영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필요하다.

#### 다. 신규 설치 기관 컨설팅

설문조사 결과, 의무 설치 기관인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서 CCTV 설치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어, CCTV의 필요성에 대한 공유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설치 운영함에 있어 혼선을 초래할 소지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관련 지자체에서는 CCTV 설치와 운영에 대한 필요성과 아동과교사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방안, 교직원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한안내 등 구체적인 설치·운영방안을 컨설팅 할 필요가 있다. CCTV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평소 동의하지 않던 기관까지 CCTV를 설치하게 됨으로써 교사들의 사기저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교사의 처우와 사회적 인식도가 낮은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교사들에게 CCTV의 설치는 감시라는 의미로 다가오므

로 교직원들 간의 합의과정이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CCTV 미설치 이유 중 설치와 운영비용의 부담이 컸다는 점을 고려할 때 CCTV가 잘 관리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 3. CCTV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 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CCTV의 운영방안

#### 1) 열람 정보 유출에 대한 규제 마련

CCTV를 운영함에 있어서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 결과, CCTV 관리 및 운영 시 많은 수의 교사들이 교사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상기록물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교사뿐만 아니라 아동의 개인정보도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CCTV 영상기록물 관리자의 책임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유치원·어린이집 중 외부에 위탁해 CCTV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은 영상기록물 서버가 외부에 존재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안전관리 규정을 좀 더 세분화하여 영상기록물 파일이유출되지 않도록 보관·관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절차 규정이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외부에서 CCTV 및 NVR(저장장치)를 해킹하지 못하도록 해킹방지 솔루션을 마련하는 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모 및 타인에게 영상기록물을 열람 제공함에 있어서 목적에 부합되는 영상파일만을 제공하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방안이 마련이 필요하다. 해결 방안으로 관련 없는 아동의 얼굴을 모자이크하거나 비디오 summary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문제되는 화면을 합쳐서 해당 부분만 뽑아내는 방법도 제안되나 아직 정책적으로 상용화하기는 안정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아동과 교사의 인권 보호를 위해 CCTV 화면을 처리할 다양한 소프트웨어는 있지만 상용화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실질적으로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고 해도 누구인지 주변사람들은 금세 알아 볼 수 있어 무용지물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므로 영상파일속에 등장하는 타 유아의 부모와 담당 교사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목적 이외

에 영상기록물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에 발설하지 않고 그에 대한 책임도 있음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 2) 영상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

심층면접을 통해 CCTV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컴퓨터 모니터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바일폰으로 전송받을 수 있으며 원장이 외부업무를 보면서각 교실/보육실의 교사들과 영유아들을 관찰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안전사고 확인 및 예방이라는 목적보다는 교사들의 근로태도를 감시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CCTV의 영상정보에 실린 아동과 교사의 개인정보들은 정확한 열람 목적에 따라 합당한 절차를 통해제공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이 CCTV의 영상정보가 합당한 열람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민감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인식개선의 노력도 필요하겠다.

#### 나.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CCTV 운영지원 방안

유치원·어린이집에 신규 CCTV의 설치가 증가함에 따라 CCTV 운영에 대한 적절한 컨설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의 영상정보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 준비 중이나, 유치원 내 CCTV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 인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에 준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기관에 따라 설치 및 운영지원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 1) 유치원의 CCTV 운영지원을 위한「유치원의 영상정보 수집 및 처리 지침」 마련

면담 및 설문조사 결과 유치원 내 CCTV 운영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이 준수되고 있지 않아 유치원의 CCTV 설치와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통해 부모의 알 권리를 충족함과 동시에 아동과 교사의 인권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323호)22)에 따라 유치원의 공시정보 범위·공시횟수 및 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기관에서 다루는 개인정

<sup>22) &#</sup>x27;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3조2)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2156&efYd=20160101#0000

보의 보호와 처리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영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영상정보 처리 목적, 정보 유형, 정보 주체, 정보 공유자 등'을 명시하고, 교육기관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시·도 교육청 및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유치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 컨설팅」및 교원연수를 실시하여 교육기관 내 개인정보수집의 유형, CCTV를 통해 수집한 영상정보의 처리, 학부모 열람권과 교사의인권 등의 내용을 다루어 유치원에 설치·운영되는 CCTV가 본래의 설치 취지에 맞도록 유아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2) 어린이집의 CCTV 운영지원을 위한 「영상정보처리 가이드라인」의 정교화

현황 자료에서 보듯이 대다수 어린이집에서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었으나, 신규로 설치하는 어린이집에서는 「영상정보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CCTV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것 이상으로 설치 의무, 설치 장소 규정, 저장 기간 등을 제안함으로써 설치 과정상에 정보 주체인 교직원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제한점도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영 상정보처리 가이드라인의 수정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항목 현행 수정안 사유 -교사들의 사생활을 침 해할 수 있는 공간임. -보육실 설치에 대해 -예외 구역으로 교시실 서는 기관에 따라 협 -보육실, 공동놀이실, , o s 골이실, 놀이터 및 식당, 강당에 1대 이상씩 설치 지정 의하여 지정하게 하 설치구역 및 그 보육실 내부가 보이는 넓은 창문이 있는 경우 미설치하는 경우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보육실에 창문 설치 예외 혹은 CCIV 설치 중 선택하는 방안 -학부모 총회, -교사회의 자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윤기되기 기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의 목적, 범위, 운영 시간 등 구체 위원회, 그 밖에 교사, 학부모 대상 설치로 직접적 영향 사전의견 수렴 을 받는 교사들의 의 설명회 및 설문조사 견이 반영될 수 있도 적인 계획안) 첨부 록 장치 마련 실시 -입소상담과정에서 -입소 상담 시 부모가 CCIV 설치 혹은 미설 치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 어려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사용과 제한에 대한 사전 설명 및 평가 결과 공개 추가 에 대한 설명 후 동의여부 결정 동의 절차 -매해 동의 받아야 함

〈표 IV-3-1〉 영상정보처리 가이드라인 수정 제안

항목	현행	수정안	사유
안전조치 및 점검	-영상정보의 접근 권한 제한 -내부 관리계획을 홈페이지에 게시	-위탁에 대한 규정 추가 마련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위탁도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규정도 마련 되어야 함.
열람절차	-열람 시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정보 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 영상 정 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	- 개 인 영 상 정 보 에 대한 사전 동의 절차를 엄격히 관리 하도록 함	-실제적 활용 어려움 -관련 S/W가 상용화 되지 않았으며, 추가 비용 발생
비밀유지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의 누설 금지 -영상자료를 열람 한 보호자 등 영상정 보를 제3자에게 누 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 면 안 됨.	-정보누설에 대한 제재 조치에 대해 추가 명시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 우 적용 방안 마련이 필요함. -영상정보 열람 후 정 보누설에 대한 제재 보완 필요
(신설)운영 및 정보 수집 제한	-	-교사실 및 교사휴 게실이 없는 경우, 영상정보 수집 시간을 보육운영시간 이내로 제한	-보육시간 외에 교사의 업무에 대한 사항은 정보의 목적에 부합 되지 않음.

#### 3)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 보완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들의 설문조사 결과 CCTV 찬성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왔다. 이는 이미 설치된 기관이 많고 영유아보육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설치 자체에 대한 의견보다는 교사의 인권 및 사기 저하에 대한 보완책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유치원에 설치된 CCTV는 학교안전관리 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기준에 관리를 받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상에서 유치원·어린이집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설문조사결과 CCTV 설치와 운영에 있어 영유아보육법 기준보다는 개 인정보보호법에 준해 따를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현행 CCTV와 관련된 규정들을 설치목적, 설치 장소, 설치예외, 설치 시 사전의견 수렴, 영상정보처리 동의, 운영제한기준, 정보수집 시간 및 정보 저장 등의 기준에 따라 제시하고, 수정되어야 하는 방향에 대해 정리하였다.

 $\langle \pm \text{ IV-3-2} \rangle$  현행 관련법 규정과 수정 방향

	현행 관련법 규정	관련법의 수정 방향
설치 목적	·아동복지법: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함. ·개인정보보호법: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영유아보육법: 아동학대 예방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	·유아교육 보육기관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은 영유아의 안전과 보안을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이에 부합되도록 CCTV를 운영할필요가 있음.
설치 장소	·영상정보처리 가이드라인: 각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및 식장, 강당에 1대 이상씩 설치 · 타법: 기관 내 설치 장소에 대한 규정 없음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장소에 대해 교사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교사실은 제외하고, 교실(보육실) 설치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각 기관에서 적용하도록 함이 타당함.
설치 예외	·개인정보보호법: 목욕실, 화장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장소 ·영유아보육법: 보호자전원의 동 의를 받아 시장, 군수, 구청장에 게 신고한 경우	·설치 예외의 경우 보호자전원의 동 의 규정은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보 호자 과반수 이상과 같이 기관의 협의를 통해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설치 시 사전의 견 수렴	·개인정보보호법: 관계 전문가, 이해 관계인인 해당 시설 종사 자 혹은 보호자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설명회 필요 ·영유아보육법: 보호자전원의 동 의를 받아 시장, 군수, 구청장에 게 신고한 경우 설치 제외 가능 ·영상정보처리 가이드라인: 학부 모 총회의, 운영위원회, 교사, 학 부모 대상 설명회, 설문조사 등 의 사건 의견 수렴 절차 권고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유치원·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시 보호 자 및 교직원의 의견 수렴과정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 현재, 영유 아보육법에서 의무 설치가 규정됨 에 따라 이해 관계자인 교사의 의 견은 간과되고 있음. 학부모의 경 우도 반대의사를 표명하기에 부담 스러운 구조로 되어 있어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이후 정보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와 약속이 사전 에 논의될 필요가 있음.
영상 정보 처리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의 정보처리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명확히 인지하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함 ·영유아보육법: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의 경우에만 보호자 및 보 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음.	· 영상정보처리 가이드라인에는 각각 의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 의를 구하는 구체적 방법이 제시되 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 과정에서 정보주체인 교사의 동 의 절차도 마련되지 않음.

-		
	현행 관련법 규정	관련법의 수정 방향
운영 제한 기준	·개인정보보호법: 영상정보처리기 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녹음 기능 사용할 수 없음,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 ·영유아보육법: 영상정보의 열람금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은 아동학대 예방과 안전사고 확인 및 예방을 위한 것으로 그 밖에 네트 워크 카메라를 통해 교사의 노동 감시를 위해 사용하는 상황에 대한 제재도 필요
정보 수집 시간 및 정보 저장 기간	·영상정보 가이드라인: 촬영시간 을 보육시간 내라고 명시, 정보 저장 기간은 60일 이내로 규정	·촬영시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 시할 필요 있음.

#### 다. 보호 주체에 따른 CCTV 운영방안

유치원·어린이집의 CCTV 운영이 아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보호주체에 따른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 1)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CCTV 운영방안

#### 가) 아동 초상권의 보호

아동에게도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권리와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참여권리가 있다. 어린 유아들도 초상권이 있으며, 자신의 영상정보를 타인이 사전 동의 없이 열람하고 자신과 관련된 사항들을 외부로 발설하여 자신의 발달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거부할 권리가 있다. 대개 아동의 이러한 권리는 부모에게 이양되어 부모들의 결정에 따라 동의 절차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제안처럼 유아기가 권리 인식의 결정적 시기임을 고려할 때 교실/보육실에서 CCTV와함께 생활하는 영유아들이 자신의 기록된 정보가 타 부모나 교사에게 무분별하게열람되지 않도록 막을 권리가 있으며, CCTV로 열람한 자신과 관련된 내용이 외부에서 언급되지 않는다는 신뢰감을 갖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영유아들이 교실 내 CCTV에 대해 인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못하였으나, 면담 중아이들이 잘못한 경우 자신의 행동을 CCTV 영상기록물에서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경우가 있어 CCTV가 아동의 안전을 지키는 용도가 아니라 영유아의 행동을 지도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나) 아동학대 증거 확보를 통한 아동의 인권보호

아동이 보호받으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CCTV의 존재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효과적이지 않다는 조사 결과와 더불어 CCTV를 통해 아동학대의 증거를 발견했다는 조사결과를 살펴볼 때, 실제로 아동학대 사건의 발생이 의심되었을 때 증거인멸 이전에 아동학대 처리 관련 부서 및 기관에서 CCTV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침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 2) 교직원의 인권을 위한 CCTV 운영방안

#### 가) 교직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합의와 교육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영유아, 교사, 학부모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합의와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CCTV를 통해 저장된 영상자료는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교직원과 유아, 학부모 간의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한이 필요하다. 그리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CCTV가 자칫 원장과 부모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사의 근로감시로 작용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교사들의 대부분이 CCTV 설치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이 많고,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지침이 없어, 교직원들의 인권 민감성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교육 등 보수교육을 통한 재교육이 필요하다.

#### 나) 유치원·어린이집 개방성 증진을 통해 부모 감시에서 부모 참여로 전환

CCTV 설치의 대안으로 매체를 통한 부모감시가 아니라 기관의 개방성을 증진함으로써 부모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기관과 가정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방안임이 지적되고 있다. 심층면담을 통해 부모참여 활동이 CCTV라는 기계를 통해 단편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비해 훨씬더 많은 맥락과 정보를 부모에게 전달하며, 이렇게 쌓인 교직원과 부모의 이해와 신뢰는 아동학대를 예방함과 동시에 영유아가 기관과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 다) 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자기계발 지원

본 연구의 면담 결과 CCTV가 교사의 자기 수업 모니터링을 통한 수업계발에 활용 된다는 사례도 발견되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CCTV 모니

터에는 움직임만 제공될 뿐 음성 정보는 포함되지 않아 정확한 수업 모니터링을 위한 매체는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CCTV는 대개 천장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시선이 아래로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업 장학을 위한 목적에는 부합되기 어렵다. 타 교사가 자신의 교실을 보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표현하는 사례도 있어 CCTV를 수업 모니터링에 사용하는 것 보다는 교사들의 자기계발을 위해서는 동료 및 선임교사의 멘토링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에 대한 대안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것은 교사의 처우 개선이었다. 아동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CCTV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휴게 공간 및 휴게 시간이 필요하다. 따로 장소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라면 CCTV 자료수집 시간을 명시해야 한다. 특히 장시간 영유아와 보육활동을 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CCTV 설치와 함께 휴게 시간의 확보와 영유아 대 교사 비율을 적정화하는 대책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 3) 부모의 권리보호를 위한 CCTV 운영방안

#### 가) 자녀의 개인정보열람 제한 권리

CCTV 설치의 찬성 근거 중 하나는 부모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점이다. 아동의 발달을 지원하고 교육할 의무를 지닌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과 발달을 위해 수집된 정보들을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미국의 가족교육권및프라이버시법 안을 보면 부모는 자녀의 교육기록 중 부정확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에 대한 정정권과 삭제권을 지닌다. CCTV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한권리도 이에 해당된다.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과 영상정보처리 가이드라인에서도 부모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영상정보가 함께 제공되는 타 영유아의 부모의 권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자녀의 개인정보의 열람을 제한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는 부모의전체가 동의해야 CCTV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어, 설치 동의는 곧 자신의 자녀에 대한 정보 공개의 동의로 연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를 구분하여 부모의자녀 개인정보접근 보호에 대한 권리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 나) 부모의 양육 효능감 증진을 위한 육아지원 정책 활성화

신문기사 및 심층면담을 통해 부모들은 자녀가 기관에 적응하는 시기에는 CCTV에 대한 관심이 있으나 교사와 기관과 신뢰를 형성하게 되면 CCTV에 대해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CCTV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 무엇보다 교사와의 신뢰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부모와 교사의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노력과 함께 부모의 태도 변화도 요구된다. 그러므로 기관에서는 영유아의 초기적응 시기에 부모와의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초기적응 프로그램에 부모의 기관적응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 기관이용시 부모의 역할과 기대, 부모로서 교사와 협력해야 할 부분, 자녀 양육에 대한 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의 내용이 다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유아교육진흥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부모들의 스트레스관리와 양육 지원을 위한 교육 등의 지원을 통해 유치원·어린이집과 함께 자녀의 발달을 지원하는 협력자로서 영유아의 발달과 함께 부모도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육아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동욱(2015).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와 그 개선 방안. 홍익법학, 16(1), 451-477.
- 강미경(2015). 유아교육기관 내 CCTV 설치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유형 연구: Q-방법론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선혜(2015). 유아교육기관 내 CCTV 설치가 유아교사의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부(2015). 유치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확대 추진 기본계획
- 구미향·황소영(2014). 유아교사의 유아인권에 관한 인식 변화 연구. 한국위기관 리논집, 19(7), 119-137.
- 국가인권위원회(2006).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의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국가인권 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2014). 국가인권위원회법규집. 국가인권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실.
- 권건보(2011). 보육현장에 대한 전자적 감시의 법적 문제점. 세계헌법연구, 17(3), 79-105.
- 권미란(2012). CCTV 존재 여부가 보육교사의 안전의식과 안전실천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3(2), 822-826.
- 김민호(2013). CCTV관리를 위한 법제 연구. 성균관법학, 25(2), 219-244.
- 김연아동발달지원센터(2013). 보육교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인권정책과.
- 김은하(2013). 어린이집의 CCTV 설치 및 활용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애(2011). 개인정보의 공개와 보호에 관한 연구: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29, 225-268.
- 김종세(2008).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아동인권수준 제고방안. 법한연구, 31, 47-76.
- 김종호(2015). 영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와 개인정보보호기관의 법적 실태에 관한 소고.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45, 261-307.

- 나달숙(2011). CCTV 운영 현황과 기본권 문제연구. 법학논총, 35(2), 97-128.
- 문부과학성 '학교안전추진에 관한 계획의 시책추진 상황조사 (2011년도 실적)' p.52 표 '방범감시 시스템의 정비상황 내역'
- http://www.mext.go.jp/component/a\_menu/education/detail/\_icsFiles/afieldfile/2013/03/29/1289907\_2.pdf 박종원(2014). NVIVO 10 Essentials. 부산; 부경대학교 출판부.
- 보건복지부·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4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 보건복지부(2015).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가이드라인
- 보건복지부(2015). 규제영향분석서: 어린이집 CCTV 설치·관리기준 등.
- 보건복지위원회(201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정연호 전문위원 2015. 2.
- 세계법제정보센터(2007. 7. 26). 미국의 "가족의교육권및프라이버시에관한법률" 에 관한 소개.
- http://world.moleg.go.kr/World/NorthAmerica/US/trend/2374?pageIndex=17. (인출일 2015년 11월 25일)
- 어린이집 정보공시 항목 조회 (2015년 1월 현재).
- http://info.childcare.go.kr/info/pnis/introduction/ItemsNursery.jsp
- 이용교·황옥경·김영지·김형욱·이중섭(2004). 아동인권정책 기본계획수립 방안. 국가인권위원회.
- 임수정·이일랑·이대균(2013). CCTV와 함께 생활하는 유아교사 이야기. 어린이 문학교육연구, 14(3), 433-453.
- 정미자·문희·선춘자·이동매(2014). 보건교사 교육실습생들의 학교현장 실습경험 분석: Nvivo 10 활용.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8(3), 576-578.
- 정현옥(2011). 서울형 어린이집의 CCTV 및 IPTV 운영실태 및 활용방안.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규범(2006). 미국의 프라이버시 법제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17(3), 75-113.
- 조재현(2015). 아동학대의 예방적 과제로서의 아동보육시설에서의 영상감시카메라 의무적 설치의 헌법적 문제: 미국의 영상감시카메라의 운영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26(2), 261-300.

- 주주자(2014). 학교 내 범죄발생에 따른 CCTV 설치 동의와 인권침해 인식. 법과인권교육연구, 7(1), 107-134.
- 최문선(2011). 서울형 어린이집 IPTV 제도에 대한 보육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및 만족도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행정자치부(2015).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 황옥경(2012). 영유아기 권리에 대한 유엔의 권고 분석. 아동과 권리, 16(1), 27-49.
- Hope, A. (2009). CCTV, school surveillance and social control. British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5(6), 891-907.
- ICO(2015). In the picture: A data protection code of practive for surveillance cameras and personal information. https://ico.org.uk.
- Taylor, E.(2011). Awareness, understanding and experiences of CCTV amongst teachers and pupils in three UK schools. Information Polity, 16, 303-318.
- Warnick, B. R. (2007). Surveillance cameras in scools: An ethical analysis. Harvard Educationa Review, 77(3), 317-343.

<국내 법령 참고 사이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main.html)(인출일: 2015. 11. 30)

#### 1. 개인정보보호법:

http://www.law.go.kr/lsSc.do?menuId=U&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A%B0%9C%EC%DV;BB%BC%A0%95%EB%B3%B4%20%EB%B3%B4%ED%8%B8%EB%B2%95#undefined

#### 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A%B0%9C%EC%D%B8%EC%A0%95%EB%B3%B4%20%EB%B3%B4%ED%8%B8%EB%B2%5#undefined

#### 3. 영유아보호법:

http://www.law.go.kr/lsSc.do?menuld=U&p1=&subMenu=1&nwYr=1&section=&tabNo=&query=%EA%B0%9C%EC%9D%B8%EC%A0%95%EB%B3%B4%20%EB%B3%B4%ED%88%B8%EB%B2%5#undefined

#### 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http://www.law.go.kr/lsSc.do?menuld=U&p1=&subNenu=1&nwYn=1&section=&tabNo=&query=%EA%B0%9C%EC%9D%8%EC%A0%5%EB%B3%B4%20%EB%B3%B4%ED%88%B8%EB%B2%5#undefined

#### 5. 아동복지법: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A %B0%9C%EC%9D%B8%EC%A0%95%EB%B3%B4%20%EB%B3%B4%ED%98%B8%EB%B2%95#undefined

6. 표준 개인정보 보호자참(시행 2014.11.25.] [행정자치부고시 제2014-1호, 2014.11.25., 타법개정] http://www.law.go.kr/achrRulfs.frioP.cb?achrRulfsq=2000000008chrClsCd+010201&achrRug=

#### 7.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2156&efYd=20160101#0000

<해외 법령/해외 현황 관련 자료 참고 사이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해외교육동향 기획기사

http://www.edpolicy.net/EpnicGlobal/Epnic/EpnicGlobal01Lst.php(인출알 2015. 11월 23일).

1. 미국: 이세웅(2015. 2. 25). 미국의 보육·교육시설에 설치된 CCTV 관리 현황.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해외교육동향, 250호, 기획기사

 $\label{lem:http://www.edpolicy.net/EpnicGobal/EpnicGobal01Viw.php?PageNum=1&Ac\_Group=4&search6el=::AC\_CON1&searchKeyword=CCIV&Ac\_Name=&Ac\_Code=D0060100&Ac\_Code2=D0060100&Ac\_Num0=17807&Ac\_Name2=$ 

2. 영국: 강호원(2015. 2. 25). 영국의 보육교육시설에 설치된 CCTV 관리 현황.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해외교육동향 250호, 기획기사

http://www.edpolicy.net/EpnicGobal/Epnic/EpnicGobal01Viw.php?PageNun=1&Ac\_Group=4&search6el=::AC\_CONT&searchKeyword=CCTV&Ac\_Name=&Ac\_Gode=D000100&Ac\_Gode=D000100&Ac\_Num0=17809&Ac\_Name2=

3. 독일: 정수정(2015. 2. 25). 독일 보육·교육기관의 CCTV 설치 관련 논의. 교육 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해외교육동향 250호, 기획기사

http://www.edpolicy.net/EpnicGlobal/Epnic/EpnicGlobal01Viw.php?PageNun=1&Ac\_Group=4&search6el=::AC\_CONT&searchKeyword=CCTV&Ac\_Name=&Ac\_Gode=D000100&Ac\_Gode=D000100&Ac\_Num0=17810&Ac\_Name2=

**4. 프랑스:** 최지선(2015. 2. 25). 프랑스의 보육·교육시설에 설치된 CCTV. 교육정 책네트워크 정보센터. 해외교육동향 250호, 기획기사

http://www.edpolicy.net/EpnicGlobal/EpnicGlobal01Viw.php?PageNun=1&Ac\_Group=4&search6el=::AC\_CONT&searchKeyword=CCTV&Ac\_Name=&Ac\_Code=D000100&Ac\_Code=D000100&Ac\_Num0=17811&Ac\_Name2=

5. 핀란드: 남궁옥(2015. 2. 25). 핀란드의 보육·교육시설에 설치된 CCTV 관리

현황.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해외교육동향 250호, 기획기사

http://www.edpolicy.net/EpnicGobal/Epnic/EpnicGobal01Viw.php?PageNum=1&Ac\_Group=4&search6el=::AC\_CONT&searchKeyword=CCTV&Ac\_Name=&Ac\_Code=D0060100&Ac\_Code2=D0060100&Ac\_Num0=17812&Ac\_Name2=

6. 일본: 김지영(2015. 2. 25). 일본의 보육·교육시설에 설치된 CCTV 관리 현황.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해외교육동향 250호, 기획기사

http://www.edpolicy.net/EpnicGlobal/Epnic/EpnicGlobal01Viw.php?PageNum=1&Ac\_Group=4&search6el=::AC\_CONT&searchKeyword=CCTV&Ac\_Name=&Ac\_Code=D0060100&Ac\_Code=D0060100&Ac\_Num0=17813&Ac\_Name2=

7. 중국: 이수진(2015. 2. 25). 중국 보육·교육시설 감시카메라 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 현황.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해외교육동향 250호, 기획기사

http://www.edpolicy.net/EpnicGlobal/Epnic/EpnicGlobal01Viw.php?PageNum=1&Ac\_Group=4&search6el=::AC\_CONT&searchKeyword=CCTV&Ac\_Name=&Ac\_Code=D0060100&Ac\_Code=D0060100&Ac\_Num0=17814&Ac\_Name2=

ICO. Data protection regstration: nature of work descriptions: Education and childcare. https://ico.org.uk/media/for-organisations/register/2709/education-and-childcare.pdf(인출일 2015. 11. 23).

CCTV뉴스(2015). 영국의 CCTV 사용과 사생활 보호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712(인출일 2015. 11. 23).

## 부 록

- 부록 1. 유치원 교사 설문지
- 부록 2. 어린이집 교사 설문지
- 부록 3. 면담 질문지(전문가용)
- 부록 4. 면담 질문지(부모용)
- 부록 5. 육아지원 관련자 등록기준
- 부록 6. 신문기사 제목

#### 부록 1. 유치원 교사 설문지

## CCTV 설치 및 운영 관련 조사

### - 유치원 교사용 -

####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조정실 산하 국가 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설문지는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CCTV 정착화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유치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CCTV 설치와 운영에 대한 현실과 요구를 파악하고, 적절한 활용 방안을 알아보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응답이 CCTV 활용과 정착 방안 모색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이용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할애하여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우 남 희

설문조사	기간:	2015년	11월	2일~201	5년	11월	20일
조사진행	관련:	㈜ 바나니	<b>-</b>				

□ 조사내용 관련: 육이정책연구소

※ 다음의 정보를 기록해 주십시오.

유치원 명	유치원 규모 현원기준 명
유치원 소재지	시·군읍·면동·리
유치원	□① 공립단설 □② 공립병설
유형	□③ 사립법인(학교, 종교법인) □④ 사립사인
	□① 부장교사 □② 교사
담당 업무	□③ 수석교사 □④ 원감
	□⑤ 기타( )
	□① 만3세 □② 만4세
담당	□③ 만5세 □④ 만3-4세
유아 연령	□⑤ 만4-5세 □⑥ 만3-5세
10	□⑦ 기타 ( )
현 담당 유아 수	총 명

## I. 유치원의 CCTV 설치 및 운영 현황

1.	귀하이	유치원에	CCTV	가	석치되어	있습니끼	-?
<b>-</b> .	1191-1	미기면에	CCIV	<i>-</i> 1	리기되의	ᄊᆸᅴᆟ	

예 (⇨1-1)	아니오(\$1-7)

1-1. 귀 유치원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와 설치된 개수는 몇 개 입니까? (▷1-2)

$( \neg \backslash \bot )$	·-Z)		
		1) 예	2) 아니오
1	실외 놀이터	□ ( 대)	
2	공동 놀이실	□ ( 대)	
3	식당 및 강당	□ ( 대)	
4	복도 및 계단	□ ( 대)	
(5)	교실	□ ( 대)	
6	주차장	□ ( 대)	
7	기타(설치 장소: )	□ ( 대)	

1-2. 귀 유치원에 설치된 CCTV의 기기의 (⇨1-3)	종류 등	및 설치 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기기종류 □① SD급 □② H 100만호		□③ HD급 130만화소 이상 □④ 모름
② 설치유형 □① 자부담 □②자- 육청지:	부담+교 원	□③ 임대 □④ 모름
1-3. 귀 유치원에 CCTV가 처음으로 설치	된 시기	는 언제입니까? (⇨1-4)
□① ( ) 년도		근무이전이라 모름
1-4. 귀 유치원에 CCTV가 설치된 주된 0	유는 두	무엇입니까? (⇨1-5)
□① 교육청의 지원을 받게 되어		부모들의 요구가 있어서
□③ 원장의 설치 의지가 강해서		모름
□⑤ 기타( )		
1-5. 귀 유치원에 CCTV 설치 시 설치 의사표현기회를 주었습니까? (⇨ 1-6		대해 선생님들에게 공지하고
□① <mark>공지나 의사표현 기회 모두</mark> 없었음		공지만 이루어짐
□③ 공지와 의사표현 기회 모두 있었음		근무 이전이라 모름
1-6. 귀 유치원에 임용 시 CCTV가 설치. (→ 2)	되어 있	다는 안내를 받았습니까?
		아니오
□③ 임용 후 설치됨		
1-7. <u>귀 유치원에 CCTV를 설치하지 않은</u>	주된 0	기유는 무엇입니까? (⇨ 1-8)
□① 교사들이 반대해서		원장의 반대의지가 커서
□③ 부모들이 CCTV 설치를 원 하지 않아서		CCTV 설치 및 운영비용 이 부담되서
1-8. 앞으로 귀 유치원에 CCTV를 설치할	날 계획C	기 있습니까? (⇨6 )
		아니오
□③ 모름		

# II. 유치원 CCTV 운영에 대한 의견

2. 유치원의 CCTV 운영에 대한 부분입	니다.			
		1) 예	2) 아니오	3) 모름
① CCTV 가 설치된 곳에 안내판이				
CCTV 를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된 ② (있다면, 관리자는 누구입니까? 관리담당자: 소속 직책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관련 3 치되어 있다.	년 소프트웨어가 <u>(</u>	설		
- 1④ 유치원에 CCTV 운영 관련 규정C	이 있다.	□		
CCTV를 통한 녹화물 관리기간 (예: 30일 이상).	이 순수되고 있	-t  <sub>□</sub>		
⑥ 학부모에게 영상자료를 열람하는	규칙이 공지되었다.			
3. 유치원에서 얼마나 자주 부모들이 □①월 1회 정도 □③일년에 1회 정도	□② 6개월에 □④ 거의 없	1회 정		
4. 부모들이 CCTV 녹화물을 열람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	이었습니	니까?	1
□① 유아의 상처원인을 파악	□② 유아의	분실물	확인	
□③ 다른 유아와의 갈등 사항 파악	□④ 교사의	체벌 의	심	
□5 7 E+(	)			
부모들의 녹화물 열람시 타 유아들의 5. 습니까?	의 개인정보보호를	를 위해	어떻게 운	영하고 있
□ 담당교사가 미리 해당 유아만 ① 자이크처리해서 보여줌	보 🗆 🗆 🗇 🗎		호를 위한 용해 해당	
□ 사전에 부모들에게 개인영상정 열람동의서를 받아 모든 유이 보여줌	병보 L르 □ □ 별 □	다른 동의	의 절차 없 함께 열람	
□ ⑤ 기타 (	)			
5. 귀 유치원의 CCTV 설치와 관련 없이 대해 어떠한 의견이십니까?	선생님께서는 유	유치원 L	배 CCTV 설	!치에
□① 찬성한다 (⇨6-1)		반대	대한다 (⇨(	6-2)
		1		

#### 6-1.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치원 내 아동학대 예방
<b>2</b>	부모-교사 분쟁 발생시 객관적 자료를 통한 교사 보호
□3	유아 간 갈등 파악 및 문제해결
<b>4</b>	안전사고 발생시 확인가능 및 예방
	부모의 불안 해소
□6	부모와 교사간 신뢰 회복
	수업모니터링 통한 교사의 자기 계발
□8	기타( )

#### 6-2.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상 유아 이외 유아와 교사의 개인 정보 노출 위험
□2	교사의 교육 자율권 침해
□3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여) 교사의 사기 저하
□4)	CCTV에 촬영된 개인정보의 관리부실 위험
	근본적인 아동학대 해결책과 무관
□6	교사와 부모, 유아의 신뢰 저하
	기타( )

### 7. 유치원에 CCTV가 설치가 다음을 위해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기여		
		기여.	하지	기여함	매우
		하지	않음		기여함
		않음			
		1	2	3	4
1	유치원 내 아동학대 예방				
2	부모-교사 분쟁 발생 시 객관적 자료를 통한 교사 보호				
3	유아 간 갈등 파악 및 문제해결				
4	안전사고 발생 시 확인 및 예방				
5	부모의 불안 해소				
6	부모와 교사 간 신뢰 회복				
7	수업모니터링을 통한 교사의 자기계발				
8	기타(		)		

8. 유치원의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설치 장소	찬/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찬성	<ul> <li>찬성일 경우:         <ol> <li>유치원 내 아동학대 예방</li> <li>부모-교사 분쟁 발생 시 객관적 자료를 통한 교사 보호</li> <li>유아 간 갈등 파악 및 문제해결</li> <li>안전사고 발생시 확인가능 및 예방</li> <li>부모의 불안 해소</li> <li>부모와 교사간 신뢰 회복</li> <li>수업모니터링 통한 교사의 자기 계발</li> </ol> </li> </ul>
<b>(5)</b>	교실	□② 반대	⑧ 기타(       )         ☞ 반대일 경우:       ① 대상 유아 이외 유아와 교사의 개인 정보 노출 위험         ② 교사의 교육 자율권 침해       ③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여) 교사의 사기 저하         ④ CCTV에 촬영된 개인정보의 관리부 실 위험       ⑤ 근복적인 아동학대 해결책과 무관         ⑥ 교사와 부모, 유아의 신뢰 저하       ⑦ 기타(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제정된 것을 알고계십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니까?	설치와	관리에	대한	부분이
□① 안다 (⇒ 9-1)	_	$\Box$	모른다 (	⇒ 9-	2)

9-1. 현재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9-2)

매우 만족한다	대체로 만족한다
불만족 한다	매우 불만족한다

9-2. 영유아보육법에 포함된 다음의 각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적절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				
		매우 부적절	부적절	적절	매우 적절
1	CCTV 설치 의무화(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2	교실에 CCTV 설치				
3	영상기록물 보관 기간이 60일 이상				
4	CCTV 미설치 시 부모 전원의 동의 필요				
(5)	보호자의 영상정보 열람 요청 가능				

### Ⅲ. 유치원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요구

10. 신규로 CCTV를 설치하는 유치원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1, 2순위를 매겨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교직원의 동의
<u></u>	CCTV 관리와 운영 체계
□3	CCTV 설치비 지원
<b>4</b>	부모와 CCTV 열람 원칙 협의
5	CCTV 관련 업무 담당 인력 배치
□6	기타 ( )

11. CCTV 관리 및 운영 시 반영되길 바라는 점은 무엇입니까? (1, 2순위를 매겨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교사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기록물의 엄격한 관리
	보호자의 열람 요구 시 교사의 부가적인 업무가 되지 않도록 담당 인력 배치
	교사의 교권을 보호하며 자기계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교사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방안 마련
	기타 ( )

12. 유치원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운영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적용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부적절	2) 부적절	3) 적절	4) 매우 적절
1	영유아보육법*의 기준에 준한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CCTV 의무설치(과 태료 부과), 보육실 내 설치, 60일 이 상 보관, 부모전원 동의 시 CCTV 미 설치 가능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에 준한다.				
3	설치 장소를 교실 밖으로 제한한다				
4	설치기기에서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는 제한한다.				
(5)	설치 시 학부모와 교직원의 전원 동의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6	CCTV 관리 부실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제안한다.				
6	부모에게 CCTV 열람 신청 및 사후 처리에 대한 규칙도 포함한다 (예: 알게 된 영상정보에 대한 비 밀유지나 목적 외에 사용 등)				
7	CCTV 설치 및 운영을 구성원의 자율적 의사소통과정에 맡김을 명 시한다.				
8	CCTV 열람 후 부모 비밀준수 위 반에 대한 규제 지침 마련				
9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에 시기 바랍니다 (	관하여	다른 으	견이 있드 )	h면 적어주

## IV. 일반 특성

성별	□① 남 □② 여	연 령	만 세	
결혼상태	□① 미혼 □② 기혼 □③ 기타 ( )	자녀유무	□① 있음 □② 없음	
교사 경력	총 교사경력: 년 개월	유치원 교사 경력	총 년 개월	
현재	□① 보육교사 1급	□② 보육교사 2급		
소지한 자격증	□③ 보육교사 3급	□④ 유치원 정교사 1급		
(중복응답)	□⑤ 유치원 정교사 2급			
치조칭려	□① 2년제 대학 졸업	□② 3년제 대학 졸업		
최종학력	□③ 4년제 대학 졸업	□④ 대학원		
유치원교사	□① 유아교육	□② 아동학		
자격을 취득한	□③ 교육학/중등교육학	□④ ₫	드등교육학	
전공	□⑤ 기타 (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2. 어린이집 교사 설문지

## CCTV 설치 및 운영 관련 조사

### - 어린이집 교사용 -

####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조정실 산하 국가 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설문지는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CCTV 정착화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CCTV 설치와 운영에 대한 현실과 요구를 파악하고, 적절한 활용 방안을 알아보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응답이 CCTV 활용과 정착 방안 모색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이용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할애하여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조사내용 관련: 육이정책연구소

2015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우 남 희

□ 설문조사 기간: 2015년 11월 2일~2015년	11월	20일
□ 조사진행 관련:㈜ 바나나랩		

*	다음의	정보륵	기록해	주십시오.
/•∖		$c \pm e$	7 1 — 511	

어린이집 명		어린이집 규모	현원기준 명
어린이집 소재지	시·군읍·I	면	동·리
어린이집 유형	□③ 법인/단체어린이집 □	]④ 민간이	복지법인어린이집 버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담당업무	□③ 비담임(보조교사) □(	2 담임교 ④비담임(/ ⑥ 기타(	사 시간연장(방과후, 24시)교사) )
담임을 맡고 있는 반의 연령	□③ 2세반 □○	2 1세반 4 3세반 6 5세반	세)
현 담당 영유아 수	총 명		

## I. 어린이집의 CCTV 설치 및 운영 현황

1	귀하이	어린이집에	CCTV 7F	선치되어	이스니까?
Δ.	1191-1			크시되어	,, u U///:

		아니오(➡1-7)
--	--	-----------

1-1. 귀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와 설치된 개수는 몇 개 입니까? (⇨1-2)

		1) 예	2) 아니오
1	실외 놀이터	ㅁ( 대)	
2	공동 놀이실	ㅁ( 대)	
3	식당 및 강당	ㅁ ( 대)	
4	복도 및 계단	ㅁ( 대)	
(5)	보육실	ㅁ(대)	
6	주차장	□ ( 대)	
7	기타 ( )	□ ( 대)	

1-2. 귀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의 적어주십시오. (⇨1-3)	기기의 종류	루및 키	카메라 성능을	아는대로
① 기기종류 □① SD급	□② HD급 100만화소	1	] ③ HD급 30면호소 이상	□④ 모름
② 설치유형 □① 자부담	□②자부담· 시군구지원	+ [	□③ 임대	□④ 모름
1-3. <u>귀</u>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된	시기는 언제	네입니기	가? (🗘 1-4)	
	)년도	2	근무이전이리	ト 모름
1-4.귀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된 (	이유는 무엇	l입니까	├? (⇨1-5)	
□① 지자체의 지원을 받게 도			부모들의 요구	나가 있어서
□③ 원장의 설치 의지가 강하	서	<b>4</b>	설치가 의무호	<b>-</b> - - - - - - - - - - - - - - - - - -
□⑤ 기타 (	)			
1-5.귀 어린이집에 CCTV 설치 시 설치여부에 대해 선생님들에게 공지하고 의사표현기회를 구하였습니까? (⇨ 1-6)				
□① 공지나 의사표현 기회 모	두 없었음	$\Box$ 2	공지만 이루어	l짐
□③ 공지와 의사표현 기회 모	-두 있었음	<b>4</b>	근무 이전이리	모름
1-6.귀 어린이집 임용시 CCTV가 설	치되어 있다	는 안	내를 받았습니	까}? (⇨ 2)
			아니오	
□③ 임용 후 설치됨				
1-7.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지 읺	<b>;</b> 은 주된 이	유는 -	무엇입니까?(	⇒1-8)
□① 교직원이 반대해서			원장의 반대으	지가 강해서
□③ 부모들이 CCTV 설치를 원하	하지 않아서		CCTV 설치 부담되서	및 운영비용이
1-8. 앞으로 귀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3 )				
			아니오	
□③ 모름				

2.	어린이집의 CCTV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1) 예	2) 아니오	3) 모름
	① CCTV 가 설치된 곳에 안내판이 게시되어 있	다.			
	CCTV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관리한다. ② (있다면, 관리자는 누구입니까? 관리담당자: 소속 직책	)			
	③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관련 소프트웨 활용한다.	어를			
	④ 어린이집에 CCTV 운영 관련 규정이 있다.				
	S CCTV를 통한 녹화물 관리기간이 준수되고 있다(여일 일 이상)	₡: 30			
	⑥ 학부모에게 영상자료를 열람하는 규칙이 공 었다	지되			
3.	어린이집에서 얼마나 자주 부모들이 CCTV 녹화물	을 열	람하는	- 편입니까	<u></u> }?
	□①     월 1회 정도     □②     6개월	에 1호	회 정도	<u> </u>	
	□③ 일년에 1회 정도 □④ 거의 1	없음			
4.	부모들이 CCTV 녹화물을 열람하는 주된 이유는 두	무엇이	었습니	l <i>까</i> !?	
	□① 영유아의 상처원인을 파악 □② 영유이				
	□③ 다른 영유아와의 갈등 사항 파악 □④ 교사으	의 체발	벌 의신	ļ	
	□⑤ 기타( )				
5.	부모들이 녹화물 열람시 타 유아들의 개인정보보호 운영하십니까?	호를 위	위해 0	ᅥ떻게	
				위한 소프 영유아만 <u>!</u>	
				h 없이 다. t 제공함	를 영유
	□⑤ 기타( )				
6.	어린이집의 CCTV 설치와 관련 없이 선생님께서는 대해 어떠한 의견이십니까?	어린	이집 L	내 CCTV 설	설치에
	□① 찬성한다 (⇨6-1) □②	반대학	한다 (	⇒6-2)	
		1			

6-1	차성하느	가장 크	이으느	무엇입니까?
υ т.		710 1	$\vee_{1}$ $+$ $+$	- アプロリグ: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예방
□②	부모-교사 분쟁 발생시 객관적 자료를 통한 교사 보호
□3	영유아 간 갈등 파악 및 문제해결
□4)	안전사고 발생시 확인 및 예방
	부모의 불안 해소
□6	부모와 교사간 신뢰 회복
	수업모니터링 통한 교사의 자기 계발
□8	기타( )

#### 6-2.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상 영유아 이외 영유아와 교사의 개인 정보 노출 위험
<b>2</b>	교사의 교육 자율권 침해
□3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여) 교사의 사기 저하
<b>4</b>	CCTV에 촬영된 개인정보의 관리부실 위험
<b>5</b>	근본적인 아동학대 해결책과 무관
	교사와 부모, 영유아의 신뢰 저하
$\Box$ 7	기타( )

# II. 어린이집 CCTV 설치에 대한 의견

7.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다음을 위해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기여하지 않음 1	기여 하지 않음 2	기여 함 3	매우 기여 함 4
1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예방				
2	부모-교사 분쟁 발생 시 객관적 자료를 통한 교사 보호				
3	영유아 간 갈등 파악 및 문제해결				
4	안전사고 발생 시 확인 및 예방				
5	부모의 불안 해소				
6	부모와 교사 간 신뢰 회복				
7	수업모니터링을 통한 교사의 자기 계발				
8	기타(		)		

R	어린이집의	보유식에	CCTV르	선치하느	거에	내하	이겨으	어떠하스	! LI7	71-7
o.	이런이ㅂㅡ	포벅크에	CCIV =	크시이는	, Yı Oll	-117	-111		4 LI 1	/I ;

	1		
	설치 장소	찬/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5)	보육실	□① 찬성	™ 찬성일 경우: ①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예방 ② 부모-교사 분쟁 발생 시 객관적 자료를 통한 교사 보호 ③ 영유아 간 갈등 파악 및 문제해결 ④ 안전사고 발생시 확인 및 예방 ⑤ 부모의 불안 해소 ⑥ 부모와 교사 간 신뢰 회복 ⑦ 수업모니터링 통한 교사의 자기 계발 ⑧ 기타(
		□② 반대	반대일 경우: ① 대상 영유아 이외 영유아와 교사의 개인 정보 노출 위험 ② 교사의 교육 자율권 침해 ③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여) 교사의 사기 저하 ④ CCTV에 촬영된 개인정보의 관리부실 위험 ⑤ 근복적인 아동학대 해결책과 무관 ⑥ 교사와 부모, 영유아의 신뢰 저하 ⑦ 기타(

	영유아보육법이		보처리기기(CCT	V) 설치와	관리에	대한	부분이	ᄌ
성진 :	것을 알고계십	니까!						
	안다 (🕏 9-1	1)		모른다 (=	⇒ 9-1)			

0_1	성加	제저되	영유아보육법에	$\mathcal{A} \vdash$	저ㄷ	마조치시니까	2
9-1	YIVII	세성권	성반시도로디에	$\circ$	성도	민족아엽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대체로 만족한다
□③ 불만족 한다	□④ 매우 불만족 한다

9-2 영유아보육법에 제시된 다음의 각 부분에 대해 어느정도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적절	적절	매우
		부적절		72	적절
1	CCTV 설치 의무화(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2	보육실에 CCTV 설치				
3	영상기록물 보관 기간이 60일 이상				
4	CCTV 미설치 시 부모 전원의 동의 필요				
(5)	보호자의 영상정보 열람 요청 가능				

# Ⅲ. 어린이집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요구

10. 신규로 CCTV를 설치하는 어린이집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1, 2순위를 매겨주십시오)

1순역	위: 2순위:
	보육교직원의 동의
<u></u>	CCTV 관리와 운영 체계
<b>3</b>	CCTV 설치 지원비
<b>4</b>	부모와의 CCTV 열람 원칙 협의
	CCTV 관련 업무 담당 인력 배치
	기타 (

11. CCTV 관리 및 운영 시 가장 반영되길 바라는 점은 무엇입니까?

1순우	: 2순위:
	교사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기록물의 엄격한 관리
	보호자의 열람 요구 시 교사의 부가적인 업무가 되지 않도록 담당 인력 배치
	교사의 교권을 보호하며 자기계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보육교사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방안 마련
	기타 ( )

12. 어린이집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운영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면 어느 정 도 선에서 적용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부적절	2) 부적절	3) 적절	4) 매우 적절
1	영유아보육법*의 기준에 준한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CCTV 의무설치(과태료 부 과), 보육실 내 설치, 60일 이상 보관, 부모전원 동의 시 CCTV 미설치 가능의 내용을 담고 있습 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에 준한다.				
3	설치 장소를 보육실 밖으로 제한한다				
4	설치기기에서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는 제한한다.				
(5)	설치 시 부모와 교직원의 전원 동의가 필 요함을 제시한다				
6	CCTV 관리 부실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제 안한다.				
6	부모에게 CCTV 열람 신청 및 사후 처리에 대한 규칙도 포함한다(예: 알게 된 영상정 보에 대한 비밀유지나 목적 외에 사용 등)				
7	CCTV 설치 및 운영을 구성원의 자율적 의 사소통과정에 맡김을 명시한다.				
8	CCTV 열람 후 부모 비밀준수 위반에 대한 규제 지침 마련				
9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에 관하여 시기 바랍니다 (	다른 의	기견이 )	있다면	적어주

# Ⅳ. 일반 특성

성별	□① 남 □② 여	연 령	만 세
결혼상태	□① 미혼 □② 기혼 □③ 기타 ( )	자녀유무	□① 있음 □② 없음
교사 경력	총 교사경력: 년 개월	보육경력	총 보육 경력: 년개월
	□① 고졸	□② 2년제 [	대학 졸업
최종학력	□③ 3년제 대학 졸업	□④ 4년제 [	대학 졸업
	□⑤ 대학원졸 이상		
	□① 보육학	□② 아동학	
보육교사	□③ 유아교육	□④ 아동복기	۲
포퓩교시 자격을	□⑤ 사회복지	□⑥ 예체능	계열(유아/아동관련)
취득한	□⑦ 가정학	□⑧ 간호학	
전공	□⑨ 교육학	□⑩ 노인복기	۲
	□⑪ 특수교육(유아/아동관련)	□⑫ 기타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3. 면담 설문지(전문가용)

# 전문가용 설문지(유치원용)

유치원 명					Ç	P치원규	모 현	년원기준		명
유치원 소재지			l·군 _		_읍·면		동·ā	<u> </u>		
유치원		□① 공립단설 □② 공립병설								
유형	☐3 /	사립법인	<u>l</u> (학교,	종교법	인)		사립	사인		
	원장	원감	유아 교사	특수 교사	보조 교사	취사 부	버스 기사	행정 원	청소 원	기타
교직원 수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 1. 귀 기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찬성 혹은 반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2. 현재 설치가 되었다면 설치 장소와 절차는 어떠했습니까? 혹은 만일 설치한다면 그 장소와 절차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설치 장소
- □ 폐쇄회로 카메라 성능(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유무)
- □ 구성원(교사 및 보호자)의 동의 여부 및 절차

	설치비용
3.	CCTV가 설치된 경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혹은 만일 설치된다면 그 운영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책임자 및 관리자
	영상정보처리기기 내부 관리 지침
	안정성 확보 조치 및 주기적 설치 운영 점검
	영상정보 보관 및 관리
	학부모 열람 등
4.	CCTV의 설치의 아동학대 예방에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인 측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설치된(혹은 설치 계획인) CCTV가 아동인권 교사인권 모두를 위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각하십니까?
	아동인권의 측면
	교사인권의 측면

# 전문가용 질문지(어린이집용)

어린이집 명							린이 규모	현·	원기	준			명	
어린이집 소재지			_시·군			.읍·면			동·리					
		국공립					<b>_2</b>	사회	복지	/법인				
어린이집 유형	□3	직장					<b>4</b>	민간						
	<u></u> 5	가정												
				보육	교사					기	타			
	원장	담임교	고사	비딤	임	시간 연장	방과후	조리 사	조리 원	특수 교사	영양 사	간호 사	기타	
교직원 수	명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편   편   편   편   편	누리과 정보조  시간제	명명명	명	명	평	명	명	円の	명	명	

# [CCTV 설치 현황]

1.	귀 기관에	CCTVフト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 > 1 - 1 )	아니오
	(-1-2)						

- 1-1. 현재 설치가 되었다면
- □ 설치 장소는 어디입니까?
- □ CCTV를 설치한 시점은 언제이며, 설치 이유는 무엇입니까?

□ 현재 설치된 CCTV의 대수와 기능 및 가격대는 어느 정도이며,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은 받으셨습니까? (폐쇄회로 카메라 성능 및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유무)
□ CCTV 설치 시 구성원들과의 합의 절차는 밟으셨습니까? 그 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1-2. 현재 CCTV를 설치하지 않으셨다면
□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CCTV 설치를 대체하기 위해 실행하시는 다른 좋은 대안은 무엇입니까?
□ 앞으로 설치 계획이 있으십니까?
[CCTV 운영 현황] 2. CCTV가 설치된 경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혹은 만일 설치
된다면 그 운영이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된다면 그 운영이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책임자 및 관리자 지정 유무
□ 책임자 및 관리자 지정 유무
□ 책임자 및 관리자 지정 유무 □ 영상정보처리기기 내부 관리 지침의 유무

# [CCTV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

3. 현재 개정된 영유아보육법과 시행규칙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다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CCTV 설치 운영의 효과에 대한 인식]

4.	CCTV의	설치의 긍	정적인 호	L과와 부	정적인	측면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아동학대	배, 교사외	유아의	관계,	기관과 -	부모의 관계	<del>등</del> )

- □ 긍정적인 면(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 포함)
- □ 부정적인 면 (대안 포함)

# [CCTV 설치·운영 시 아동인권 및 교사인권 보호를 위한 고려점]

- 5.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설치된(혹은 설치 계획인) CCTV가 아동인권 과 교사인권 보호도 함께 고려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 고 생각하십니까?
- □ 아동인권의 측면
- □ 교사인권의 측면

#### 부록 4. 면담 설문지(부모용)

# 심층면담 질문지(부모용)

기관명		총 재원기간	
자녀 연령	세	자녀 수	명

# [CCTV 설치 현황]

1.	귀 기관에	CCTVフト	설치되어	있습니까?	□ 예	( <b>P</b> 1-1)	□ 아니
	오(☞1-2)						

- 1-1. 현재 설치가 되었다면
- □ 설치 장소는 어디입니까?
- □ CCTV 설치 시 부모님들과의 합의 절차는 밟으셨습니까? 그 과정 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1-2. 현재 CCTV를 설치하지 않으셨다면
- □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치에 대한 부모님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요?

# [CCTV 운영 및 열람 현황]

2. CCTV가 설치된 경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부모들의 열람이 가능합니까?

□ 열람을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학부모의 CCTV 열람 규정이 있습니까?
[CCTV 설치 운영의 효과에 대한 인식]
4. CCTV의 설치가 아동학대 예방, 교사와 유아의 관계, 기관과 부모의 관계에 어떤 효과를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 긍정적인 면(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 포함)
□ 부정적인 면 (대안 포함)
[CCTV 설치·운영 시 아동인권 및 교사인권 보호를 위한 고려점] 5. CCTV 역람 시 자녀와 타 유아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어떤 부분이

6. CCTV 설치와 운영이 교사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 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7. 혹시 최근에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에서 CCTV 의무 설치와 부모 열람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 부록 5. 육아지원 관련자 등록 기준

〈부록표 1〉육아지원 관련자 등록 기준

 구 분	가정양육자 childminder	유치원 Nursery school/playgorup/after
	Cilidifiliaer	school club
업무 성격	가정양육자	"
정보접근의 목적	보육제공 기능성에 대한 정보, 설명 과 기록 자료, 서비스의 증진과 광고	보육제공기능성에 대한 개인정보 교육적 놀이의 격려 및 지원 서비스 광고 설명과 기록자료 유지 우리의 직원 지원 및 관리
정보 유형	인적사항 기족정보 생활양식과 사회환경 공급자 서비스제공자 재정정보 CP contact 예방접종 기록 알레르기 기록 이동의 진전을 보여주는 디지털 이미지 기타: 인종, 종교, 신체적 정신적 건 강 기록의 민감 정보를 처리함	좌동 교육과 고용 기록 제공되는 물품과 서비스 정보 등
정보 이용자	내가 돌보는 이동 건강 전문가 공급자 컨설턴트	고용주 우리가 돌보는 아동 어드바이저 공급자
정보 공유자	공급자 개인정보 주체자의 가족이나 책임자 Ofsted(교육표준행정청)이 포함된 지 역과 중앙정부 학교 등	우리가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소유한 가정, 동료, 대표 건강 및 사회 복지 어드바이저 재정 및 신용 담당 협력진 전문가 고용주 지방, 중앙 정부 등
해외유출금지제한	EEA 외부에 어떠한 개인정보도 전 송하지 않음	좌동

주. ICO. Data protection regstration: nature of work descriptions: Education and childcare. https://ico.org.uk/media/for-organisations/register/2709/education-and-childcare.pdf 의 내용을 표로 정리함. 인출일 2015. 11. 23.

# 부록 6. 신문기사 목록

# 조선\_2010

	기사 제목
1	서울 '담장없는 학교' 절반, 외부인용 CCTV 없다
2	[부산·경남] 부산 초·중·고 CCTV 설치 완료
3	CCTV 있어도 화면 지켜볼 사람이 없다
4	[수도권III] "학교 주변 CCTV 설치 절반도 못했는데…"
5	[수도권I] 수원시 초교 스쿨존 전역에 CCTV 설치
6	[수도권I] 수원시 어린이보호전역에 CCTV 설치
7	[수도권III]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100대 설치
8	[부산·경남] 부산 스쿨존에 CCTV 300대 설치
9	[내 딸이 위험하다] "CCTV론 한계… 학교주변 시간대별 발품 순찰해야"
10	[충청] 충남교육청 모든 학교에 CCTV 설치
11	[독자마당] 어린이집에도 CCTV 설치를
12	[충청] 스쿨존에 CCTV 250대 설치
13	학교 주변 단 1대뿐인 CCTV… 정문만 향해
14	아버지의 분노
15	학생증에 전자칩… 교문 지나면 부모에 문자메시지
16	학교 운동장서 어린이 납치·성폭행 '김수철 사건' 재발 막으려면
17	[수도권] 서울시민이 바라는 교육정책 1순위는 '학교안전'
18	[수도권I] 초등학생 위치 확인 서비스 제공
19	美, 등·하교시간에만 일반인에 교문 개방··· 佛, 사전 약속 없이는 학부모도 출입못해
20	[인천·부천] 초등학교 방문 땐 방문증 착용해야
21	자녀 등·하교 '알리미 서비스'
22	학교 주변 순찰함 1만6000여개 설치
23	[강원] 각기관 손잡고 학교폭력 뿌리뽑는다
24	외부인 초등학교 출입때 '명찰' 달아야
25	[수도권I] 경기경찰청 '아동안전 우수학교 인증제' 추진
26	['제2 조두순' 학교운동장서 女초등2년생 납치, 성폭행] 우리 딸 다니는 학   교, 대낮에도 안전하지 않았다
27	[제주] 여학생 등 성희롱 논란 중학교 교장 직위 해제
28	[부산·경남] 부산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
29	[대구·경북] 대구교육청, '학생보호 종합대책' 발표
30	[부산·경남] 경남 초등생 수학여행 내년부터 무료
31	[수도권II] 중학생 학교폭력, 1년새 3배 급증

# 조선\_2011

	기사 제목
1	[오늘의 세상] CCTV 없는데서 4살짜리 때려… 경찰, 서울 어린이집 전면 수사
2	[사설] '매 맞는 어린이집'에 아이 맡기고 어떻게 일 나가나
3	[단독] "내 아이를 내가 왜 몰랐는지… 뼈저리게,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4	[서울] 동대문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혹 조사
5	[부산·울산·경남] 경남 960개 전 초·중·고교에 10월까지 CCTV 2250대 설치
6	[강원] 모든 초등학교에 CCTV
7	일부 베이비시터들의 '반상회'
8	어린이집 맡겨도 불안… 작년 사고 7000여건
9	유통기한 2년 지난 음식 먹인 유치원
10	베이비시터, 애가 아프다는데도 "나가 놀아라"
11	유통기한 넘은 음식 먹이고… 아이에 "내다버린다" 으름장
12	[서울] 서울 전역서 초등생 자녀 위치 실시간 파악

# 조선\_2012

	기사 제목
1	학교 CCTV 97%가 '있으나마나'
2	학교 폭력, CCTV 감시 실험해보니… 7분 만에 경찰 출동
3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 폭력 예방 對 인권 침해… 교실 CCTV 논란
4	[제주] 올레길 CCTV 설치… "안전 위해" 對 "자연파괴"
5	[사설] 제구실 못하는 학교 CCTV, 달아만 놓으면 뭣하나
6	베이비시터 감시 위해… CCTV, 안방·거실로 확산
7	[수도권II] 파주시,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대폭 확대
8	'무용지물'인 학교 내 CCTV… 모니터 요원이 없다
9	[학교 폭력 이젠 그만] 엘리베이터 CCTV속 두 소년… 노예계약 맺은 사이 입니다
10	[단독] [학교폭력, 이젠 그만] 대구 자살학생, 숨지기 7시간前 자살장소 찾아 쪼그려 앉아 울었다
11	[사설] 구멍 숭숭 뚫린 '학교 안전대책' 바탕부터 새로 짜야
12	[사건 인사이드] 시험지 훔치려… 명문外高 전교 1등, 세 번 교무실 잠입
13	[학교폭력, 이젠 그만] [단독] "나오래요, 때리겠죠… 오늘 다 끝날 듯하네요"
14	[단독] '묻지마 범죄' 교실 안까지 뚫렸다
15	[발언대] 청소년이 꿈과 희망 펼칠 활동 늘려야
16	66세 배움터지킴이, 초등학생 9명 상습 성추행
17	[대구·경북] 학교 폭력 '영화'로 다시 보다
18	[편집자에게] 교권 회복해야 학교폭력 해결할 수 있어
19	대구, 또 학교폭력 자살… "꼭 벌 주세요" 유서
20	[부산·울산·경남] 부산 각계 모두 마음 모아 "학교폭력, 꼼짝 마!"

# 조선\_2013

	기사 제목
1	또···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학대
2	학교 CCTV 대부분 50만 화소 미만… 얼굴 식별 어려워 사실상 무용지물
3	경기도 일부 학교, 화장실에 CCTV
4	학교 CCTV 19대 스쿨 폴리스 2명… 폭력은 못 막았다
5	"제발 학교 CCTV 좀 제대로…" 왕따자살 학생의 절규
6	[기고] 선생님이 CCTV다
7	청와대 "학교 CCTV 100만 화소로 교체 추진"
8	[사설] '교실 폭력은 犯罪니 신고하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9	[조선데스크] 결국 선생님들뿐입니다
10	부산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17개월 아이 피멍들게 때려
11	공 던지고 티슈 상자로 구타… 무서운 어린이집
_12	[아침 편지] 깨어나라! 소년을 지켜주지 못한 1억화소의 눈이여
13	"학교에 경찰 常駐해서라도 학교 폭력 잡아달라"
14	朴대통령, 초등학교 1일교사 체험 "인성·창의 교육해야 학교폭력 사라져"
15	일진학교 72%가 중학교… 내달부터 '전면 개조 프로젝트'
16	[윤영신의 태평로] 누가 중학교를 이토록 망쳤나
17	"교직 4년만에 학교暴力 눈감게 되더라"
18	[사설] 우리 아이도 어린이집에서 쓰레기 된장국 먹고 있지 않나
19	"일진·왕따·담배가 사라졌어요"
20	말대꾸한다고… 1초도 못참고 학생 뺨 때리는 선생님들
21	"학교 폭력 해결해줍니다" 副業 나선 공익요원들
22	80명 한 끼에 1만2000원… 돈에 눈먼 어린이집

#### 조선\_2014

	기사 제목
1	[최재천의 자연과 문화] [280] CCTV와 The Police
2	[사설] 대낮 성추행범에 초등학교 운동장 또 뻥 뚫려

# 조선\_2015

	기사 제목
1	學暴·성폭력 막기 위한 CCTV… 전북교육청 54개교엔 1대도 없어
2	오늘부터 어린이집에 CCTV 설치 의무화
3	어린이집 CCTV 설치 12월부터 의무화
4	올해만 어린이집 764곳 폐업 속출
5	어린이집, 12월부터 CCTV 설치 의무화
6	어린이집 CCTV 9월부터 설치 의무화
7	[더 나은 미래] 학대 아동 신고 안 하면 과태료… 그 후엔 수수방관

	기사 제목
8	김치 남긴 원아 때린 보육교사 징역 2년
9	어린이집 후폭풍… 학부모들 "CCTV 반대·기권 議員 낙선운동"
_10	[트렌드 돋보기] CCTV 반대한 女性 의원들
11	CCTV속 '나'에 충격… 새 보육敎師(교사)로 거듭났다
12	CCTV 등 어린이집 폭력 예방案, 수년째 국회에 막혀 있었다
13	그래도… CCTV 보다는 선생님을 믿어요
14	'CCTV 반대' 남인순 의원, 野 안심보육TF 위원장에
15	어린이집 CCTV 법안 국회서 否決
_16	姜 경찰청장 "어린이집 CCTV 공개 거부땐 명단 공개"
17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_18	[발언대] 어린이집 CCTV 死角지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_19	모든 어린이집에 CCTV… 한달치 영상 의무보관
_20	CCTV 없는 어린이집 노려 1100만원 턴 40代 붙잡혀
21	서울서도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 화장실 감금
_22	[발언대] 아동학대 방지 대책, 놓쳐선 안 될 6가지
_23_	강남 엄마들마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24	警, 어린이집·유치원 5만2000여곳 全數조사
25	아동학대 한 번만 걸려도 원장·교사 퇴출
26	[사설] 어린이집 무자비한 매질, 부모 안심시킬 대책 뭔가
_27_	얼마나 무서웠니…
28	보육敎師들 "참담·수치스럽지만… 모두를 罪人으로 매도하지는 말라"
_29	보육교사 양씨 긴급체포 오늘 영장 신청, 인천 연수區 "해당 어린이집 폐쇄하겠다"
30	[기자수첩] 育兒를 '非생산적인 일'로 여기는 사회
31	[사설] '보육' 하나만 잘해도 '박근혜 福祉' 평가받을 것
32	"아이들 예뻐도 안 쓰다듬어요… 오해 살까봐"
_33	[NEWS&VIEW] 사흘만에 뚝딱 내놓은 '걸리면 퇴출' 어린이집 대책
34	로비에 번번이 막힌 '어린이집 개선 法案'
35	유치원·학원도 아동학대땐 즉시 폐쇄
_36	보육교사 양씨(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영장… 경찰 "버섯 토한 아이 뺨 때리기도"
37	이번엔 또… 아이 얼굴에 주먹질 내동댕이
38	19명 아동 127차례 학대… 유치원 교사 2명 영장
39	인성 교육 바탕, 아이 안전까지 철저히 관리
40	[사설] 부모들은 국회·세종청사 수준 어린이집 원한다
41	1日 보육교사 해본 복지부課長 "1人당 아동수 줄여야"
42	[맘 놓고 맡길 어린이집 없나요] 식당 평가하듯 어린이집 인증… 교사 자질 등 質 위주로 바꿔야
43	연말정산 세금폭탄…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어린이집 아동학대… 朴대통령, 담당 수석들에 27분동안 질문 15개 던져
44	[패관잡기] '완전 공짜 보육'이 어디 있나
45	[맘 놓고 맡길 어린이집 없나요] 보육교사 자격증 빌려주고… '대리 시험'까지

#### 중앙 2010

	기사 제목
1	
	아동성범죄자 신상, 주민에게 우편 통보
2	은밀한 감시꾼 CCTV … 목욕탕 3곳 중 1곳서 당신 훔쳐보고 있다
3	활발하게 활동하는 어머니 자율방범대
4	서울 학부모 "학교안전, 무상급식보다 중요"
5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 하루 30번은 찍힌다
6	자녀 등하굣길 정보 제공 'U-서울안전존'확대
7	학교 CCTV 딴 데 보거나 고장 … 초등생 교내 성폭행 몰랐다
8	휴대폰으로 자녀만 있는 집안 들여다봐
9	충남 모든 초등학교에 성폭력 예방 CCTV 설치
10	학교 80%가 경비실 없어 출입통제 무방비
11	[브리핑] 어린이보호구역 11곳 CCTV 설치
12	[브리핑] 학교·농촌마을 CCTV 늘린다
13	부산 모든 초등학교에 내년까지 성폭력 예방 '배움터 지킴이' 배치
14	바바리맨 … 불량청소년 … 외부인 범죄에 뻥 뚫린 초등교
15	연내 모든 초등교에 '24시간 감시 CCTV'설치
16	교과부, 긴급회의 … 실효성 없는 대책 급조 발표
17	빨간 티셔츠 입은 김수철, 어슬렁거리며 교문 들어서는 CCTV 공개
18	학교를 범죄에 개방? … "교문 안도 안전하지 않다니"
19	울먹이며 480m 끌려가는 소녀를 아무도 안 지켜줬다
20	[사설] 제3, 제4 조두순 사건이 나게 내버려둘 텐가
21	대낮에 학교 운동장서 8살 여아 끌고가 성폭행… 제2의 조두순 사건
22	"CCTV가 교사·학부모 신뢰 높여"
23	교내 CCTV 설치율 90%까지 올린다

#### 중앙\_2011

	기사 제목
1	'학교폭력 의혹'광주 자살 중학생 부검하기로
2	아산 어린이 놀이터 안전 위협
3	'원생 폭행'어린이집 전면 수사
4	[사설] 어린이 폭행하는 어린이집
5	원생 폭행 구립어린이집 … 교사가 발로 밟고, 머리 박치기시키고
6	Q : 개인정보보호법 오늘부터 시행 … 뭐가 달라지나?
7	초등교 출입, 이젠 방문증 받아야
8	[브리핑] 천안시 초등학교 25곳 CCTV 설치
9	"CCTV 설치해야 하나" 불량 도우미 극성에 엄마들 한숨
10	[사설] 성추행 괴한에 뚫린 학교 안전

# 중앙\_2012

	기사 제목
1	[사설] 미 총기난사 비극 … 학교 안전 재점검해야
2	영유아 보육료는 '싹뚝' … 동네 공원사업은 '펑펑'
3	50개 초등학교에 보안관 1명씩 증원
4	교실까지 가는 데 아무도 안 막았다
5	[사설] '교실 흉기 난동' 다시 일어나선 안 된다
6	올레길에 CCTV 설치 vs 그러면 무슨 올레길
7	[분수대] 올레길 살인사건 끔찍하지만 CCTV는 처방 아니다
8	"CCTV 돌려보면…" 자살 고교생 유서 보니
9	[떴다! 학교폭력 예방 전도사] 관내 학교 누비며 특강 … "언제 어디서든 SNS 하세요"
10	토할 때까지 분유 먹인 어린이집 원장
11	[분수대] 안방과 거실까지 CCTV 설치하는 이 숨 막히는 세상
12	[사진] 한국JC - 중앙일보, 어린이 지킴이 업무협약
13	학교 주변 지킴이·CCTV 늘리고 폭력 조기 발견·신고체계 구축

# 중앙\_2013

	기사 제목
1	어린이집 문어발 운영 구의원 영장
2	두살 여아 밥풀 안 버렸다고 보육교사가 밀쳐 멍들게 해
3	[사설] 어린이집 대책 땜질식 처방으론 안 된다
4	서울시, 불량급식·아동학대 한번만 걸려도 허가 취소
5	어린이집에 맡긴 아기 뇌사
6	어린이집 5곳 중 1곳 감독 사각지대
7	[사설] 안심하고 아이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8	[브리핑] 부산 어린이집 폭행 "원장도 때렸다"
9	[사설] 학교폭력 방관하는 침묵의 카르텔 깨야
10	[이규연의 시시각각] 진짜 사각지대는 따로 있었다
11	일진 빵셔틀 300번 하다 전학 간 학생 있었다
12	경찰, 6주간 학폭 집중단속… SNS로도 신고
13	또… 아무도 제보 안 했고, 누구도 눈치 못 챘다
14	학생 탈선 장소에 무대 설치했더니 환호성
15	[사설] 학교폭력 사각지대 남김 없게 해야
16	학교폭력 투신 고교생 "CCTV 사각지대 없애주세요"

# 중앙\_2014

	기사 제목
1	보육교사가 2살 된 원생 폭행
2	경기도 어린이집 교사, 원생 13명 정신적·신체적 학대
3	전세계 CCTV 7만3000개 뚫렸다
4	전남 여수 유치원 아동학대 논란…CCTV 공개
5	아동학대 유치원 교사들…어린이들 서로 때리게해
6	[브리핑] LGU+, 홈보이 어린이 전용 콘텐트 강화
7	진주외고 폭행 가담 학생 더 있었다
8	어린이집서 낮잠 자던 세 살 돌연사
9	어린이집 3살 남아, 낮잠 자다 돌연사…CCTV 보니
10	CCTV 104대 … "친구랑 떠들더라" 엄마 편지에 깜짝

# 중앙\_2015

	기사 제목
1	아파트 CCTV 더 뚜렷해진다…어린이집도 추진 중
2	[단독] 1㎞ 이내 성범죄자 6명 이상 사는 초·중·고 1609곳
3	원생 상습 폭행 어린이집 여교사 2명 집행유예
4	'어린이집 CCTV 사생활보호 프로그램'관련 반론보도문
5	[간추린 뉴스] 유치원생 머리채 끌고 학대 … 여교사 검거
6	9월부터 어린이집 CCTV 설치 안하면 최고 300만원 과태료
7	웃음거리 된 어린이집 '사생활 보호 CCTV'
8	엄마·아빠도 선생님 … "CCTV 안 봐도 돼요"
9	[취재일기] 보육자격고사 치른다고 보육의 질 높아질까
10	어린이집 CCTV 의무화 … 전기요금 월 평균 8368원 줄어
11	대법,"교사동의없는 어린이집 CCTV 훼손 업무방해 아니다"
12	모든 어린이집 12월까지 CCTV 달아야
13	또 인천지역 어린이집에서 폭행 사건?…경찰 수사 중
14	[간추린 뉴스] 어린이집 CCTV 의무화법 본회의 통과
15	엄마에게 활짝 '열린 어린이집' … CCTV 안 봐도 훤해요
_16	[간추린 뉴스] 어린이집 CCTV 설치 법안 복지위 재통과
17	어린이집 CCTV 동영상 60일 이상 저장해야
18	양산 어린이집 '보육교사 원생 폭행' 의혹 제기
19	미스터리 21개월 여아 어린이집 사망
_20	"잘 쓰고 있는 어린이집 IP 카메라 … 국회 탓에 폐기될 판"
_21	방치되는 학원 폭력 … 학교 만큼 오래 머물지만 생활지도 미흡
_22	교사 처우개선이 더 효과적이다
_23	CCTV 의무화 법제화해야
_24	어린이집 CCTV법 내달 우선 처리
_25	[논쟁]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제화해야 하나?
26	어린이집 원생 학대한 20대 여교사 입건
_27	[워킹맘 다이어리] CCTV, 어린이집에 펄럭여라

	기사 제목
28	또 꼬집고 때린 어린이집 적발 ··· CCTV 없었다면 알 수 있었을까
29	국회 거부 어린이집 CCTV로 학대 혐의 포착
30	어린이는 표 없다 ··· 학대·폭행 감시 눈감는 정치권
31	뿔난 엄마들 "어린이집 CCTV 반대 42명, 총선 때 심판"
32	어린이집 CCTV 설치법 부결에 관련주 급락
33	아동학대 예방 합의해놓고 … 원장들 표에 굴복한 국회
34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 통과에 관련주 상승세
35	어린이집 CCTV, 부모가 실시간 확인
36	제천 공립어린이집 교사, 원생 학대 혐의로 검찰 조사
37	어린이집, 바늘학대…40대 여교사 소환, 6세 아이 손등에 바늘 네 개를
38	[사진] 어린이집 간 박 대통령 "CCTV 필요"
39	[간추린 뉴스] 원생 18명 108차례 때려 ··· 보육교사 영장
40	또 어린이집 폭행…보육교사 영장
41	[단독] 어린이집 CCTV 안 보여주면 처벌 … 학대 신고 2000만원
42	어린이집 보육교사 원생 또 폭행
43	[사설] 어린이집 학대 … 미봉책 대신 무상보육 틀을 바꿔야
44	어린이집 CCTV 의무화에 관련주 급등
45	0~2세 가급적 집에서 키우게 가정보육 지원금 인상 추진
46	어린이집 CCTV 반대했던 남인순 "의무화법 내달 처리"
47	LG유플러스, 어린이집 상황 스마트폰으로 보내주는 CCTV 개발
48	"두 살 아기 레깅스로 묶고 바닥에 방치"
49	친구 괴롭힌 아동 격리시킨 보육교사 입건
50	22개월 아이 울음 안 그친다고 … 입에 물티슈·수건 집어넣어
_51_	인천 부평구 유치원에서도 폭행사건
52	아동 입에 물티슈·수건 넣어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 체포
_53_	경찰, 원생 패대기 인천 남동구 어린이집 교사 재조사
54	'어린이집 CCTV' 반대했던 의원 셋 지금도 복지위 소속
_ 55	보육교사 인성검사 원장 자격시험 추진
56	[신성식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김무성 대표의 보육교사 책임론
57	'어린이집에서 3도 화상을 입은 아기, 도와주세요' 인터넷 게시글 논란
58	[사진] CCTV 열수록 충격 … 안심 어린이집은 어디
_59	또 이름난 어린이집서 학대 ··· "입소문도 못 믿어"
60	[사설] 어린이집 CCTV 설치, 더 이상 미루지 말라
61	이번엔 주먹으로 얼굴 때리는 어린이집교사
62	인천 부평구 어린이집에서도 원아 폭행 사건
63	표 때문에 … 국회서 뭉갠 '어린이집 CCTV'
64	"교사 양씨, 토한 것 다시 먹이고 다른 아이 뺨도 때렸다"
65	어린이집이 CCTV 공개 거부 땐 학부모 볼 방법 없어
<u>66</u> 67	"토한 음식까지 다시 먹여" 경찰, 인천 어린이집 폭행 교사 추가 범행 확인 새정치련 "어린이집 폭행 사건은 보육정책 혼란 탓"
	재성시던 '어딘이십 녹양 사건는 모육성적 본단 것  "거리든 실내든 CCTV 널렸는데 왜 어린이집만 인권 운운하나"
68 69	기다는 절대는 CCTV 될었는데 왜 어딘이십만 인권 문문이다
	[사전] 경찰 전국 도육시설 아동역대 전부조사 아이 때린 교사, 인터넷으로 자격증 땄다
_70	이이 때단 뽀까, 인디굿으도 자극히 귰냐

	기사 제목
71	[사설] 어린이집 아동학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72	새누리당, 어린이집 폭행 사건 대책 촉구
73	"평생 처음 본 장면에 치가 떨렸습니다"… 인천 어린이집 폭행에 네티즌 분노
74	95점 어린이집 1급 교사가 … 밥 남긴 4세 여아 후려쳐
75	음식남겼다 보육교사가 4살 여아 폭행

# 동아\_2010

	기사 제목
1	신축 아파트 놀이터에 CCTV 의무화
2	[사설]'양질의 보육'막는 규제가 저출산 부추긴다
3	한국인 하루 83회 CCTV에 찍혀
4	[부산/경남]부산 모든 초중고에 CCTV 연내 설치
5	[충북]단신/청주 모든 초등교 주변 CCTV 설치外
6	[신나는 공부] 학교안전 SOS/나쁜 아저씨들 얼씬도 못해요~
7	[사설]분노는 한때뿐… 아동 성폭행 사회가 방관했다
8	[부산/경남]100명 넘는 보육시설 주변 스쿨존 지정
9	[광주/전남]목포시, 어린이집 폭행 교사-횡령 원장 고발
10	[부산/경남]부산 스쿨존 CCTV 300대 설치
11	[수도권] IT기술 이용 아동성폭력 등 막는다
12	[수도권]"유괴 꼼짝마"초등교 CCTV 추가 설치

# 동아\_2011

	기사 제목
1	진화하는 학교폭력, CCTV만 다는 정부
2	"CCTV가 사생활 침해"… 5년만에 4배이상 늘어
3	[인천/경기]인천지역 아이들이 위험하다
4	[뉴스 파일]"일반인 찍힌 공공기관 CCTV, 얼굴 가린 후 공개해야"
5	[수도권]"얘들아, 학교에서 수상한 사람 만나면 '비상벨'눌러!"
6	[신나는 공부]집요하고 활발하게… 고교동아리들 "우리가 세상을 바꿔요"

# 동아\_2012

	기사 제목
1	차 번호판도 못 읽는 학교 CCTV
2	학부모도 출입증 없인 학교 못 들어간다
3	계성초 흉기 난동 계기로… 학교 담장 다시 쌓고 출입통제
4	[부산/경남]불안한 초등교 스쿨존
5	[대구/경북]고개만 돌리면 CCTV… 든든? 찜찜?
6	CCTV안내판 설치 의무화 시작됐는데…
7	[신나는 공부]학교폭력 걱정'뚝'… 학교 CCTV 스마트폰으로 본다
8	[수도권]경기, 국공립 어린이집 145개 연다
9	[광주/전남]학생안전지킴이 학교 배치… CCTV 확충-긴급전화 운영
10	경찰 "일진 3명이 숨진 학생 29차례 폭행… 학교폭력과 전쟁"

# 동아\_2013

	기사 제목
1	범죄를 막기위한 또다른 범죄… 현실이 된 불법사찰 드라마
2	경기 일부학교 화장실 CCTV 물의
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집유 못받게 형량 높인다
4	서울 초등교 70곳에 '안전지킴이' 127명 추가 투입
5	교사들 "유흥주점이 가장 큰 문제… 단속규정도 잘 안지켜"
6	朴대통령 서울 명신초교 찾아… "학교폭력 없애려면 CCTV 설치뿐아니라 인성-창의교육 해야"
7	"맞짱 뜨자 해놓고 패버려요, 그럼 때린게 아니라 싸운게 되죠"
8	"교실-학교밖서 때려… CCTV 있으나마나"
9	[사설]학교폭력 예방 모범학교가 이 지경이니
10	"CCTV 사각지대서 때려요"학교폭력 시달린 고교생 자살
11	[부산/경남]"학교폭력 막으려면 교사의 관심 가장 중요"

# 동아\_2014

	기사 제목
1	"면회 가봐야지… 괜찮다는 전화 안믿겨"
2	5세 어린이에게 "서로 때려라"정신나간 유치원
3	[수도권]서울시내 모든 스쿨존에 CCTV
4	"혼자 운전중 통화한걸 회사가 어떻게 알았지?"
5	[프리미엄 리포트]CCTV망에 '12345678' 비번 넣으니… 침실까지 훤히 보여
6	[프리미엄 리포트]전문가들"영상정보 암호화해야"
7	[프리미엄 리포트]국내 CCTV 400여만대… 年 11%씩 늘어
8	[프리미엄 리포트]CCTV영상까지… 온갖 정보 다 샌다

# 동아\_2015

	기사 제목
1	어린이집 고화질 CCTV 19일부터 의무화
2	CCTV 효과… 스쿨존-공원 5대 강력범죄 27% 줄어
3	어린이집 CCTV 의무화… 70세부터 '건보 임플란트'혜택
4	어린이집 CCTV 9월부터 의무화
5	[@뉴스룸/민동용]그래도 법안 공부는 하자
6	"20명 아이들 돌보느라 화장실 갈 틈 없어요"
7	여야,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 4월 국회서 우선처리 합의
8	[@뉴스룸/이성호]엄마를 바보로 아는 정치인들
9	'CCTV 부결'후폭풍에 놀란 복지부, 어린이집 직접 찾아 설치 설득 나서
_10	"못믿을 국회… 우리가 해결책 마련"
11	유승민 "영유아보육법 재추진"… 신의진, 부결 책임지고 간사직 사퇴
_12	또 국회 벽에 막힌 아동학대 대책
13	[뉴스분석]違憲 소지에도… 입법권 남용한 국회
_14	[사설]어린이집 CCTV 막고 김영란法 물타기 한 '간 큰 국회'
15_	새로 여는 어린이집에만 CCTV 의무화
16	"CCTV 중계를"불안한 엄마…'자격증 검열'상처받는 교사
17	어린이집 CCTV 의무화法 한달째 '논의중'
18	[수도권]서울시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19	[@뉴스룸/유근형]감시와 처벌
_20	어린이집 찾은 朴대통령 "CCTV 필요"
21	보육교사 자격 국가고시 도입 추진… 어린이집 CCTV 최소 한달간 보관
_22	[수도권]서울시, 우수 보육교사 공모해 어린이집 공급
23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24	가정보육 수당 대폭 올려 어린이집 이용 줄이기 추진
25	[대구/경북] 경북도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
26	[이광표의 오늘과 내일]대한민국 학부모
27	[특별기고/박지영]선생님이 즐거워야 아이들이 행복하다
28	CCTV보다 중요한 건… 자격없는 교사 걸러낼 제도
<u>29</u> 30	허벅지로 눌러 아기 재우고… 4세 아이 얼굴에 주먹질
	[수도권]"경기도 어린이집 CCTV 설치비 지원" "아동학대 어린이집 폐쇄" 5년전 재탕
31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10년째 번번이 의원들 반대로 무산
32	어딘이십 CGTV 설치 의무와 입안… 10년째 인인이 의원을 안내도 무산   김치 먹다 토하자 다시 집어먹게 해
34	참시 확다 도여자 다시 접어락게 해   예산지원 늘면서 시설 우후죽순… 양질의 교사 부족사태
35	에신지원 들면서 시설 부우국군… 양설의 교사 구독사대 학부모 "아이들, 선생님 무섭다며 2014년부터 가기 싫어해"
36	역구도 아이들, 선생님 무렵다며 2014년구리 가기 싫어에 [사설]아이가 폭행당하는데 어린이집 CCTV 거부할 텐가
37	김치 안먹는다고… 네살 여아 머리 내리쳐
01	ㅁ시 ㄹㄱㄷ니ㅗ… 네ㄹ 어어 비니 네니서

# 한겨레\_2010

	기사 제목
1	[사설] 대낮 학교 안에서까지 성폭행이 벌어졌다니
2	아파트 담장 허물면 보안등·CCTV 지원
3	'김수철 사건'두 달만에…또 대낮 성폭행
4	성폭행 당했지만 해맑던 아이, 난 취재할 수 없었다
5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은 국가의 의무"
6	아이들이 만든 안전지도 '범죄예방'지킴이
7	또 대낮에 7살 어린이 성폭행
8	전국 CCTV 정부서 통합관리
9	대낮 학교서 초등생 납치 성폭행
10	어린이집 'IPTV 생중계'부모동의 없이 일방시행
11	어린이 위치추적 서비스 추진
12	터질때만 '성범죄 대책'…재발방지 역부족
13	'우리 아이 어디에' U-서울 안전시스템 확대
14	유치장 인권침해 이렇게 대처 하세요
15	"서울 중부서에서도 가혹행위"인권위, 진정 조사 중
16	칼로리 표시하고 조리실에 CCTV
17	화난다며 초등생 '묻지마 폭행'

# 한겨레\_2011

	기사 제목
1	어느 미용고의 '막장 교장'
2	스마트폰으로 CCTV 훔쳐본다
3	우린 흐린 감방 속에 살고 있다
4	교무실·사무실에 한평 경비실까지 24시간 촤르륵 CTV 인권침해 진정 '갈수록 태산'
5	유아·보안용 로봇시장 뜬다
6	사람 있는 곳이면 어디든 CCTV 무차별 기록…삭제과정은 불투명
7	교내 사물함 음료 먹고 광명 고교생 구토·마비
8	낙후지역에 '푸른사랑 놀이터' 보급
9	서울 초교에 SOS비상호출시스템 도입
10	서울 초등교서 여학생 성추행…학교보안관제 출발부터 '구멍'
11	우리 아이 안전하길…
12	'3무 학교'는 되고 '무상급식'은 안돼?
13	강원 모든 초등학교에 CCTV 설치

# 한겨레\_2012

	기사 제목
1	염리동·공진중학교 등 범죄예방디자인 시범지역 선정
2	초고화질 CCTV에 갇힌 영국'빅브러더'논란
3	성폭력·학교폭력 근절 예산 대폭 증액
4	올레길에 결국 CCTV
5	초등생 성추행 학교지킴이, '과자값'으로 입막음
6	"올레길 안전대책 올레다워야"
7	[왜냐면] '걷는 길' 안전성, CCTV가 처방 아니다 / 윤정준
8	올레길에 CCTV 설치하면 안전할까?

#### 한겨레\_2013

	기사 제목
1	혜진·예슬양 떠난 지 6년…줄지 않는 아동 유괴
2	경북 '학교 CCTV' 94% 얼굴 못 알아봐
3	학부모 "아동학대 줄 것"…교사 "인권침해" 부산 '어린이집 CCTV 의무화'논란
4	학교 화장실에 CCTV가? 25개교 감사 적발
5	여고생, 학교 교실서 납치당했다가…
6	'맞은 아이 더 있다'…부산 어린이집 폭행 수사 확대
7	학교를 '범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8	교육부 주요정책에 '학생 자살예방'은 없다
9	'빅브러더'감시 괴로워
10	사설.칼럼 [댓글 중계] 사회구조만 탓하며 학교폭력 방치하나
11	사설.칼럼논쟁 [논쟁] 학교폭력, 누구를 탓해야 하나?
12	사설.칼럼 [세상 읽기] 학교는 치안의 대상이 아니다 / 김동춘
13	또 우려먹은 학교폭력 대책
14	CCTV 과신…학교폭력 방치하는 정부
15	이주호 장관 학교 방문했을 때도 경산 희생학생은 폭력 시달렸다
16	CCTV도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
17	투신자살 고교생 가해 학생, 알고보니 '같이 살기도…'
18	자살 고교생 가해자, '피해자 집서 살기도…'

# 한겨레\_2014

	기사 제목
1	사립 대안학교에도 안전시설비 첫 지원
2	대전'학교도서관 개방'조례 추진
3	어린이집 보육교사 4살 어린이 양 손목 끊으로 묶고…
4	네살 어린이 손목을 노끈으로…어린이집'아동학대'의혹
5	세종시교육청, 책걸상 교체
6	"어린이집 사망원인, 돌연사 증후군 최다"
7	"합의 없는 CCTV 노사협약 위반"
8	아동학대 중 방임이 1위…예방 관심 없는 사회
9	어린이 2명 서로 때리게…'무서운' 유치원 교사
10	아이들이 만든 놀이터, 부모·아이 모두 신나요
11	11. "한국 놀이터는 판박이…재료·디자인 다양화해야"
12	사설.칼럼 [조한혜정 칼럼] 놀이를 허하라!
13	서울시 "어린이 교통사고 절반으로 줄인다"
14	[단독] "유치원 교사가 때린 것처럼…KBS, 2배속 왜곡 편집"

# 한겨레\_2015

	기사 제목
1	내일부터 '어린이집 고해상 CCTV 설치 의무화'시행
2	아이 진정시키려 들었다가 팔꿈치 탈골…보육교사 '무죄'
3	"교사 동의없이 설치된 어린이집 CCTV 촬영 방해 무죄"
4	바뀐 영유아보육법, 보육의 질 높일 수 있을까
5	엄마들, 어린이집 '재능기부'로 참여한다
6	내가 찍힌 CCTV 정보공개 받으려니…"수백만원 내라"
7	저 눈
8	디지털 권력 정당성 물어라
9	CCTV 뺨치는 초딩 부모들의 카톡방
_10	어린이들의 맞장구 토론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해주세요'
11	9월부터 어린이집 CCTV 의무화
12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_13	어린이집 CCTV 설치법 법사위 통과…30일 본회의 상정
14	장애인 상습폭행한 재활교사들 붙잡혀
15	'왜 밥 안먹어'아이들 상습적으로 꼬집은 보육교사
_16	"왜 잠 안자"3살 여아 학대혐의 어린이집 교사 입건
17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부결된 진짜 이유는?
18	[왜냐면] 아동학대 해법은 교사 근무환경 개선 / 장진환
_19	현실이 된 '트루먼쇼'…"언제까지 날 엿볼 건데?"
20	"CCTV 만능론 넘어…어린이집 학대 대책, 4월 입법전 마련을"
21	한 어린이집 담임 8명중 7명이 아동학대
_22	어린이집 'CCTV 설치법'부결 후폭풍에 여야 "4월 국회 통과시킬 것"진화
23	피해 아동 어머니 "어린이집 CCTV 법안 부결, 부모 무시한 것"

0.4	기사 제목 매일 '어린이 학대' 인천 유치원 교사 2명 구속영장
24	
25	'꼬집고 때리고'…경남 고성 모 어린이집 교사들 입건
<u>26</u> 27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에 학부모들 '부글부글' 의원들 자리 떠 어린이집 CCTV법 부결
	의원을 자디 때 어딘에집 CCTV집 무릴 '요란만 떤'어린이집·유치원 전수조사
	마동학대 0건?…경기·인천 어린이집 전수조사 '겉핥기'
30	'어린이집 학대' 대책 결국 CCTV뿐
3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재원이 문제인데…'서울시 모델'답 될까
32	스마트폰으로 어린이집 CCTV 실시간보기 인천서 시범운영
33	어린이집 CCTV 실시간보기 이달 중 인천서 시범
34	"선생님이 바늘로 찔렀어"…이번엔 바늘로 아동학대 의혹
35	아동학대 피해자들 주변 무관심에 두 번 멍든다
36	의왕의 한 어린이집에서도…2달간 원생 18명 103차례 폭행
37	아동학대 교사·어린이집 명단 공개
38	당정, 보육교사 자격취득 국가고시 전환 추진
39	"전업주부 가정 어린이집 이용시간 제한하겠다"
40	3월부터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된다
41	인천 부개동 어린이집 아동학대 교사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42	"물티슈 학대 어린이집 피해 원생 6명 더 있다"
_43	보챈다고 22개월 아이 입에 휴지넣어
44	'어린이집 조사'으름장 놓는 경찰
45	[한겨레 프리즘] 어린이집과 수술실 / 김양중
46	'울음 안 그친다'…22개월 원생 입에 휴지·손수건 넣어
_47	칭얼댄다고…두살 아기 입에 휴지 넣은 어린이집 원장
48	'허락없이 친구에게 떡 줬다고'…또 보육교사가 원생 때려
49	고성에도 어린이집 아이 학대 의혹
50	CCTV 집착한 정부대책…어린이집 혼란 휩싸여
51	또 '아동 폭행'…부평 어린이집 폭행 보육교사 '철퇴'
52	이번엔 네살배기 아이들을 주먹으로…또 아동학대 인천 어린이집에서 또 아동학대…경찰 수사중
<u>53</u> 54	[ 단진 어딘어집에서 또 아동막대…경찰 부사궁 [[단독] 조선닷컴, 건강 기사에 '아동학대 화면'게재해 '시끌'
55	CCTV가 능사 아니다…아동학대 신고하다 탈진할 판
56	CCTV 없는 화장실서 아동학대 혐의 어린이집 교사 입건
57	[사설] 대증요법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막지 못한다
58	"인천 보육교사 추가 폭행 있었다"
59	경찰, 인천 송도 어린이집 원아 폭행 피의자 추가 범행 확인
60	폭행 피해 어린이 "엄마, 전에도 그 선생님이 때렸어"
61	부천 유아 전문 영어학원서 '체벌'논란…경찰 수사
62	인천 어린이집 가해교사 "상습폭행 절대 아니다"
63	아동학대에 국민 분노 빗발…어린이집 5만여곳 '전수 조사'한다
64	'폭행'인천 어린이집 운영정지 후 시설폐쇄 방침
65	경찰,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력' CCTV 동영상 추가 공개
66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에 엄마들 분노 폭발

	기사 제목
67	네살배기 폭행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키로
68	학부모들 "여아 폭행 인천 어린이집'상습 폭행'"주장
69	[포토] 사랑의 매'라고?…경찰, 수사 나서
70	영아전담 가정어린이집 325곳 국공립 전환
71	'왜 밥 남겨'인천 어린이집서 교사가 네살배기 폭행
72	서울 가정어린이집, 0~2살 공공보육시설 전환 추진

연구보고 2015-19

#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CCTV의 설치 및 운영방안: 유치원·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발행일** 2015년 12월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전화: 02-398-7700 팩스: 02)398-77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선우정보인쇄 02) 2272-6105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85941-45-5 (93330)